

주요교역국의 관세행정 결정사례

미국 제1권(품목분류)

2021. 12.



주요교역국의 관세행정 결정사례

-미국 제1권(품목분류)-

2021. 12.

연구총괄 정재현

연구자 김미정 · 노영예

목 차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1
I. 일반개황 및 경제개황	1
1. 일반개황	1
2. 경제개황	2
가. 주요 경제지표	2
나. 수출입 동향	5
II.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8
1. 사전심사	8
가. 사전심사 개요	8
나. 사전심사 신청 절차	9
다. 사전심사 종류	12
라. 심사결정의 수정 및 취소	19
2. 품목분류	20
가. 품목분류 개요	20
나. 미국의 품목분류	25
III. 품목분류사례	29
1.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제1류-제5류)	29
가. 독일의 살아 있는 말(제1류)	29
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냉동 염지닭(제2류)	30

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참치 뱃살(제3류)	31
라. 캐나다의 치즈 부산물(제4류)	32
마. 뉴질랜드의 냉동 송아지뼈(제5류)	34
2. 식물성 생산품(제6류-제14류)	35
가. 에콰도르의 다육식물(제6류)-1	35
나. 중국의 대나무 조명(제6류)-2	35
다. 이란의 다진 파, 다진 딜의 잎, 미탈각 피스타치오, 탈각 또는 조각낸 피스타치오, 탈각 아몬드, 탈각 헤이즐넛(제7류-제9류)	37
라. 인도의 도정된 쌀(제10류)	38
마. 아일랜드의 귀리(제11류)-1	39
바. 스페인의 감자 플레이크(제11류)-2	40
사. 캐나다의 햄프씨드(제12류)	41
아. 한국의 생강농축액(제13류)	42
자. 멕시코의 수세미(제14류)-1	43
차. 인도의 말린 압연 디오스파이로스 멜라녹실론 잎(제14류)-2	44
3.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제15류)	45
가. 스페인의 해바라기 오일(제15류)	45
4.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제16류-제24류) ..	46
가. 필리핀의 참치통조림(제16류)-1	46
나. 한국의 해물육수다시팩(제16류)-2	47
다. 캐나다의 당밀(제17류)-1	48
라. 스페인의 푸쉬팝 캔디 테이프(제17류)-2	49
마. 캐나다의 초콜릿칩(제18류)	50
바. 레바논의 푸딩믹스(제19류)-1	52
사. 아일랜드의 쿼트(제19류)-2	54
아. 슬로베니아의 트레일믹스(제20류)	55
자. 캐나다의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제21류)-1	57

차. 일본의 냉동떡디저트(제21류)-2	59
카. 한국의 맛을 낸 우유 음료(제22류)-1	60
타. 독일의 무알코올 와인(제22류)-2	62
파. 가나의 탈유 시어넛(제23류)	63
하. 독일의 동물사료(제23류)-2	64
거. 온두라스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담배 부산물(제24류)	65
5. 광물성 생산품(제25류-제27류)	66
가. 여러 국가의 카올린 점토(제25류)	66
나. 캐나다의 슬래그(제26류)	67
다. 이탈리아의 일회용 카트리지 연료(제27류)	68
6.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28류-제38류)	70
가. 캐나다의 사수소화규소(제28류)	70
나. 여러 국가의 아이코시펜트 에탈(제29류)-1	70
다. 한국의 로피독수리딘(제29류)-2	71
라. 한국의 에르타페넴나트륨 주사제(제30류)	72
마. 멕시코의 구아노(제31류)	73
바. 한국의 매스틱 실러(제32류)	74
사. 한국의 비타민 마스크팩(제33류)-1	75
아. 한국의 아이패치(제33류)-2	76
자. 중국의 손소독 물티슈(제34류)	76
차. 한국의 메이크업 리무버 타월렛 및 유아용 물티슈(제34류)	78
카. 한국의 콜라겐 젤(제35류)	79
타. 독일의 연막탄(제36류)	80
파. 일본의 포토마스크 블랭크(제37류)	81
하. 한국의 알로에젤(제38류)-1	82
거. 한국의 식물성장조절제(제38류)-2	84
7. 플라스틱과 그 물품, 고무와 그 물품(제39류, 제40류)	85
가. 한국의 ABS 플라스틱 분말(제39류)-1	85

나. 한국의 플라스틱 서랍(제39류)-2	86
다. 한국의 셀룰러 고무 스트립 개스킷(제40류)-1	88
라. 한국의 후드웨더스트립(제40류)-2	89
마. 한국의 고무범퍼(제40류)-3	90
8.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물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물품(제41류-제43류)	91
가. 한국의 합성가죽(제41류)	91
나. 한국의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제42류)-1	92
다. 영국의 케이스(제42류)-2	93
라. 중국의 핸드백(제43류)	95
9. 목재와 그 물품, 목탄, 코르크와 그 물품, 짚·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 재료 의 물품, 바구니 세공물과 지조세공물(제44류-제46류)	96
가. 인도의 합판 패널(제44류)-1	96
나. 중국의 캣타워(제44류)-2	98
다. 중국의 코르크 용기(제45류)	99
라. 중국의 장식 화환(제46류)-1	100
마. 인도네시아의 냅킨 링(제46류)-2	102
10.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종이·판지와 이들의 물품(제47류-제49류)	104
가. 캐나다의 황산염펄프(제47류)	104
나. 한국의 종이쇼핑백(제48류)	105
다. 중국의 아동도서(제49류)	106
1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제63류)	107
가. 중국의 살균되지 않은 실크 봉합사(제50류)	107
나. 벨기에의 3가지 울 및 나일론 혼방 새틴 직물(제51류)	108
다. 중국의 면 100% 경량 직물 2종(제52류)	110
라. 한국의 인쇄된 평직 레이온/아마 실내 장식품(제53류)	112
마. 한국의 직물 4종(제54류)	113

바. 영국의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삼(제55류)	116
사. 중국의 드림캐쳐(제56류)	117
아. 중국의 현관 매트(제57류)	119
자. 중국의 스팅글이 있는 자수 폴리에스터 장식(제58류)	121
차. 대만, 한국 및 중국의 5가지 적층 기모 니트(제59류)	122
카. 한국의 폴리에스터 100% 인쇄 경편 오픈워크 직물(제60류)	126
타. 한국의 여성 가디건(제61류)	128
파. 베트남 여성 재킷 관세 분류(제62류)	129
하.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용 절연 패드의 관세 분류(제63류)	131
12. 신발류 · 모자류 · 산류 · 지팡이 · 시트스틱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64류-제67류) ·	132
가. 다기능 농구화(제64류)	132
나. 중국의 통합 무선 헤드폰이 있는 스포츠 헬멧(제65류)	136
다. 중국의 우비(제66류)	137
라. 중국의 할로윈 날개(제67류)	139
13. 돌 · 플라스틱 · 시멘트 · 석면 ·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 와 유리제품(제68류-제70류)	140
가. 중국 골판지 기반 연마재의 관세 분류(제68류)	140
나. 중국의 고래모양 저금통(제69류)	141
다. 한국의 제빵기구(제70류)	142
14. 천연진주 · 양식진주 · 귀석 ·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 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제71류)	144
가. 중국의 글로우 팔찌(제71류)	144
15. 비금속과 그 제품(제72류-제83류)	146
가. 일본의 스크린(제72류)	146
나. 한국의 강관(제73류)	148
다. 대만의 스트레이너가 있는 배수관(제74류)	149
라. 스위스의 선재/막대(제75류)	151

마. 캐나다의 디퓨저(제76류)	152
바. 한국의 부상 슬리브(제77류)	154
사. 한국의 납괴(제78류)	155
아. 중국의 부착물이 있는 키링(제79류)	156
자. 중국의 향수병(제80류)	157
차. X선 보호 제품(제81류)	158
카. 중국의 멀티 툴(제82류)	159
타. 한국의 자동차 브래킷 및 마운트(제83류)	161
16. 기계류·전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제84류-제85류)	163
가. 한국의 세탁기 부품(제84류)	163
나. 한국의 전방표시장치(제85류)-1	165
다. 중국의 전자 웨어러블 피트니스 트래커(제85류)-2	167
라. 중국의 가상 현실 고글(제85류)-3	169
17.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제86류-제89류)	171
가. 한국의 철도 차체(제86류)	171
나. 한국의 자동차 스페이서(제87류)	171
다. 스위스의 프레임 없는 항공기창(제88류)	173
라. 캐나다의 조립되지 않은 보트 선체(제89류)	174
18.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0류-제92류)	175
가. 일본의 스마트 안경(제90류)-1	175
나. 중국의 증강 현실 고글세트(제90류)-2	177
다. 중국의 자외선 살균기 및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탁상시계(제91류) ..	178
라. 중국의 뮤직박스 장식품(제92류)	179
19.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3류)	181
가. 대만의 페인트 볼 마커세트(제93류)	181
20. 잡품(제94류-제96류)	182

가. 중국의 마사지 구성품이 있는 의자(제94류)	182
나. 한국의 배터리 팩(제95류)	185
다. 중국의 플라스틱 머리띠(제96류)	186
21. 예술품·수집품·골동품(제97류)	187
가. 독일의 그림(제97류)	187

표 목차

제1편

〈표 I-1〉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2016~2020년)	3
〈표 I-2〉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 추이(2018.3.~2020.3.)	4
〈표 I-3〉 FOMC 경제 전망(2021년 9월 기준)	5
〈표 I-4〉 미국의 수출입 현황(2016~2020년)	6
〈표 I-5〉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입 현황	6
〈표 I-6〉 2020년 우리나라의 대미 10대 수출입 품목	7
〈표 II-1〉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24
〈표 II-2〉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26

그림 목차

제1편

[그림 I-1] CROSS 조회 화면 28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I. 일반개황 및 경제개황

1. 일반개황¹⁾

- 정식 국가 명칭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수도는 워싱턴 D.C.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임
 - 동쪽은 북대서양과 서쪽은 북태평양과 접하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위치함

- 국토 면적은 983만 3,517km²로 세계 4위 수준임²⁾
 - 러시아 면적의 약 절반, 아프리카 면적의 약 3/10, 남아메리카 면적의 약 절반, 유럽연합 면적의 약 2배 이상의 크기임

- 인구는 2021년 7월 기준 약 3억 3,499만명으로 세계 3위 수준임

1)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united-states>, 검색 일자: 2021. 9. 6.

2) 50개 주와 워싱턴 D.C.만 포함하고 해외 영토는 포함하지 않음

2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 미국 인구조사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는 약 3억 3,144명이었음
- 공용어는 영어(78.2%)이며, 이외에도 스페인어(13.4%), 중국어(1.1%), 기타(7.3%)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³⁾
- 정부형태는 연방공화국(대통령 중심제)을 채택하고 있음
 -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음
- 종교는 기독교(46.5%), 가톨릭(20.8%), 유대교(1.9%), 몰몬교(1.6%), 기타 기독교(0.9%), 이슬람교(0.9%), 여호와의 증인(0.8%), 불교(0.7%), 힌두교(0.7%), 기타(1.8%), 무교(22.8%) 등으로 조사됨
- 화폐 단위는 미국 달러(USD, \$)이며, 미국 달러 인덱스(U.S. Dollar Index)는 2021년 10월 18일 기준 94.09로 전년 동일 93.43 대비 0.66포인트 상승함⁴⁾
 - 최근 1년간 원/달러(KRW/USD) 환율은 2020년 9월 달러당 1,178.62원에서 2021년 9월 1,170.37원으로 달러 강세를 보임⁵⁾

2. 경제개황

가. 주요 경제지표

-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 2.996%로 2016~2020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2020년에는 -3.486%로 크게 감소함

3) 미국에는 공식 국가 언어가 없으나 영어는 50개 주 가운데 32개 주에서 공식 지위를 획득함. 한편 하와이어는 하와이 주의 공식언어이며, 알래스카에는 20개의 토착 언어가 공식언어임

4)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quote/DXY:CUR>, 검색일자: 2021. 10. 18.

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flex/EasySearch.jsp>, 검색일자: 2021. 10. 18.

- 명목 GDP는 2016년 18조 7,450억달러에서 2019년에는 21억 4,330억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20조 9370억달러로 감소함
- 1인당 명목 GDP는 2016년 5만 8,021.4달러에서 2019년 6만 5,279.5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6만 3,543.6달러로 감소함
- GDP 대비 경상수지는 2016~2020년 기간 중 적자를 지속하였으며, 2020년에는 3.091%로 최고치를 기록함
-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는 2016년 1.262%에서 2018년 2.443%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다시 1.234%로 감소함
- 고용률은 2016년 59.13%에서 2019년 60.27%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56.31%로 감소함
- 실업률은 2016년 4.87%에서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8.31%로 증가함

〈표 1-1〉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2016~2020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¹⁾
경제성장률(%)	1.711	2.333	2.996	2.161	-3.486
명목 GDP(십억달러) ²⁾	18,745	19,543	20,612	21,433	20,937
1인당 GDP(PPP, 달러)	58,021.4	60,109.7	63,064.4	65,279.5	63,543.6
경상수지(GDP대비, %)	-2.107	-1.869	-2.182	-2.241	-3.091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	1.262	2.13	2.443	1.812	1.234
고용률(%)	59.13	59.58	59.89	60.27	56.31
실업률(%)	4.87	4.36	3.9	3.67	8.31

주: 1) 추정치

2) 명목GDP는 World Bank 자료를, 나머지 지표는 OECD 자료를 참고함

자료: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country/united-states>, 검색일자: 2021. 10. 18.

-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금리는 2.25~2.50% 수준이었으나, 2019년 8월 기준금리는 2.00~2.25%에서 금리인하가 지속되어 2020년 3월 기준금리는 0~0.25%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⁶⁾

4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 2020년의 경우 약 2주간에 걸쳐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표 1-2〉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 추이(2018.3.~2020.3.)

(단위: %)

금리변동일		증가	감소	금리수준
2020	2020. 3. 16.	0	100	0~0.25
	2020. 3. 3.	0	50	1.00~1.25
2019	2019. 10. 31.	0	25	1.50~1.75
	2019. 9. 19.	0	25	1.75~2.00
	2019. 8. 1.	0	25	2.00~2.25
2018	2018. 12. 20.	25	0	2.25~2.50
	2018. 9. 27.	25	0	2.00~2.25
	2018. 6. 14.	25	0	1.75~2.00
	2018. 3. 22.	25	0	1.50~1.75

자료: 연방준비제도,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openmarket.htm>, 검색일자: 2021. 10. 18.

- 한편 2021년 9월 연방준비제도의 FOMC 성명서에 따르면 미국 기준금리는 0~0.25%로 동결하며, 경기가 나아지고 있으나 코로나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상황이 나아지면 양적 완화(자산매입속도)를 완화(테이퍼링)할 것을 밝힘⁶⁾
- 〈표 I-3〉은 2021년 9월 FOMC 성명서에 따른 경제 전망치로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 등을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에서 5.9%로 하향 조정, 실업률은 4.5%에서 4.8%로 물가상승률은 3.4%에서 4.2%로 상향 조정함

6) 연방준비제도,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openmarket.htm>, 검색일자: 2021. 10. 18.

7) 연방준비제도,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10922a.htm>, 검색일자: 2021. 9. 22.

〈표 1-3〉 FOMC 경제 전망(2021년 9월 기준)

(단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GDP 전망치	5.9	3.8	2.5	2.0
6월 예상치	7.0	3.3	2.4	-
실업률 전망치	4.8	3.8	3.5	3.5
6월 예상치	4.5	3.8	3.5	-
물가 상승률	4.2	2.2	2.2	2.1
6월 예상치	3.4	2.1	2.2	-
핵심 물가 상승률	3.7	2.3	2.2	2.1
6월 예상치	3.0	2.1	2.1	-

자료: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1. 9. 22., p. 2.

나. 수출입 동향

1) 미국의 수출입 동향

- 2020년 기준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5.6% 감소했으며, 수입은 약 9.5% 감소함
 - 2020년 수출액은 2조 1,340억달러이며, 수입액은 2조 8,110억달러임
 - 2019년 수출액은 2조 5,820억달러이며, 수입액은 3조 1,050억달러임

- 2020년 기준 무역수지는 6,820억달러 적자를 보였으며, 전년 대비 적자폭이 30.4% 확대됨
 - 최근 5년간(2016~2020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6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표 1-4〉 미국의 수출입 현황(2016~2020년)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2,216	2,351	2,539	2,528	2,134
수입	2,718	2,903	3,119	3,105	2,811
무역수지	-502	-552	-580	-576	-677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s://www.bea.gov/data/intl-trade-investment/international-trade-goods-and-services>에서 각 연도의 pdf파일 취합하여 작성

2) 한-미 수출입 동향

- 2020년 기준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국으로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약 1,316억달러임
-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약 741억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고 대미 수입은 약 575억달러로 전년 대비 7.1% 감소하였으며, 무역수지는 약 166억달러 흑자를 기록함

〈표 1-5〉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증감률 ¹⁾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66,462	-4.8	68,610	3.2	72,720	6.0	73,344	0.9	74,116	1.1
수입	43,216	-1.8	50,749	17.4	58,868	16.0	61,879	5.1	57,492	-7.1
규모	109,678	-3.7	119,359	8.8	131,588	10.2	135,223	2.8	131,608	-2.7
수지	23,246	-9.9	17,861	-23.2	13,852	-22.4	11,465	-17.2	16,624	45

주: 1)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1. 10. 18.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10대 수출 품목은 승용차, 집적회로반도체, 자동차 부품, 전산기록매체, 무선전화기 등이며, 10대 수입 품목은 원유, 반도체제조용장비, 집적회로반도체, LPG, 가축육류 등으로 조사됨

〈표 1-6〉 2020년 우리나라의 대미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수출				수입			
	코드 ¹⁾	품목명	금액	증감률	코드 ¹⁾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7411	승용차	15,216	-0.9	1310	원유	5,390	-40.0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6,890	28.1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3,435	59.3
3	7420	자동차부품	5,494	-11.5	8311	집적회로반도체	3,119	-9.2
4	8138	전산기록매체	3,954	171.2	1350	LPG	2,930	-7.3
5	8121	무선전화기	2,262	-31.0	0221	가축육류	2,307	-3.7
6	8230	냉장고	1,607	31.7	1340	천연가스	2,095	-3.9
7	1333	제트유및등유	1,601	-52.6	7411	승용차	1,820	21.6
8	8352	축전지	1,223	30.4	2262	의약품	1,493	6.3
9	3203	타이어	1,141	-12.2	7472	항공기부품	1,316	-13.6
10	7251	건설중장비	1,050	-20.7	7471	항공기	1,293	-35.5

주: 1)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cstat/peri/ctr/CtrItemList.screen>, 검색일자: 2021. 10. 18.

II.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1. 사전심사

가. 사전심사 개요

- 미국은 1989년부터 미국 내로 수출입 예정된 물품에 대해 CBP 규정 적용 및 과세에 대해 사전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제도(Advanced Rulings)를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WTO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의 사항을 WTO 회원국 국내법에 수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은 CBP 규정(19 C.F.R 177) 사전심사(Administrative Rulings)로 정의, 신청방법, 결정서 발행 요건, 철회, 발행된 결정서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사전심사 신청가능자는 수입자, 수출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또는 이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으로 개인, 기업(corporation), 조합(partnership), 협회(association)나 그 밖의 기관 및 조직(other entity or group)을 포함하고 있음⁸⁾
- 사적인 당사자의 사업 거래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또는 특권 또는 기밀 상업 또는 금융 정보의 경우 요청자(또는 다른 이해당사자)의 경쟁적 위치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없음

8) 19 CFR 177.1(c)

- 각 사전심사 종류에 따라 담당하는 국(부서)은 다르며 해당국(부서)은 다음과 같음⁹⁾
 - 관세평가, 운송수단 등에 대해서는 본청 소속 평가 및 특별 프로그램 법규국 (Valuation and Special Programs Branch Regulations and Rulings)에서 담당하고 있음
 - 품목분류, 원산지표기, 원산지, NAFTA, 적용 가능한 무역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본청 소속 국가 상품 분류국(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이하 NCSD)에서 담당하고 있음

- 미국은 사전심사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 과세가격 사전심사(Valuation Rulings)
 - 품목분류 사전심사(Tariff Classification Rulings)
 - 운송수단 사전심사(Carrier Rulings)
 - 원산지 표시 사전심사(Country of Origin Marking Rulings)
 - 원산지 사전심사(Country of Origin Rulings)
 - 무역제도 및 무역협정에 대한 사전심사(Trade Program or Agreement Rulings)

나. 사전심사 신청 절차

1) 사전심사 신청

- 신청 방법은 전자 신청(e-Ruling, Electronic Ruling) 또는 서면 신청(Ruling letters)이 있음¹⁰⁾
 - 전자 신청 시 미국 CBP홈페이지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e-Rulings Template)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9) 정재호, 김미영, 이민선,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pp. 37~38.

10) 관세청 및 국제원산지 정보원, 「FTA 체약상대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북」『제2편』, p. 2; CBP, <https://www.cbp.gov/trade/rulings/eruling-requirements>, 검색일자: 2021. 4. 19.

10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 신청 건당 동일한 부 또는 종류의 상품(same class or kind of merchandise)으로 이루어진 최대 5개 항목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전 해당 내용을 조회하거나 수정 및 출력할 수 있음
 -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시 신청인은 제1영업일 내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확인 통지를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음
 - 전자심사 신청에 대한 모든 질문은 CBP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음
 - 특정 이유로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 인적사항, 물품 반입 항구명 등 거래 관련 모든 사실과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기재 및 첨부한 신청서(Ruling letters)를 국가 상품 분류국(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이하 NCSD)또는 미국 내 모든 CBP 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서면 신청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¹¹⁾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또는 생산자(아는 경우)의 성명 및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 해당 상품의 입국항명(아는 경우)
 - 거래 관련 설명(예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 CBP 또는 법원에서 계류 중인 상품이 아니라는 문구
 - 과거 CBP의 결정(advice) 발행 여부 및 (해당되는 경우) 그 발행기관 및 발행된 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구
 - 판결 요청에 제시된 질문이나 질문이 송장, 계약, 계약 또는 기타 문서에 명시된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문서 사본을 요청과 함께 제출해야 함
- 세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이나 도착이 영향을 받는 경우 물품의 사전 판결에 대한 요청 시 해당 물품의 사진, 도면 또는 기타 그림으로 물품이

11) 관세청 및 국제원산지 정보원, 「FTA 체약상대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북」『제2편』, p. 3; CBP, <https://www.cbp.gov/trade/rulings/eruling-requirements> 검색일자: 2021. 4. 19.

어떤 것인지 증명해야 함¹²⁾

-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수적이지 않은 한, 가능한 경우 견본 물품을 첨부할 수 있음

2) 사전심사 평가 및 결정

- 판결문에 특정 결정 또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요청서에 결정 또는 결론의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과 관련 지원 기관을 명시해야 함¹³⁾
-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경우 서면으로 미충족 요건이 기재된 통보를 받게 됨¹⁴⁾
 - 해당 개인에게는 통지일로부터 30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통지에 언급된 요구 조건에 따라 다시 요청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심사 요청에 부합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추가해야 할 정보를 시정할 때까지 심사 신청은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제출자는 언제든지 사전심사 요청을 철회할 수 있으나 요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서신, 관련 문서 등은 CBP에 보관되며 반환되지 않음
 - 해당 심사와 관련된 견해 및 관련 자료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신청인 관할 구역 세관에 제공 가능함
- 일반적으로 NCSD는 수령일로부터 달력 일 기준 30일 이내에 모든 판결을 발표함¹⁵⁾
 - 다만 실험보고서이거나 다른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간이

12) 19 CFR177.2 (3)

13) 19 CFR177.2 (6)

14) 19 CFR 177.3

15) CBP, <https://www.cbp.gov/trade/rulings/eruling-requirements>, 검색일자: 2021. 4. 19.

12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다소 연장될 수 있으며, 본청 R&R(Regulations and Rulings)의 해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결과는 접수 후 90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됨

- 사전심사 결정서에서는 사실관계, 쟁점사항, 법률검토 및 분석, 결정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됨

- 사전심사 결정의 적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제될 수 있음¹⁶⁾
 - 신청서 요청 정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입항구나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 부정확한 정보를 세관에 고의로 제공한 경우
 - 거래가 종료된 경우 등

- 사전심사 결정서를 취득한 자가 아닌 타인의 경우 판결문에 의존하거나 판결의 원칙이 서신에 설명된 거래 이외의 거래와 관련하여 적용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됨

다. 사전심사 종류

- 수입자, 수출자, 제조업자 등 관련자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과세평가, 원산지, 원산지 표시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수출입 전 CBP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음¹⁷⁾

1) 과세가격 사전심사

- 거래가 통관 목적의 물품의 평가를 포함하는 경우, 판결 요청서에는 19 CFR subpart C 152(품목 분류와 평가)에 기술된 적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16) 관세청 및 국제원산지 정보원, 「FTA 체약상대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북」『제2편』, p. 3.

17) CBP, <https://www.cbp.gov/trade/rulings/ruling-letters>, 검색일자: 2021. 4. 21.

- 사전심사 신청이 접수된 후 세관은 90일 이내에 결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해당 물품에만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에 적용되지 않도록 함¹⁸⁾

- 과세가격 사전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모든 거래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리가 가능함¹⁹⁾
 - 거래 당사들의 주소, 수입자와의 관계
 - 거래에 대한 정보, 기타 과세가격 결정 시 필요한 정보
 - 인코텀즈²⁰⁾ 조건 및 기타 거래조건 상세 내역
 - 로열티와 수수료에 대해서는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쟁점 사항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자료
 - 기존의 심사 내용, 판례 등의 참고사항 인용 내용
 - 또한 요청서에는 거래의 성격, 당사자 관계(있을 경우), 거래의 독립 당사자 관계, 수출국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다른 판매가 있었는지 여부, 대리인과의 관계 등을 설명해야 함²¹⁾

- 관세평가 사전심사의 결정 효력은 동일한 물품과 유사한 사실이 포함된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됨²²⁾

2) 품목분류 사전심사

-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물품에 대한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이하 HTS)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HTS는 적용 가능한 관세율과 다양한 무역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나타내고 있음²³⁾

18) 19 CFR 152.101(d)

19) 19 CFR Subpart C

20)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각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무역조건에 대한 국제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21) 19 CFR 177.2(2)(iii)

22) 19 CFR 177.9(3)

14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함²⁴⁾
 - 수입된 물품 조건에 대한 전체적이고 완전한 설명
 - 구성 재료
 - 미국에서의 물품 사용 용도
 - 상업적, 일반적 또는 기술적 용도
 - 삽화, 스케치, 디지털 사진, 화학적 분석, 플로우 차트, CAS(Che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등
 - 19 CFR 141.89의 특별한 상업송장 요건
 -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정보, 품목분류 판정을 내리기 위해 기타 필요한 요소 등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효력은 심사 요청서와 함께 제출된 견본과 동일한 물품 또는 명시된 설명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적용됨²⁵⁾

3) 원산지 사전심사

-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²⁶⁾
 - 외국의 제조자, 생산자, 수출자 또는 미국의 상품 수입자, 외국의 제조자, 생산자, 수출자 또는 미국의 상품 수입자, 미국에서 유사한 제품 또는 제품의 제조, 생산 또는 도매에 종사하는 노동 단체 또는 기타 노동자 협회의 미국 회원 대다수가 미국에서 유사한 제품을 제조, 생산 또는 도매하는 무역 또는 사업 협회
- 원산지 사전심사를 위해 서면으로 심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음²⁷⁾
 - 요청자의 이름, 요청자의 주요 사업지 및 요청자가 요청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23) CBP, <https://www.cbp.gov/trade/rulings/eruling-requirements>, 검색일자: 2021. 4. 21.

24) CBP, <https://www.cbp.gov/trade/rulings/eruling-requirements>, 검색일자: 2021. 4. 21.

25) 19 CFR 177.9(2)

26) 19 CFR 177.23

27) 19 CFR 177.25

- 원산지 결정이 요구되는 물품에 대한 설명
- 원산지국 및 공정 수행국
- 통관이 해당 품목이 특정 국가 또는 공정 수행국의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 정보
- 최종 결정을 위한 특정 조달처

4) 원산지 표시 사전심사²⁸⁾

- 원산지규칙 및 원산지 표시규칙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적절하게 표시되거나 라벨이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심사임
- 원산지 표시 사전심사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물품 및 용기에 표기된 상세한 내역
 - 상품의 라벨링 및 포장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미지
 - 실제 원산지 표시 외에 다른 모든 라벨 및 포장 세부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이미지
 - 수입 시 상품의 사용 또는 판매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5) 운송수단 사전심사

- 운송수단 사전심사는 항해의 목적을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심사 요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²⁹⁾
 - 거래가 선박과 관련된 경우 선박이 건조된 장소와 등록된 국가, 미국 관할 해역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정확한 사용 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28) CBP, <https://www.cbp.gov/trade/rulings/eruling-requirements>, 검색일자: 2021. 4. 27.

29) 19 CFR 177.2(2)(iv)

- 사전심사 요청 시 계획된 항해의 목적이 46 U.S.C. 289를 위반하여 물품이 연안 운송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 요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³⁰⁾
 - 모든 항구에 대해 출발 시간 및 도착 시간이 있는 일정표, 항해의 주요 목적의 결정에 관련될 수 있는 브로셔, 광고 및 기타 정보의 샘플이 제공되어야 함
- 모든 최종 결정에 대한 통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방 관보에 공표됨³¹⁾
 - 이해당사자는 연방관보에 해당 결정의 공표 후 3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의 사법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국제무역법원은 최종 결정 또는 최종 결정의 공표 거부를 검토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짐
- 운송수단 사전심사 결정효력은 심사결정서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운항 관련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됨

6) 무역제도 및 무역협정에 대한 사전심사

-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FA)과 같은 특별무역 프로그램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임³²⁾
- 본 사전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사전심사에서 요구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생산국에서 발생된 비용에 대한 정보 또한 추가적으로 요청함³³⁾

30) 19 CFR 177.2(2)(iv)

31) 19 CFR 177.29

32) CBP, <https://www.cbp.gov/trade/rulings/eruling-requirements>, 검색일자: 2021. 4. 27.

33) CBP, <https://www.cbp.gov/trade/rulings/eruling-requirements>, 검색일자: 2021. 4. 27.

가) NAFTA³⁴⁾

- NAFTA는 19 CFR 181.91-19 CFR 181.102에 따라 이루어지며 적용대상은 수입자, 캐나다 및 멕시코의 수출자 및 생산자임
- NAFTA 사전심사는 R&R 및 NCSD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역내부가가치기준에 대한 문의에 한해 R&R에서 담당하고 있음
- 미국이 NAFTA에 따라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³⁵⁾
 - NAFTA 비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 원자재가 NAFTA 체결국에 생산한 결과 부속서 401에 따라 세번 변경이 발생했는지 여부
 -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 및 원재료의 거래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간재 및 순원가(net cost of a good)와 관련된 비용 계산 기준 및 방법
 - 제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
 - 제품이 수리 및 품질 개선을 위해 NAFTA 비체결국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 시 NAFTA 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속서 311에 따라 적절한 원산지 표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부속서 300-B(섬유 및 의류용품), 부속서302.2(관세 철폐), 제7장(Agriculture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의거하여 원산지를 충족하는지 여부
 - 제7장(수입절차)에 따른 반입 가능한 제품

34) USMCA로 변경되었으나 홈페이지와 규정상 모두 NAFTA에 대해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동일하게 기재하였음

35) CBP, <https://www.cbp.gov/trade/rulings/eruling-requirements>, 검색일자: 2021. 4. 27.

- 사전심사 요청은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NAFTA거래와 관련된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함³⁶⁾
 - 해당 사실에는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식별 정보(알고 있는 경우), 수입을 예정한 항구의 명칭 또는 해당 거래 관할지역 심사 요청 사항에 대한 상세내역을 포함함

- 사전심사 결정서의 경우 발급일 또는 결정서에 별도로 표기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발생 이후의 수입물품에 대해 적용됨³⁷⁾
 - 사전심사 결정서는 수정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사전심사 결정서에 기재된 물품이 실질적으로 다르거나 사전심사 신청인이 결정서상의 당사자가 아닐 시 적용이 불가능함

- 사전심사 결정서를 취득한 신청인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신청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당사자가 아닐 시 수정 및 취소는 심사 신청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소급되어 이루어짐³⁸⁾

나) AGOA

-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 법(Africa Growth Opportunity Act, 이하 AGOA)에 따라 지정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SSA sub-Saharan African countries)의 상품은 면세를 적용함³⁹⁾
 - 섬유 및 비섬유 제품을 모두 포함하며 2025년 9월 30일까지 관세가 면제됨

- 관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킨 제품을 AGOA 대상국에서 미

36) CBP, <https://www.cbp.gov/trade/rulings/eruling-requirements>, 검색일자: 2021. 4. 27.

37) CBP, <https://www.cbp.gov/trade/rulings/eruling-requirements>, 검색일자: 2021. 4. 27.

38) CBP, <https://www.cbp.gov/trade/rulings/eruling-requirements>, 검색일자: 2021. 4. 27.

39) CBP, <https://www.cbp.gov/trade/priority-issues/trade-agreements/special-trade-legislation/african-growth-and-opportunity-act>, 검색일자: 2021. 4. 27.

국으로 직수출해야 하며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했을 시 AGOA 대상국에서 생산된 원자재 및 제품처리 비중이 제품 총가치의 35% 이상이어야 함⁴⁰⁾

라. 심사결정의 수정 및 취소

- 관세 거래와 관련하여 본 장에 따른 해석적 판결(판결 결정서 또는 내부 자문 각서(internal advice memorandum))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판결 또는 결정을 관보에 게시해야 함⁴¹⁾
- 개인은 불리한 해석적 판결과 그러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에 대한 해석을 관세청 내의 더 높은 수준의 권한을 가진 부서에 재심사를 통해 요청할 수 있음⁴²⁾
- 사업상의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입증되면, 재심사는 이의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함
 - 최소 60일 동안 유효했던 사전 해석적 판결 또는 결정을 수정(사무상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것 이외)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⁴³⁾
 - 60일 이상의 기간으로 결정하는 경우 수정된 결정 내용을 세관 게시판(Customs Bulletin)에 기존의 결정과 함께 공지한 후 30일 동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⁴⁴⁾
 - 수정 및 취소된 내용의 결정서신은 세관 게시판에 공표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효력이 있음
- 법원 결정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결정은 최종 결정 전 공개 의견의 기회 통지

40) CBP, <https://www.cbp.gov/trade/priority-issues/trade-agreements/special-trade-legislation/african-growth-and-opportunity-act>, 검색일자: 2021. 4. 27.

41) 19 U.S.C 1625(a)

42) 19 U.S.C 1625(b)

43) 19 U.S.C 1625(c)(1)

44) 19 U.S.C 1625(c)(2)

(opportunity for public comment)와 함께 세관 게시판에 공표되어야 함⁴⁵⁾

2. 품목분류

가. 품목분류 개요

1) 품목분류 의의 및 HS 협약

가) 품목분류 의의

- 품목분류(品目分類, nomenclature, classification)란 상품분류(商品分類)라고도 하며, 여러 가지 물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물품별로 일정한 명칭 및 부호를 부여하고 배열하는 작업을 말함⁴⁶⁾
 - 또한 구체적인 물품이 이와 같이 작성된 물품배열표상의 어느 물품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의 의미로도 사용됨
- 어떤 물품이 수입된 경우에 해당 물품이 관세목적으로 제정된 품목분류표인 관세율표상의 어느 물품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는 품목분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해당 물품에 적용할 구체적인 세율을 확정할 수 있음⁴⁷⁾
 - 품목분류 작업은 관세의 과세요건의 확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그 복잡성으로 인하여 가장 많은 민원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관세행정분야 중의 하나임
- 관세의 부과목적 이외에 수출입 품목의 관세의 감면 및 환급,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표시 및 수출입요건 확인 등의 세관 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 필

45) 19 U.S.C 1625(d)

46)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p. 260.

47) 김기인(2015), p. 260.

수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무역통계를 작성할 때에도 품목분류의 체계에 따라 통계분석을 진행하므로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는 매우 중요함⁴⁸⁾

나) HS 협약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는 1988년 1월 1일 상품의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물품 및 관세 분류체계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 협약')을 채택함⁴⁹⁾
- HS 협약은 전문(Preamble)과 20개 조항(Articles) 및 부속서(Annex)로 구성됨
 - HS 위원회(The Harmonized System Committee)는 사용자의 요구와 기술 및 국제무역 패턴의 변화에 따른 HS 부호체계의 개선 및 신상품 품목분류의 논의 및 결정을 위해 약 5년을 주기로 HS 품목분류표를 개정하고 있음⁵⁰⁾
 -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HS 제7차 개정안(The 2022 Revisions of the Harmonized System, HS 202)이 시행될 예정임⁵¹⁾
- HS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란 특정 수출입물품에 대해 HS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HS 협약의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에 규정된 해당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⁵²⁾
- WCO에 따르면 2020년 10월 1일 기준 160개 협약 체약국과 212개 국가·경제 연합체가 협약의 부속서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적용하고 있음⁵³⁾

48) 김진규, 「제7차 HS 협약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20. 12., pp. 128~129.

49)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 9.

50) HS 협약 제7조 제(a)호

51) WCO, <http://www.wcoomd.org/en/topics/nomenclature/instrument-and-tools/hs-nomenclature-2022-edition/amendments-effective-from-1-january-2022.aspx>, 검색일자: 2021. 9. 6.

52) 박철구, 『관세법 핵심쟁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9, p. 277.

53) WCO, <http://www.wcoomd.org/en/topics/nomenclature/overview/list-of-contracting-part>

- 각 협약 체결국은 협정에서 규정한 체결국의 의무에 따라 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자국의 관세품목분류표와 통계품목분류표를 HS 체계와 일치시켜 사용해야 함⁵⁴⁾
 - 체결국인 우리나라는 HS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HS 품목분류표를 자국의 사정에 맞게 국내법으로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2) HS 품목분류표

- HS 협약은 HS 체계의 일반구조와 정의에 대하여 HS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호(Headings)와 소호(sub-headings) 및 그들과 관련된 부호(Numerical codes), 부(Section)·류(Chapter)·소호의 주(Notes) 및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GRI)으로 구성된 품목분류표(Nomenclature)를 의미한다고 규정함⁵⁵⁾
- HS 품목분류표는 통칙, 주, 세번(호 및 소호)의 3대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짐⁵⁶⁾
 - 통칙은 HS 품목분류표 첫 부분에 규정되어 있음
 - 주는 부의 주(section notes), 류의 주(chapter notes) 및 소호의 주(sub-heading notes)가 있음
 - 각 부, 류, 호·소호의 분류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다른 부 또는 류 사이의 관계를 명시하며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는 등 품목분류상의 지침을 규정함⁵⁷⁾
 - 세번은 호 및 소호로서 HS 품목분류표는 모든 물품을 21개의 부로 분류한 후, 이를 96개(제77류 유보)의 류로 분류하고 다시 4단위 호로 분류하며, 4단위 호는 6단위 소호로 다시 분류하고 있음⁵⁸⁾

ies-to-the-hs-convention-and-countries-using-the-hs.aspx, 검색일자: 2021. 9. 6.

54) 박철구(2019), p. 277.

55) HS 협약 제1조 제(a)호

56) 국제원산지정보원, 『우리나라와 체결상대국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규정 상이사례 분석』, 2011. 10., p. 8.

57) 국제원산지정보원(2011), p. 9.

58) 김기인(2015), p. 262.

- 제98류·제99류는 체약국이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보해 두고 있음⁵⁹⁾
- HS 협약에 따라 6단위 소호까지만 분류되어 있어 있으나 이를 사용하는 체약국이 관세목적 또는 통계목적상 이를 더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⁶⁰⁾

□ 한편 HS 품목분류는 원재료로부터 시작하여 가공공정도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농·수·임산물, 광물 및 화공약품, 경공업제품, 기계·전기기기, 전자·정밀기구, 잡품 및 미술품 순으로 배열되어 있음⁶¹⁾

3)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 HS 품목분류표는 HS 제도의 기준이 되는 규칙으로서 HS 제도의 각각의 세번의 통일된 법적 해석(uniform legal interpretation)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을 맨 앞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이라고 함⁶²⁾

□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에는 6개의 통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통칙들은 계층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되는데, 통칙1은 통칙2에 우선하고, 통칙2는 통칙3에 우선하며 이후의 통칙들도 통칙4, 통칙5, 통칙6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음⁶³⁾

- 통칙1은 가장 기본이 되는 통칙으로서 최우선적으로 각 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도록 규정함⁶⁴⁾
- 통칙2는 각 호의 용어상 분류되는 물품의 적용범위를 불완전·미완성 물품, 혼합물·결합물까지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 예외적 규정임⁶⁵⁾
- 통칙3은 혼합물·결합물 등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임⁶⁶⁾

59) HS 협약 제3조 제1항 제(a)호

60) HS 협약 제3조 제3항

61) 국제원산지정보원(2011), p. 9.

62) 김기인(2015), p. 264.

63) 김기인(2015), pp. 264~265.

64) 국제원산지정보원, 「품목분류실무, 원산지결정기준」, 2010, p. 29.

65) 국제원산지정보원(2010), p. 34.

- 통칙4는 과학기술의 발달 및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신상품 개발 등에 따라 수출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함⁶⁷⁾
- 통칙5는 보완적 적용규칙으로서 제시되는 물품이 포장된 경우 해당 포장을 내용물과 같이 분류할 것인지 또는 분리하여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함⁶⁸⁾
- 통칙6은 소호의 분류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한 규정으로서 먼저 4단위 호를 결정한 이후에 5단위, 6단위 세분류 시 적용되는 규정임⁶⁹⁾

〈표 II-1〉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구분	내용	
통칙1	이 표의 부·류·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칙 2 내지 통칙 6 규정에 따른다.	
통칙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a)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b)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통칙 3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칙3	통칙 2(b)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a)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

66) 국제원산지정보원(2010), p. 39.

67) 국제원산지정보원(2010), p. 46.

68) 국제원산지정보원(2010), p. 48.

69) 국제원산지정보원(2010), p. 50.

구분	내용	
		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b)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c)	통칙3(a) 또는 통칙 3(b) 규정에 따라 부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통칙4	통칙 1호 내지 3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다음의 물품에는 통칙 1 내지 4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통칙5	(a)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충 케이스·제도시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b)	통칙 5(a)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통칙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는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자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나. 미국의 품목분류

- 미국은 1988년 1월 1일 HS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제1204조에 HS 협약을 국내법화한 미국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이하 ‘HTSUS’)를 채택하여 1989년 1월 1일 발효하였음⁷⁰⁾

70)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 32.

- HTSUS에는 품목분류번호, 물품설명, 수입신고 시 사용해야 하는 수량의 단위, 정상무역관계를 가진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비특혜 관세 및 특혜 관세), 정상무역관계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온라인 사이트(<https://hts.usitc.gov>)에서 확인할 수 있음
- HS 협약의 품목분류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상품 분류에 사용되는 해석규칙, 부·류 및 소호의 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수용하고 있음⁷¹⁾
- HS 협약을 적용하고 통합함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HTSUS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⁷²⁾
 - (1) 통칙(General Notes)
 - (2)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RI)
 - (3)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 (4) 관세율 및 관련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는 4자리, 6자리 또는 8자리의 HS Code로 구성된 22개 부, 99개 류, 부 및 류의 주와 미국의 추가 주(Additional U.S. Notes)
 - (5) 화학 물질, 의약품, 염료 중간체에 대한 부록

〈표 11-2〉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구분	내용
추가 규정1	특별한 조항이나 정황상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a) (실제 용도가 아닌)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품목번호의 경우, 해당 품목번호에 분류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수입물품이 속하는 등급 또는 종류의 상품이 수입 날짜 또는 그 직전에 미국에서 사용되는 용도이며, 결정 요인이 되는 용도는 주된 용도이다.
	b) 미국에서 사용될 실제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품목번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수입될 때 그러한 의도로 수입되어야 하며, 수입 후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통관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71) 신상화·박지우·이재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_미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12., p. 88.

72)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 32.

구분	내용	
c)	상품의 주 용도 또는 유일한 용도가 어떤 물품의 부품인 경우 그 물품의 부품을 위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부품이나 부대용품을 위한 조항이 해당 부품이나 부대용품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보다 우세하게 해결될 수 없다.	
d)	직물 재료가 거론된 조항에 분류할 때는 제 11부에 담긴 2가지 이상의 직물 재료가 들어간 혼방직물에 관한 원칙을 따른다.	

자료: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 35.

- HS 협약은 추후 사용을 위한 제77류와 국가별 사용이 가능한 제98류 및 제99류를 유보하고 있는데 미국은 HTSUS 제22부에 제98류 및 제99류를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음⁷³⁾
 - 제98류(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는 특별한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면세 또는 부분 면세 반입이 허용되는 규정임⁷⁴⁾
 - 제99류(Temporary Legislation)는 (1) 제1류 내지 제98류까지의 조항을 일시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부수적인 법에 따라 추가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타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를 규정함⁷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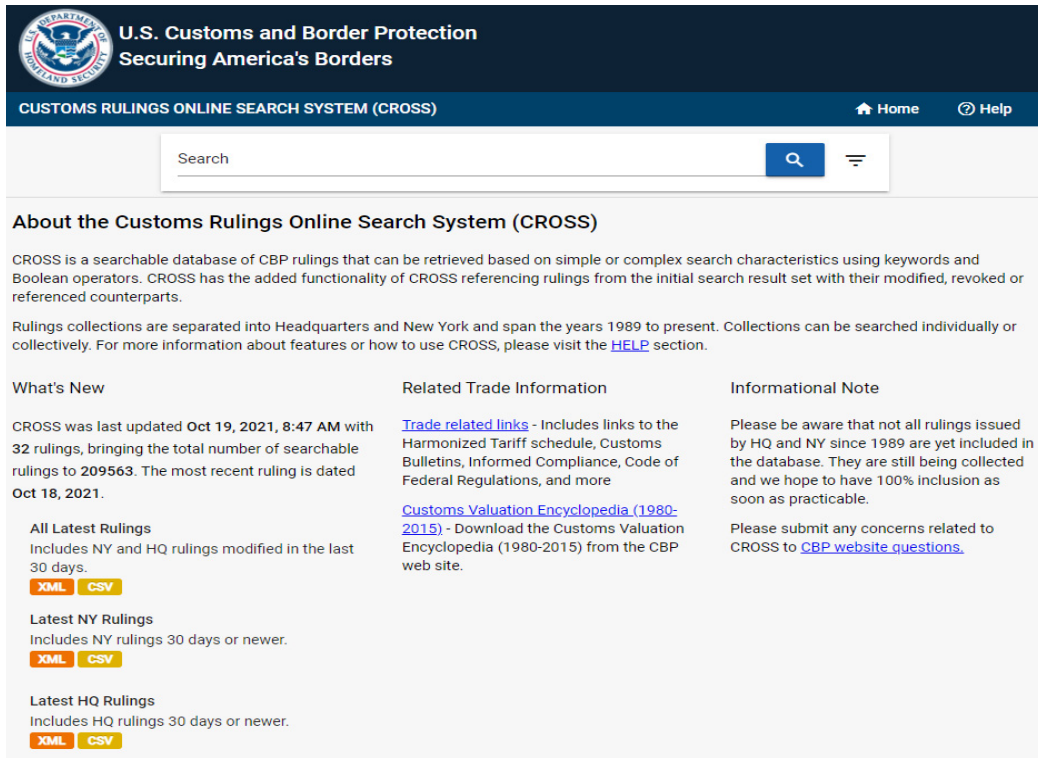
- HS Code는 국제통일단위인 6단위에 2단위를 추가한 8단위를 관세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8단위에 2단위를 추가한 10단위를 통계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⁷⁶⁾
 - 10단위 통계보고용번호(Statistical-Reporting Number)는 통계자료 수집용으로 HTSUS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따라서 품목분류에 대한 권한으로 인용될 수 없음

- 품목분류 심사결정 내용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 홈페이지 내 사전심사 온라인 사이트인 CROSS(Customs Ruling Online Search System: <http://rulings.cbp.gov>)에 등록 및 공표되고 있음

73) 신상화 외(2017), p. 88.
 74)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 32.
 75)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 33.
 76)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 34.

- 키워드 검색을 통해 유사 품목에 대한 심사 결정문도 조회할 수 있음

[그림 1-1] CROSS 조회 화면



자료: CBP, <http://rulings.cbp.gov>, 검색일자: 2021. 9. 6.

- 본 연구에서는 HTSUS 제1류-제97류까지의 품목분류사례를 다루었으며, 각 결정 사례는 크게 1) 물품개요 2) 결정세번 및 사유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음
 - 결정사례는 크게 부와 부에 해당하는 류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결정사례마다 참조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참조번호로 링크를 대신함
 - 미국의 HTSUS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였으므로 편의상 HTSUS 표기는 생략하였음
 - 제1류-제97류까지의 사례를 선정할 시 사례에 대한 논의가 있거나 최신의 사례를 담고자 하였으나 일부 류의 경우 해당 조건에 대한 사례가 없어 사례에 대한 설명과 비교적 최신사례를 사용하였음

Ⅲ. 품목분류사례

1.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제1류-제5류)

가. 독일의 살아 있는 말(제1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0101.21.0010호, 제0101.21.0020호, 제0101.29.0090호이며 시행일은 2016년 5월 4일, 참조번호는 N274573임

1) 물품개요

- 살아 있는 말은 4년 이상 된 종마(stallion)와 거세마(gelding)로 이는 번식용 말과 경주마로 구분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번식용 말(수컷)의 경우 제0101.21.0010호로, 번식용 말(암컷)의 경우 제0101.21.0020호로, 경주마의 경우 제0101.29.009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제1류의 해설에서는 제0101호를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버새로 분류하고 있음
 - 제0101.21.0010호는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버새: 말: 번식용: 수컷으로 분류하고 있음
 - 소호해설에 따르면 제0101.21호에서 번식용 동물(pure-bred breeding animals)

에는 소관 국가기관에서 순종(pure-bred)으로 간주하는 번식용 동물로 한정하여 분류함

- 제0101.21.0020호는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버새: 말: 번식용: 암컷으로 분류하고 있음
- 제0101.29.0090호는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버새: 말: 기타: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냉동 염지닭(제2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0207.14.0040호이며 시행일은 2006년 12월 27일, 참조번호는 N004245임

1) 물품개요

- 냉동 염지닭은 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조리되지 않은 육계를 절단하여 닭육수(Chicken Broth), 인산나트륨, 카라기난, 물과 소금으로 구성된 마리네이드(marinade)를 최대 35%까지 주입 또는 텀블링(tumbling)한 것임
- 해당 물품은 개별 냉동 후 물품을 냉동실 화상(freezer burn)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약으로 처리하여 개별 또는 혼합하여 포장함

2) 결정세번 및 사유

- 남아프리카 공화국 업체는 해당 물품을 제1602.32.00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제16류의 해설에서는 제1602호를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meat)·설육(meat offal)이나 피로 분류하고 있음
- 제1602.32.00호는 닭으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해당 물품은 제16류가 아니라 제2류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제1602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함
 - 해당 종류의 육류 제품의 경우 마리네이드는 제품의 자연적 특성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본질적인 특성과 조리되지 않은 냉동 닭고기로 사용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0207.14.004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kg당 17.6센트임
 -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중 절단육과 설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 제0105호의 가금류에는 살아 있는 가금만을 분류하며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오리, 거위, 칠면조, 기니아새로 한정함

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참치 뱃살(제3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0304.49.0090호이며 시행일은 2012년 3월 27일, 참조번호는 N209981임

1) 물품개요

- 참치 뱃살(tuna loins)은 냉장(냉동이 아닌 것) 상태의 신선한 황다랑어와 눈다랑어의 뱃살 부위임
 - 뱃살 부위는 원어 한 마리에서 머리, 내장, 꼬리를 제거한 뒤 몸통을 반으로 가른 상태인 필레(fillet)를 4부분으로 절단한 것으로 껍질 부분은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제거되거나 제거되지 않음
 - 해당 물품은 수송 상자에 신선/조리되지 않은/냉장 상태로 수입됨

2) 결정세변 및 사유

- 해당 물품은 제0304.49.009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어류의 필레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라. 캐나다의 치즈 부산물(제4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0406.90.4100호 및 제0406.90.4200호이며 시행일은 2012년 5월 24일, 참조번호는 N216717임

1) 물품개요

- 치즈 부산물은 우유를 가공하여 만든 치즈의 제조공정에 따라 발생하는 치즈 조각, 치즈 슬라이스, 치즈 껍질, 치즈 슬러리 등 여러 가지 부산물로 구성됨
 - 사실상 모든 재료는 일종의 치즈 형태이며, 이러한 재료에 포함되는 액체 유청은 부수적(1% 미만)임
 - 재료는 라이닝 강철 또는 개별 통(barrel)에 수집되는데, 일반적으로 개별 통의 내용물은 균일하며 한 종류의 치즈 부산물로 구성되지만 동일 선적 건의 다른 통에는 다른 종류의 치즈가 들어 있음
 - 예를 들어 한 통에는 파르메산 치즈의 부산물이 포함될 수 있고, 다른 하나에는 체다 치즈의 부산물이 포함될 수 있음

2) 결정세변 및 사유

- 캐나다 업체는 치즈 부산물은 “사람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러한 유형의 재료는 밍크농장이나 양돈장에 직접 판매하여 동물사료로 사용된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는 분석, 다른 사료 성분과 혼합, 용융, 선별, 열처리 및 탈수(분무 건조 또는 벨트 건조) 공정을 거침
 - 이러한 공정의 결과 물질은 “맛이 좋고 밀도가 높은 분말 형태의 사료 성분”이 될 것이며, 동물사료 제조업체에 판매되어 송아지와 어린 돼지의 사료로 사용됨
- 이에 따라 미국에서 의도된 가공 및 최종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제2309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제23류의 해설에서는 제2309호를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치즈 부산물은 제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수입된 상품은 실제로 제4류에서 규정하는 치즈임
- 제23류의 주1에 따르면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부산물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즉 해당 물품은 치즈로서 제4류의 제0406호는 치즈와 커드를 명시함
 - 호의 용어가 품명(eo nomine provision)으로 정해진 경우 입법적 의도, 법원 판결, 행정부의 지침과 상반되는 의도나 제한이 없거나 상업적인 의미에 대립되는 반증이 없는 모든 형태의 상품을 포함함
- 또한 제0406호는 사용 규정(use provision)도 아니며, 반드시 물품의 품질, 완전성 또는 시장성에 의존하지도 않음
- 예를 들어 변형되거나 손상된 치즈는 관세 분류 목적상 동물사료 제제 또는 동물사료 성분이 되지 않음
- 수입 치즈 부산물의 각 부분은 치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소호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치즈로 구성된 경우 여러 품목분류가 필요함

- 예를 들면, 숙성된 파르메산 치즈 부산물로 구성된 경우 할당관세 적용기간 동안 제0406.90.4100호로, 할당관세 적용기간 종료 후 제0406.90.42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각각 15%, kg당 2.146달러임
- 제0406.90.4100호는 우유로 만든 로마노, 레지아노, 파르메산, 프로볼로네 및 프로볼레티 치즈 중 기타의 우유로 만든 치즈로 제4류 추가 주 21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 제0406.90.4200호는 우유로 만든 로마노, 레지아노, 파르메산, 프로볼로네 및 프로볼레티 치즈 중 기타의 우유로 만든 치즈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마. 뉴질랜드의 냉동 송아지뼈(제5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0506.90.0020호이며 시행일은 1995년 4월 17일, 참조번호는 NY 808024임

1) 물품개요

- 냉동 송아지뼈는 뒷다리(뒷다리 정강이뼈 또는 경골과 비골, 다리뼈 또는 대퇴골)와 앞다리(앞다리 정강이뼈 또는 요골과 척골, 팔뼈 또는 상완골)로 구성됨
- 수프 스톡(soup stock)을 만드는 데 사용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물품은 제0506.90.002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acid)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중 기타의 뼈, 조잡한 것, 찢 것, 간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2. 식물성 생산품(제6류-제14류)

가. 에콰도르의 다육식물(제6류)-1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0602.1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16년 6월 30일, 참조번호는 N276334임

1) 물품개요

- 다육식물은 에케베리아(Echeveria)종의 뿌리가 없는 절단(Succulent) 식물로 짧은 구근이 로제트(rosette)를 형성하는 관상용 다육식물임
 - 해당 물품은 관상용 정원 식물 용도로 수입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물품은 제0602.10.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4.8%임
 -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 꺾꽂이용 가지· 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mushroom spawn)의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나. 중국의 대나무 조명(제6류)-2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0604.99.6000호이며 시행일은 2010년 12월 21일, 참조번호는 N135397임

1) 물품개요

- 대나무 조명은 길이가 약 40인치의 길이 없이 건조된 베이지색의 얇은 대나무 묶음으로 구성됨
 - 3개의 묶음은 내장된 타이머를 통합하는 배터리 상자에 연결되는 공통 전기 케이블을 가진 총 45개의 투명한 마이크로 LED 램프로 장식되어 있으며, 상자에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 3개의 배터리(C타입)를 장착함

2) 결정세번 및 사유

- 중국 업체는 해당 물품을 제0604.99.3000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제6류의 해설에서는 제0604호를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풀·이끼·지의(lichens)(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하고 있음
 - 제0604.99.3000호는 기타의 건조 또는 표백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해당 물품은 추가적인 구성 요소 또는 재료를 포함하는 제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건조 또는 표백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제0604.99.3000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0604.99.6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7%임
 -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풀·이끼·지의(lichens)(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다. 이란의 다진 파, 다진 달의 잎, 미탈각 피스타치오, 탈각 또는 조각낸 피스타치오, 탈각 아몬드, 탈각 헤이즐넛(제7류-제9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0712.90.8580호, 제0802.12.0000호, 제0802.22.0000호, 제0802.50.2000호, 제0802.50.4000호, 제0910.99.5000호이며 시행일은 2002년 8월 30일, 참조번호는 I85579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다진 파, 다진 달의 잎, 미탈각 피스타치오, 탈각 또는 조각낸 피스타치오, 탈각 아몬드, 탈각 헤이즐넛으로 6가지로 구성됨
 - 다진 파는 자연 건조된 100% 다진 파임
 - 다진 달의 잎은 자연 건조된 100% 다진 달의 잎임
 - 미탈각 피스타치오는 자연 건조된 100% 피스타치오임
 - 탈각 또는 조각낸 피스타치오는 껍데기를 벗긴 또는 조각낸 100% 생피스타치오임
 - 탈각 아몬드는 자연 건조된 100% 껍데기를 벗긴 생아몬드임
 - 탈각 헤이즐넛은 자연 건조된 100% 껍데기를 벗긴 생헤이즐넛임
- 모든 품목은 50~500파운드 무게의 양으로 수입되며, 식품 등급의 비닐 봉투에 대량 포장된 후 무게가 100kg을 초과하지 않는 판지 상자에 포장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다진 파는 제0712.90.858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8.3%임
 -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중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의 기타로 분류됨

- 다진 달의 잎은 제0910.99.5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생강, 사프란, 심황(강황), 타임, 월계수 잎, 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중 기타의 달로 분류됨

- 탈각 피스타치오는 제0802.50.2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kg당 0.9센트임
 -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데기를 벗겼는지에 상관없다)의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피스타치오로 분류됨

- 탈각 또는 조각낸 피스타치오는 제0802.50.4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kg당 1.9센트임
 -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데기를 벗겼는지에 상관없다)의 껍데기를 벗긴 피스타치오로 분류됨

- 탈각 아몬드는 제0802.12.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kg당 24센트임
 -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데기를 벗겼는지에 상관없다)의 껍데기를 벗긴 아몬드로 분류됨

- 탈각 헤이즐넛은 제0802.22.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kg당 14.1센트임
 -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데기를 벗겼는지에 상관없다)의 껍데기를 벗긴 헤이즐넛 또는 코리루스종(Corylus spp)으로 분류됨

라. 인도의 도정된 쌀(제10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006.30.9065호이며 시행일은 2015년 2월 9일, 참조번호는 N258909임

1) 물품개요

- 도정된 쌀은 Tilda Sona Masoori 브랜드의 20파운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중립종 쌀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CBP는 해당 물품은 도정된 쌀이며 데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도정된 쌀에 적용되는 제1006.30.9065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kg당 1.4센트임
 - 쌀: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기타: 중립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마. 아일랜드의 귀리(제11류)-1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104.12.0000호 및 제1104.22.0000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6월 6일, 참조번호는 N304257임

1) 물품개요

- 플라하반(Flahavan's) 브랜드의 아이리시 스틸컷 오토밀(Irish Steel Cut Oatmeal)과 점보 오토밀(Jumbo Oats Flakes)은 제품에 물 또는 우유를 추가하고 스토브 또는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는 귀리 제품임
 - 아이리시 스틸컷 오토밀은 아일랜드산 100% 천연 통곡물 귀리로 배조(kilning), 냉각, 세척, 등급분류, 껍질 벗기기, 절단, 조리, 냉각 건조를 거쳐 제조되며, 소매용 28온스 캔에 포장되어 있음
 - 점보 오토밀은 100% 통곡물 귀리로 배조, 냉각, 세척, 등급분류, 껍질 벗기기, 절단, 조리, 압연, 냉각 건조를 거쳐 제조되며, 소매용 500g 패키지에 포장되어 있음

2) 결정세변 및 사유

- 점포 오토밀은 제1104.12.0000호로, 아이리시 스틸컷 오토밀은 제1104.22.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각 kg당 1.2센트, 0.5%임
 - 점포 오토밀은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빵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귀리로 분류하고 있음
 - 아이리시 스틸컷 오토밀은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빵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귀리로 만든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바. 스페인의 감자 플레이크(제11류)-2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1105.2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18년 11월 28일, 참조번호는 N301780임

1) 물품개요

- 감자 플레이크는 감자, 유화제(지방산의 모노 및 디글리세리드), 안정제(이인산), 산도 조절제(구연산), 향산화제(아스코르브산의 지방산 에스테르) 및 메타중아황산나트륨(방부제)으로 구성됨

2) 결정세변 및 사유

- 감자 플레이크는 제1105.20.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kg당 1.3센트임

-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중 플레이크, 알갱이 및 펠릿으로 분류하고 있음

사. 캐나다의 햄프씨드(제12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207.99.036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6월 8일, 참조번호는 N319371임

1) 물품개요

- 햄프씨드는 탈피 햄프씨드(Hulled Hemp Seeds), 멸균 햄프씨드(Sterilized Hemp Seeds), 포장 햄프씨드(Whole Hemp Seeds) 3가지 종류로 각각 탈피, 멸균, 포장된 물품임
 - 탈피 햄프씨드는 100% 껍질을 벗긴 햄프씨드로 소매 포장(0.9온스 및 5파운드) 및 벌크(25파운드, 50파운드 및 2천파운드)로 수입됨
 - 멸균 햄프씨드는 100% 멸균된 햄프씨드로 벌크(50파운드 및 2천파운드)로 수입됨
 - 포장 햄프씨드는 100% 포장된 햄프씨드로 벌크(50파운드 및 2천파운드)로 수입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CBP는 제12류에 대한 총설에 따라 햄프씨드의 탈피, 멸균, 포장의 처리는 제1207호에 적절하게 분류한다고 결정함
 -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래 모양·부서진 것·잘게 부순 것·탈곡한 것·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음. 또한 그들은 보존성을 높이거나(예: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 일부의 제거에 의해서), 쓴맛을 제거하거나, 항영양인자(antinutritional factors)를 불활성화시키거나,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열처리를 한 경우도 있음.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천연 생산품으로서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 따라서 탈피, 멸균, 포장 3가지의 햄프씨드는 모두 제1207.99.036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그 밖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아. 한국의 생강농축액(제13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302.19.4040호이며 시행일은 2018년 4월 4일, 참조번호는 N295109임

1) 물품개요

- 생강농축액(Ginger Concentrate-45)은 음료 및 가공 식품에 풍미를 부여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으로 생강추출물(93.5%)과 텍스트린(6.5%)으로 구성됨
- 정제수를 이용하여 추출, 여과하여 생강추출물을 텍스트린과 혼합, 용해하고 진공농축기를 통해 용해성 고형분 함량이 45%가 되도록 농축하고 멸균함
- 해당 물품은 각 18kg, 20kg, 22.5kg, 25kg, 240kg, 250kg의 캔 또는 드럼, 폴리에틸렌백에 포장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생강농축액은 제1302.19.404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임
-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중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기타: 인삼; 마취, 예방 또는 치료 특성을 갖는 물질: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자. 멕시코의 수세미(제14류)-1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404.90.3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5월 27일, 참조번호는 N319003임

1) 물품개요

- 멕시코의 수세미는 용설란과(Agave lechugilla)에서 파생되는 100% 천연 이스틀리(ixtle) 섬유(istle 또는 tampico 섬유라고도 함)로 만든 수세미임
 - 섬유를 느슨하게 묶인 원형 형태로 만들어 모양 유지를 위한 접착제와 같은 다른 추가 재료는 없으며 가정용 수세미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멕시코 업체는 해당 물품을 제4602.19.2940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wickerwork)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 제품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해당 물품은 제4602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함
 - 이스틀리(ixtle) 섬유를 느슨하게 묶어 만든 수세미는 제4602호에 포함되는 바구니 및 지조세공물과 같이 조립, 구성된 제품의 정의에는 적합하지 않음
 - 또한 제1404.90.3000호에서 해당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호의 용어가 품명(eo nomine provision)으로 정해진 경우 입법적 의도, 법원 판결, 행정부의 지침과 상반되는 의도나 제한이 없거나 상업적인 의미에 대립되는 반증이 없는 모든 형태의 상품을 포함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1404.90.3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식물성 생산품: 기타: 주로 비나 브러시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재료 [예: 수수류·피아사바(piassava)·카우치 그라스(couch-grass)와 이스털리(istle)], 타래나 다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스틀리(ixtle)로 분류하고 있음

차. 인도의 말린 압연 디오스파이로스 멜라녹실론 잎(제14류)-2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404.90.9090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7월 10일, 참조번호는 N304797임

1) 물품개요

- 말린 압연 디오스파이로스 멜라녹실론 잎(Diospyros Melanoxylon Leaves)은 힌디어 명칭인 텐두(tendu)로 식별되며 담배의 포장지와 유사한 기능을 하여 담배를 가득 채운 후 점화하여 흡입함
 - 잎은 크기와 색상별로 분류되고 미리 압연된 화씨 200~220도의 온도로 각 개별 튜브의 건조 과정이 완료되면 100% 식용 금으로 포장됨
 - 담배나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튜브는 제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식품 등급 유리튜브에 삽입됨

2) 결정세변 및 사유

- CBP에 따르면 말린 압연 디오스파이로스 멜라녹실론 잎과 함께 제공되는 나무 막대는 세트에 분류되는 상품의 기준을 충족하고 서로 다른 호(제1404호 및 제4417호)로 분류할 수 있는 품목으로 구성되며,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기에 적합함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따르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에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함
 - 잎과 막대의 두 가지 구성 요소 중 잎은 세트 사용과 관련하여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막대만으로는 흡연에 사용될 수 없고 잎을 포장하는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최종 사용을 촉진할 뿐 막대가 없다고 해서 사용자가 잎을 넣고, 포장, 점화, 연기를 피우는 능력을 손상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은 디오스파이로스 멜라녹실론 잎이라고 결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1404.90.909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3.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제15류)

가. 스페인의 해바라기 오일(제15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1512.19.0020호이며 시행일은 2018년 11월 28일, 참조번호는 N301780임

1) 물품개요

- HOSO 해바라기 오일은 해바라기 씨에서 여과, 증류, 탈취, 방한, 표백 등의 과정을 거쳐 오일을 추출한 후 25kg의 플라스틱 병에 담긴 오일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HOSO 해바라기 오일은 제1512.19.002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kg당 1.7센트 +3.4%임
 - 해바라기씨유·잇꽃유·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중 기타의 해바라기씨 오일로 분류하고 있음

4.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응물(제16류-제24류)

가. 필리핀의 참치통조림(제16류)-1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604.19.1000호 및 제1604.19.25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8월 26일, 참조번호는 N313572임

1) 물품개요

- 참치통조림은 생선(Auxis thazard 또는 Euthynnus Affinis)을 손질하고 요리하여 머리 및 뼈 등은 제거하고 나머지 등심은 포장 및 냉동하여 소금과 물 또는 기름을 첨가하여 만들어짐
 - Auxis thazard는 물치다래, 물치점다랑어, 가다랑어, 버니토(bonito) 및 기타

등을 포함하여 수많은 일반 및 지역 이름을 가지고 있음

- 마찬가지로 Euthynnus Affinis는 카와카와, 흑가다랑어, 소형다랑어, 짐다랑어, 버니토(bonito) 및 기타 등으로 알려져 있음

2) 결정세변 및 사유

- 필리핀 업체는 해당 물품을 제1604.14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의 다랑어·가다랑어·버니토(bonito)[사르다(sarda)종]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해당 물품은 제1604.14호에서 분류하는 참치와는 다른 종류로 제1604.14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1604.19.1000호 및 제1604.19.25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각 4%, 5%임
 - 제1604.19.1000호는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기타(방어를 포함한다):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름에 담그지 않은 것: 가다랑어, 방어 및 명태로 분류하고 있음
 - 제1604.19.2500호는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기타(방어를 포함한다):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름에 담근 것: 가다랑어, 방어 및 명태로 분류하고 있음

나. 한국의 해물육수다시팩(제16류)-2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1604.20.0590호이며 시행일은 2018년 5월 9일, 참조번호는 N295962임

1) 물품개요

- 해물육수다시팩(Roasted Seafoods Tea Bag for Soup Base)은 구운 멸치 65%, 구운 새우 20%, 다시마 15%의 세 가지 원료를 건조, 로스팅, 계량하여 15g의 티백에 담아 소매 포장한 제품임
 - 6개의 티백이 내용량 90g의 패키지에 포장된 제품으로 미국 내 한국 소매점 판매를 위해 수입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물육수다시팩은 제1604.20.059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0%임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어육을 포함한 제품, 조제명: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다. 캐나다의 당밀(제17류)-1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703.10.30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3월 10일, 참조번호는 N309706임

1) 물품개요

- 당밀(Molasses)은 브라질 비정제 사탕수수당으로 정제되며, 총 당 함량이 64.4%로 과당 2.1%, 포도당 2.3%, 자당 60%로 구성됨
 - 캐나다에서 비정제 사탕수수당을 녹여 정제하고 결정화와 분리 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함

2) 결정세변 및 사유

- 캐나다 업체는 해당 물품을 제1703.10.3000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a) 상업적 용도의 설탕 추출 또는 (b) 소비자의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CBP는 이에 동의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1703.10.3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리터당 0.35센트임
 - 설탕을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당밀의 사탕수수 당밀로 분류됨

라. 스페인의 푸쉬팝 캔디 테이프(제17류)-2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1704.90.3550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3월 4일, 참조번호는 N302233임

1) 물품개요

- 푸시팝 캔디 테이프는 원하는 길이로 당기고 자를 수 있는 디스펜서(dispenser) 역할을 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감초 캔디(licorice candy)임

2) 결정세변 및 사유

- 해당 물품은 제1704.90.355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5.6%임
 -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기타: 과자 또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사탕과자: 기타 소매판매용: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마. 캐나다의 초콜릿칩(제18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806.20.3400호, 제1806.20.3600호, 제1806.20.9900호, 제1806.90.2500호, 제1806.90.28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2월 17일, 참조번호는 N317032임

1) 물품개요

- 초콜릿칩은 슈퍼자루(900kg), 벌크용(20~50파운드), 소매용(300g)으로 3가지 형태의 포장으로 수입되는 세미 스위트 초콜릿칩과 다크 초콜릿칩임
 - 세미 스위트 초콜릿칩은 설탕 56.1%, 카카오 매스 32.2%, 카카오 버터 7.5%, 무수유지방(AMF) 2%, 카카오 가루 2%, 바닐라와 레시틴이 미량 함유되어 있고 유지방과 유고형분 함량은 모두 2%임
 - 다크 초콜릿칩은 설탕 56.1%, 카카오 매스 34.2%, 카카오 버터 7.5%, 무수유지방(AMF) 2%, 카카오 가루 2%, 바닐라와 레시틴이 미량 함유되어 있고 유지방과 유고형분 함량은 모두 2%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캐나다 업체는 해당 물품을 제1806.20.5000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CBP는 제1806.20.5000호에 따른 초콜릿 조제품은 완전히 분쇄된 카카오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물품은 5.5% 미만의 유지방과 21% 미만의 유고형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소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함
 - 세미 스위트 초콜릿칩은 2%의 카카오 분말을 포함하고 있으며, 카카오 분말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소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다크 초콜릿칩은 완전히 분쇄된 카카오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소호에

대한 성분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2%의 유고형분을 함유하지만 유지방의 5.5%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소호에 분류할 수 없음

- CBP는 해당 물품을 슈퍼자루(900kg)와 벌크용(20~50파운드) 그리고 소매용(300g) 3가지 형태의 포장에 따라 제1806.20.3400호, 제1806.20.3600호, 제1806.20.9900호, 제1806.90.2500호, 제1806.90.2800호로 분류하였음
 - 제18류 미국 추가 주3에 따르면 제1806.20.34호, 제1806.20.85호, 제1806.32.14호, 제1806.90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초콜릿과 유지방 함량이 5.5% 이하인 저지방 초콜릿 스크럼블의 총량(사탕 또는 과자로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은 212만 2,834kg을 초과할 수 없음
 - 제18류의 해설에서는 제1806.20호에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액체·페이스트(paste)·가루·알갱이나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
 - 제18류의 해설에서는 제1806.90호에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의 기타로 분류함
- 슈퍼자루(900kg) 및 벌크용(20~50파운드) 다크 초콜릿칩은 제1806.20.34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5%임
 - 카카오 지방, 향료 또는 유화제가 첨가되거나 첨가되지 않은 카카오빈으로 완전히 구성되고 유지방 또는 기타 유고형분의 중량이 32% 이하이고 설탕의 중량이 60% 이하인 조제품의 기타로 제18류의 미국 추가 주3에 설명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제18류에 대한 미국 추가 주3에 규정된 양적 제한에 도달하고 유고형분 함량이 21% 미만인 경우에는 제1806.20.36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kg당 37.2센트임

52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 슈퍼자루(900kg) 및 벌크용(20~50파운드) 세미 스위트 초콜릿칩은 제1806.20.99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8.5%임
 - 카카오 지방, 향료 또는 유화제가 첨가되거나 첨가되지 않은 카카오빈으로 완전히 구성되고 유지방 또는 기타 유고형분의 중량이 32% 이하이고 설탕의 중량이 60% 이하인 조제품의 기타로 분류되고 있음

- 소매용(300g) 세미 스위트 초콜릿칩 및 다크 초콜릿칩은 제1806.90.25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kg당 37.2센트임
 - 기타의 이 장의 미국 추가 주3에 설명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제18류에 대한 미국 추가 주3에 규정된 양적 제한에 도달하고 유고형분 함량이 21% 미만인 경우에는 제1806.90.28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kg당 37.2센트 +6%임

바. 레바논의 푸딩믹스(제19류)-1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901.90.6700호 및 제1901.90.68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12월 30일, 참조번호는 N316310임

1) 물품개요

- Ziyad® 브랜드의 푸딩믹스(Sahlab)는 디저트용 푸딩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파우더 형태의 인스턴트 푸딩믹스임
 - 주요 성분은 설탕(65%), 옥수수 전분, 구아검, 바닐라 추출물 및 천연 향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중량 200g의 상자에 포장되는 물품으로 마스터 카톤(master carton)박스당 12개의 상자로 포장됨

2) 결정세변 및 사유

- 레바논 업체는 해당 물품을 제1905.90.1050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제19류의 해설에서는 제1905호를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제1905.90.1050호는 기타: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과 푸딩(초콜릿, 과일, 견과류 또는 과자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CBP는 해당 물품은 주로 달콤한 패스트리, 케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베이커리 제품 등을 포함하는 베이커리 제품으로 간주되는 완전한 베이커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1905.90.1050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할당관세 적용기간 동안 제1901.90.6700호로, 할당관세 적용기간 종료 후 제1901.90.68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각각 10%, kg당 23.7센트+8.5%임
 - 제19류의 해설에서는 제1901호를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분류하고 있음
 - 제1901.90.6700호는 기타로 제17류의 미국 추가 주2에 설명된 건조 중량의 65% 이상의 설탕을 함유하는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제17류의 미국 추가 주2에 설명된 건조 중량의 65% 이상의 설탕을 함유하는 제품은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파생된 설탕을 건조 중량으로 65% 이상 함유하고 다른 성분과 혼합 여부를 불문하고 추가 가공 또는 유사 또는 기타 성분과 혼합할 수 있고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와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임

○ 제1901.90.6800호는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사. 아일랜드의 퀵오트(제19류)-2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1904.20.1000호 및 제1904.20.9000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6월 6일, 참조번호는 N304257임

1) 물품개요

- 플라하반(Flahavan's) 브랜드의 퀵오트(Quick Oats)는 제품에 물 또는 우유를 추가하고 스토브 또는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는 귀리 제품으로 밀폐 용기에 들어 있는 것과 밀폐 용기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구성됨
- 즉석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특허받은 공정으로 만든 귀리 제품으로 배조, 냉각, 조리, 압연, 냉각 건조, 포장을 거쳐 제조되며, 소매용 1.4kg(순중량)의 패키지에 40포(각 35g)씩 포장되어 수입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퀵오트는 밀폐 용기에 들어 있는 경우 제1904.20.1000호로, 밀폐 용기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 제1904.20.9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각 5.6%, 14.9%임
- 제19류의 해설에서는 제1904호를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하고 있음

- 밀폐 용기에 들어 있는 킥오프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밀폐 용기에 들어 있는 것(살구, 감귤류, 복숭아 또는 배를 제외한다)으로 분류하고 있음
- 밀폐 용기에 들어 있지 않은 킥오프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아. 슬로베니아의 트레일믹스(제20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2008.19.8500호; 제2008.93.0000호; 제2008.19.909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5월 28일, 참조번호는 N319253임

1) 물품개요

- 트레일믹스는 블랙페퍼믹스, 크런치(Crunchy)믹스, 크리스피솔티믹스, 마라톤믹스, 크런치(Crunch)믹스로 5가지 종류로 구성됨
 - 블랙페퍼믹스는 오일에 굽고 양념한 땅콩 60%와 오일에 굽고 양념한 캐슈넛 40%를 혼합한 것으로 2.1온스(59g) 팩에 포장되며, 케이스당 50개씩 포장됨
 - 크런치믹스는 오일에 굽고 소금에 절인 땅콩 40%와 구운 소금에 절인 옥수수 25%, 오일에 굽고 소금에 절인 아몬드 20%, 건크랜베리 15%를 혼합한 것으로 2.1온스(59g) 팩에 포장되며, 케이스당 50개씩 포장됨
 - 크리스피솔티믹스는 오일에 굽고 소금에 절인 땅콩 40%, 프레첼볼 20%, 오븐에 굽고 소금에 절인 피칸 15%, 오일에 굽고 소금에 절인 캐슈넛 15%, 오븐에

구운 호박씨 10%를 혼합한 것으로 14온스(400g) 팩에 포장되며, 케이스당 12개씩 포장됨

- 크런치믹스는 건포도 40%와 피칸 및 오일에 구운 팥콩 믹스 10%를 혼합한 것으로 12온스(340g) 팩에 포장되며, 케이스당 12개씩 포장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CBP는 해당 물품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소호들로 분류되는 경우 HS 해석에 관한 통칙 3에 따라 통칙 3(c)를 적용하여 4단위 호를 결정하고 8단위 소호는 통칙 6을 적용함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c)는 통칙3(a) 또는 통칙 3(b)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HS 해석에 관한 통칙 6은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한편 HS 해석에 관한 통칙 3(a)는 해당 물품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며,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는 부피, 수량, 중량 또는 가치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함
- 따라서 트레일 믹스는 제2008호로 분류되며, 블랙페퍼믹스의 경우 제2008.19.8500호로, 크런치(Crunchy)믹스의 경우 제2008.93.0000호로, 크리스피솔티믹스, 마라톤믹스, 크런치(Crunch)믹스의 경우 제2008.19.909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각각 22.4%, 4.5%, 17.9%임

- 제20류의 해설에서는 제2008호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일·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하고 있음
- 블랙페퍼믹스는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의 혼합물로 분류되고 있음
- 크런치(Crunchy)믹스는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로 분류되고 있음
- 크리스피솔티믹스, 마라톤믹스, 크런치(Crunch)믹스는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자. 캐나다의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제21류)-1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2105.00.3000호; 제2105.00.4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6월 21일, 참조번호는 N319835임

1) 물품개요

-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는 Stroopwafel과 Gingerbread Man 2가지 종류의 쿠키 사이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것임
- Stroopwafel은 두 개의 와플 모양의 쿠키 사이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들어있고 와플은 밀가루, 가당연유, 물, 물엿, 탈지분유, 카놀라유, 알긴산나트륨, 소금, 미정질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모노글리세라이드, 헥사메타인산나트륨, 소르빈산 칼륨, 대두 레시틴, 팜유, 계란, 대두 가루, 귀리 섬유 및 베이킹 소다로 구성되며, 아이스크림은 우유, 크림, 설탕, 물, 불특정 변성유원료, 모노디글리세라이드, 구아검, 셀룰로오스검, 로커스트빈검, 카라기난, 이산화규소, 천연바닐라향으로 구성됨

- Gingerbread Man은 두 개의 진저브레드맨 모양의 쿠키 사이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들어있고 진저브레드맨 모양의 쿠키는 밀가루, 설탕, 당밀, 야자유, 액체 전체 계란, 생강, 계피, 소금, 정향 및 베이킹 소다로 구성되며, 아이스크림은 우유, 크림, 설탕, 물, 불특정 변성우유 성분, 모노디글리세라이드, 구아검, 셀룰로오스검, 로커스트빈검, 카라기난, 이산화규소, 천연바닐라향으로 구성됨

2) 결정세변 및 사유

- 캐나다 업체는 Stroopwafel을 제1905.32.0029호로, Gingerbread Man을 제1905.31.0029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중 스위트 비스킷의 기타 열린 것으로 분류됨
- CBP는 해당 물품은 제1905.32.0029호 및 제1905.31.0029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함
 -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포함하여 초콜릿으로 덮인 아이스크림 바,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과 같이 다양한 품목을 만들기 위해 다른 식품 성분과 결합하여 본질적으로 아이스크림으로 구성된 냉동식품으로 정의됨
 - 따라서 와플과 진저브레드맨 쿠키가 각 유형의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아이스크림의 본질적인 특성은 아이스크림 성분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할당관세 적용기간 동안 제2105.00.3000호로, 할당관세 적용기간 종료 후 제2105.00.4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각각 20%, kg당 50.2센트+17%임

- 제2105.00.3000호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 없다): 아이스크림: 기타: 제4류의 미국 추가 주1에 설명된 유제품: 제4류의 미국 추가 주10에 설명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제4류의 미국 추가 주1에 설명된 유제품은 맥아(malted) 우유, 우유 또는 크림 제품(화이트 초콜릿과 별도로 규정된 먹을 수 없는 분유 제외); 식용 제품의 상업적 생산에 성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중량 5.5% 이상의 유지방을 함유한 제품(18장의 미국 추가 주 2와 3에 제공된 기타 수입 할당량 범위 내의 제품 제외); 건조유, 유청 또는 버터밀크(소호 제0402.10호, 제0402.21호, 제0403.90호, 제0404.10호에 규정된 것)로 중량 5.5% 이하의 유지방을 함유한 다른 성분과 혼합된 것, 이러한 혼합물이 중량 기준으로 16% 이상의 유고형분을 포함하는 경우 유사 또는 기타 성분과 추가 가공 또는 혼합이 가능하며 수입 시와 동일한 형태 및 포장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 제2105.00.4000호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 없다): 아이스크림: 기타: 제4류의 미국 추가 주1에 설명된 유제품: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차. 일본의 냉동떡디저트(제21류)-2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2106.90.9895호이며 시행일은 2018년 8월 22일, 참조번호는 N299385임

1) 물품개요

- 냉동떡디저트(Lotte Mochi Ice)는 바닐라, 녹차, 딸기 3가지 맛으로 각각 58%의 필링과 42%의 떡을 함유하며 순중량은 37온스(1,080ml)로 각 9개들이 4개(270ml)의 패키지로 구성됨

60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 떡은 물엿 12%, 물 11%, 쌀가루 9%, 설탕 9%, 미량의 전분, 달걀흰자분말, 소금, 유화제, 변성전분을 함유하고 있음
- 바닐라 필링은 약 35%의 물, 7%의 설탕, 6%의 탈지분유, 6%의 식물성 기름, 3%의 옥수수 시럽 및 미량의 고과당 옥수수 시럽, 유화제, 안정제, 향료 및 아나토를 함유하고 있음
- 녹차 필링은 약 36%의 물, 7%의 설탕, 6%의 식물성 기름, 4%의 옥수수 시럽, 4%의 탈지분유 및 미량의 분말 녹차, 유화제, 안정제 및 향료를 함유하고 있음
- 딸기 필링은 물 27%, 물엿 11%, 식물성 유지 5%, 딸기주스 4%, 탈지분유 4%, 설탕 4%, 가당 딸기 퓌레 1%, 미량의 안정제, 유화제, 향미제 및 산성제를 함유하고 있음

2) 결정세변 및 사유

- 해당 물품은 제2106.90.9895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6.4%임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중 기타 조제 식료품의 열린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카. 한국의 맛을 낸 우유 음료(제22류)-1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2202.99.2400호 및 제2202.99.2800호이며 시행일은 2018년 7월 6일, 참조번호는 N297914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맛을 낸 우유 음료(Flavored Milk-based Drinks)로 바나나, 딸기, 멜론 3가지 맛이 있으며, 직접 마실 수 있도록 6.8온스의 종이 소재의 용기에 담겨 수입됨

- 바나나맛 우유 음료는 우유 60%, 물 29.81%, 설탕 6.7%, 텍스트린 3%, 1% 미만의 바나나주스 농축액, 인공향료, 지방산의 모노·디글리세라이드, 카라지난, 아나토(색상용), 구아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우유 고형분은 11.9%, 총 유지방 함량은 2.28%임
- 딸기맛 우유 음료는 우유 60%, 물 30.62%, 설탕 6.93%, 탈지분유 1.93%, 유청분말, 1% 미만의 딸기주스 농축액, 인공향료, 지방산의 모노·디글리세라이드, 코치네일(색상용), 카라지난, 구아검 1% 미만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우유 고형분은 14.4%, 총 유지방 함량은 2.28%임
- 멜론맛 우유 음료는 우유 60%, 물 30.66%, 설탕 6.9%, 탈지 분유 1.93%, 1% 미만의 멜론주스 농축액, 인공향료, 지방산의 모노·디글리세라이드, 카라지난, 구아검, 식용색소(FD&C Yellow 5 및 FD&C Blue 1)로 구성되었으며, 총 우유 고형분은 14.4%, 총 유지방 함량은 2.28%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물품은 할당관세 적용기간 동안 제2202.99.24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7.5%임
 - 제22류의 해설에서는 제2202호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라고 분류하고 있음
 - 제2202.99.2400호는 기타: 우유 음료: 기타: 제4류 미국 추가 주11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 미국 추가 주11에 따라 우유와 크림의 총량은 685만 7,300kg을 초과할 수 없음
- 할당관세 적용기간 종료 후 제2202.99.28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리터당 23.5센트+14.9%임

62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 제2202.99.2800호는 기타: 우유 음료: 기타: 제4류 미국 추가 주11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 미국 추가 주11에 따라 우유와 크림의 총량은 685만 7,300kg을 초과할 수 없음

타. 독일의 무알코올 와인(제22류)-2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2202.99.9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8월 11일, 참조번호는 N320559임

1) 물품개요

- 무알코올 와인은 Prickly Red, Blanc Burgunder, Sparkling Rose로 3가지 종류이며, 무알코올 발효 포도, 설탕, 이산화탄소 및 이산화황으로 구성됨
 - 각 종류의 무알코올 와인은 알코올 함량이 0.5% 미만으로 750ml 유리병에 담겨 수입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독일 업체는 해당 물품을 제2206.00.9000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해당 물품은 제2206.00.9000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함
 - 제22류의 주 3은 제2202호의 목적상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함

- 따라서 3가지 종류(Prickly Red, Blanc Burgunder, Sparkling Rose)의 무알코올 와인은 모두 제2202.99.9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리터당 0.2센트임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중 기타 밀크 기반 음료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파. 가나의 탈유 시어넛(제23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2306.90.015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9월 2일, 참조번호는 N313673임

1) 물품개요

- 탈유 시어넛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시어넛에서 오일을 추출하여 발생하는 분말 형태의 잔류물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가나 업체는 해당 물품을 제1207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제12류의 해설에서는 제1207호를 그 밖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해당 물품은 제1207호의 범위를 넘어 처리된 것으로 제1207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2306.90.015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kg당 0.32센트임
 -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77)호나 제2305호78)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하. 독일의 동물사료(제23류)-2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2309.90.1050호이며 시행일은 2016년 5월 4일, 참조번호는 N274573임

1) 물품개요

- 독일의 동물사료는 흥분과 긴장을 하기 쉬운 경주마용 사료로 44lbs의 종이자루로 수입됨
 - 주요 성분은 식이섬유, 대두 껍질, 보리 플레이크, 부풀린 옥수수, 부풀린 보리, 사탕수수 당밀, 알팔파 가루, 염화나트륨, 대두유, 탄산칼슘, 대두박, 프락토올리고당(FOS), 마그네슘 아세테이트, 황산 제2구리 5수화물, 황산제일철 1수화물, 황산아연 1수화물, 황산망간 1수화물, 요오드산칼슘, 아셀렌산나트륨 및 갈산프로필(산화방지제) 등으로 구성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물품은 제2309.90.105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동물사료용 조제품 중 기타 혼합사료 또는 혼합사료 성분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77)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78)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거. 온두라스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담배 부산물(제24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2401.30.0300호이며 시행일은 2008년 5월 12일, 참조번호는 N026926임

1) 물품개요

- 담배 부산물은 길이가 약 2인치에서 12인치에 이르는 건조된 갈색의 실 같은 담배 조각임
 - 해당 물품은 T-50138(HN)/T-50137(DO)로 식별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CBP는 담배부산물은 '줄기'로 시가 유형의 담배 잎 전체에서 벗겨낸(제거된) 잎의 중륵맥(midrib) 또는 잎의 주맥(mid vein)이며, 줄기는 가공되고 후속적으로 다른 담배와 혼합하여 시가용 충전재를 만든다고 결정함
 - 엽맥(vein)을 제거하는 것은 손으로 말아 고급 시가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담배 잎을 준비하는 절차임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2401.30.03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담배 부산물: 시가 잎: 담배 줄기: 자르지 않은 것, 갈지 않은 것, 분쇄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5. 광물성 생산품(제25류-제27류)

가. 여러 국가의 카올린 점토(제25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2507.0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09년 12월 16일, 참조번호는 N086108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WA-11 규산 알루미늄으로 카올린 점토임
 - 카올린 점토는 국수 모양으로 압출되어 소성을 위해 가마를 통과하며, 하소된 점토는 입자로 분쇄되어 운송을 위해 슈퍼자루에 담김
 - CAS번호(86227-47-6, 73310-10-8)로 식별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CBP는 해당 물품은 제2507호로 분류되며, 해당 호에는 카올린과 기타 카올린계 점토를 포함한다고 결정함
 - 카올린과 기타 카올린계 점토의 주요 성분은 카올리나이트·딕카이트·나크라이트·아노크사이트·할로이사이트와 같은 카올린 광물로 그러한 점토는 하소된 경우에도 해당 호에 분류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2507.00.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 분류하고 있음

나. 캐나다의 슬래그(제26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2618.00.0000호 및 제2619.00.90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10월 8일, 참조번호는 N314538임

1) 물품개요

- 슬래그는 철광석 정제공정의 부산물로 괴재슬래그(Air Cooled Slag), 펠릿슬래그(pelletized slag), 수재슬래그(granulated slag), 괴재 펠릿슬래그 및 분쇄 수재슬래그로 4가지 종류로 구성됨
 - 제품1은 용융 슬래그가 주변 온도에서 천천히 냉각될 때 형성되는 괴재슬래그로 식별되며, 건설현장의 되메움재 또는 도로에 사용됨
 - 제품2는 용융 슬래그를 회전드럼을 이용하여 급속 냉각하여 용융슬래그를 대기중으로 내뿜어 형성된 펠릿슬래그로 식별되며, 경량 콘크리트 골재 또는 콘크리트 믹스에 사용됨
 - 제품3은 용융 슬래그가 형성되어 다량의 물로 급속 냉각되는 수재슬래그로 식별되며, 해변 모래처럼 보이는 비정질 유리질 표면임
 - 제품4는 괴재 펠릿슬래그 및 분쇄 수재슬래그로 식별되며, 펠릿 또는 수재 슬래그를 미세한 분말로 분쇄하여 형성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캐나다 업체는 해당 물품을 제25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슬래그(slag) 시멘트·슈퍼설페이트(super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해당 물품은 경화촉진제가 첨가되지 않은 분쇄 슬래그일 뿐이며, 제2523호에서 제외되고 제2523.90.0000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함
 - 제2523호의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사용할 때에는 소량의 경화촉진제의 첨가가 필요한 미세하게 잘게 부서진 슬래그(slag)(제2619호); 그러나 곧 사용할 수 있도록 경화촉진제가 혼합되어 있는 슬래그(slag)는 이 호에 분류한다고 명시함
- 해당 물품은 제2618.00.0000호 및 제2619.00.9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제26류의 해설에서는 제2618호를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로, 제2619호를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로 분류하고 있음
 - 제2618.00.0000호는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로 분류하고 있음
 - 제2619.00.9000호는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다. 이탈리아의 일회용 카트리지 연료(제27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2711.29.0060호이며 시행일은 2009년 11월 24일, 참조번호는 N082717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이소부탄 65%와 프로판가스 35%이 혼합된 일회용 카트리지 연료로 캠핑용 및 산업용 가스토치로 사용하기 위해 190g의 소매 크기의 금속 카트리지로 만들어짐

2) 결정세변 및 사유

□ CBP는 해당 물품은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에 해당하는 제 2711호가 적용된다고 결정함

○ 제2711호의 해설에 따르면 이 호에는 천연가스나 석유가스로서 얻어지거나 화학적으로 제조된 가공하지 않은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를 분류한다. 그러나 메탄(methane)과 프로판(propane)은 순수할지라도 포함한다고 명시함

○ 또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가스(액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고 명시함

- I. 메탄(methane)과 프로판(propane)[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II. 에탄(ethane)과 에틸렌(ethylene)(순도가 95%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순도가 95% 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해당
- III. 프로펜(propene)(프로필렌(propylene))(순도 9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순도가 90% 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해당
- IV. 부탄(butane)(노르말 부탄과 이소부탄의 순도 각 95%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노르말 부탄이나 이소부탄의 순도가 95% 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해당
- V. 부텐(butene)(부틸렌(butylenes))과 부타디엔(butadiene)(순도 9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부텐과 부타디엔의 순도가 90% 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해당
- VI. 프로판(propane)과 부탄(butane)의 상호혼합물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2711.29.006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중 가스 상태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6.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28류-제38류)

가. 캐나다의 사수소화규소(제28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2850.00.5000호이며 시행일은 2008년 11월 26일, 참조번호는 N044479임

1) 물품개요

- 캐나다의 사수소화규소는 폴리실리콘(Polysilicon) 생산에 사용됨
 - 실란이라고도 하며, CAS번호(7803-62-5)로 식별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물품은 제2850.00.5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3.7%임
 -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49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나. 여러 국가의 아이코시펜트 에탈(제29류)-1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2916.19.5000호이며 시행일은 2018년 6월 27일, 참조번호는 N298124임

1) 물품개요

- 아이코시펜트 에탈(Icosapent Ethyl)은 고중성지방혈증(hypertriglyceridemia) 성인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의 여러 국

가에서 벌크 형태로 수입됨

- 해당 물품은 5,8,11,14,17-Eicosapentaenoic acid ethyl ester(5Z, 8Z, 11Z, 14Z, 17Z)로 알려져 있으며, CAS번호(86227-47-6, 73310-10-8)로 식별됨

2) 결정세변 및 사유

- 아이코시펜트 에탈은 제2916.19.5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실산, 이들의 무수물, 할로젠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중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실산, 이들의 무수물, 할로젠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다. 한국의 로피독수리딘(제29류)-2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2934.99.9001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8월 28일, 참조번호는 N305719임

1) 물품개요

- 로피독수리딘(Ropidoxuridine)은 항암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며, 순수한 유기화합물로 벌크 분말 형태로 수입되는 물품임
 - 해당 물품은 1-[(2R,4S,5R)-4-hydroxy-5-(hydroxymethyl) oxolan-2-yl]-5-iodopyrimidin-2-one으로 알려져 있으며, CAS번호(93265-81-7)로 식별됨

2) 결정세변 및 사유

- 벌크 분말 형태의 로피독수리딘은 제2934.99.9001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라. 한국의 에르타페넴나트륨 주사제(제30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004.20.006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8월 10일, 참조번호는 N320578임

1) 물품개요

- 한국의 에르타페넴나트륨 주사제(Ertapenem Sodium for Injection in dosage form)는 특정 감염성 유기체에 의해 유발되는 중증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카르바페넴 항생제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투여 형태의 에르타페넴나트륨 주사제는 제3004.20.006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제30류의 해설에서는 제3004호를 의약품(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으로서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이라고 분류하고 있음
 - 제3004.20.0060호는 치료 또는 예방 용도를 위한 혼합 또는 비혼합 물품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측정된 용량 또는 소매용 포장: 기타 향생물질 함유: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마. 멕시코의 구아노(제31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101.00.0000호, 제3105.1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7월 17일, 참조번호는 N304907임

1) 물품개요

- 구아노(Guano)는 바닷새(Seabird)의 축적된 배설물이 바위에 쌓여 화석화된 덩어리(광물질)로 질소 및 인산염의 비료 성분을 함유하며 작물 비료로 사용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멕시코 업체는 해당 물품을 제3105.90.0050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등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kg 이하로 포장한 것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해당 물품은 광물성 또는 화학성 비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3105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총중량이 10kg을 초과하는 경우 제3101.00.0000호로, 총중량이 10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3105.10.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제31류의 해설에서는 제3101호를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로 분류하고 있음
 - 제3101.00.0000호는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

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로 분류하고 있음

- 제3105.10.0000호는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등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kg 이하로 포장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바. 한국의 매스틱 실러(제32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214.10.001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11월 5일, 참조번호는 N315471임

1) 물품개요

- 매스틱 실러(MASTIC SEALER)는 자동차 웨더스트립 단면에 도포하며, 자동차 트렁크 고무실링 제품과 함께 사용하여 기밀성, 수밀성, 방수성을 확보하고, 웨더스트립 내부의 틈새를 메워 자동차 패널의 접합부를 보강하는 역할을 함
- 구성재료는 EPDM고무, 폴리이소부틸렌, 카본블랙, 기유, 충전재(CaCO₃), 무기 충전재(석분), 기타 첨가제(탄소, 산화칼슘) 등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고무 기반 매스틱 실러는 제3214.10.001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3.7%임
- 제32류의 해설에서는 제3214호를 유리 접합용 퍼티(putty), 접목용 퍼티(putty), 수지시멘트, 코킹(caulking) 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 처리제라고 분류하고 있음

- 제3214.10.0010호는 유리 접합용 퍼티, 접목용 퍼티, 수지시멘트, 코킹 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 매스틱: 코킹 화합물로 분류하고 있음

사. 한국의 비타민 마스크팩(제33류)-1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304.99.5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6월 24일, 참조번호는 N320015임

1) 물품개요

- 비타민 마스크팩은 비타민 복합제인 알로에베라와 다양한 추출물, 화학 물질 및 향료를 함유하며, 해당 물품은 F4454 모이스처라이징, F4456 퍼밍, F4457 브라이트닝으로 3가지 종류로 구성됨
 - F4454 모이스처라이징은 Herbalife Nutrition Moisturizing Vitamin Mask 및 Herbalife Vitamin Moisturizing Mask라고 하며, 일반, 건성, 악건성 피부용임
 - F4456 퍼밍은 Herbalife Nutrition Vita Derma Firming Mask 및 Herbalife Vitamin Firming Mask라고 하며, 중성 및 건성 피부용임
 - F4457 브라이트닝은 Herbalife Nutrition Brightening Vitamin Mask 및 Herbalife Vitamin Brightening Mask라고 하며, 일반, 건성, 미백 피부용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3가지 비타민 마스크팩은 제3304.99.5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아. 한국의 아이패치(제33류)-2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304.99.5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3월 11일, 참조번호는 N318225임

1) 물품개요

- 엔도더마 마이크로니들 패치(Endoderma Microneedle Skin Care Patch)는 눈 아래에 붙이는 아이패치로 2.2인치 크기의 눈물방울 모양의 일회용 패키지로 구성됨
 - 아이패치는 히알루론산으로 코팅된 폴리 소재로 구성되어 보호용 종이필름이 부착되어 있음
 - 사용자는 세안 후 물기를 제거하고 패치 뒷면에 있는 필름을 벗겨낸 후 각 눈 아래에 패치를 단단히 부착하여 약 4시간 동안 착용 후 패치를 떼어내도록 설명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물품은 제3304.99.5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자. 중국의 손소독 물티슈(제34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401.11.5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6월 8일, 참조번호는 N319468임

1) 물품개요

- 손소독 물티슈(Waxman Kleen Freak Hand Sanitizing Wipes)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염화 벤잘코늄 및 기타 여러 물질을 포함하는 피부 세척 및 살균 용액으로 미리 적셔진 티슈임
- 또한 중국 업체는 해당 물품은 손을 세척하고 소독하기 위한 제품으로 몸단장이나 외모관리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2) 결정세변 및 사유

- 중국 업체는 해당 물품을 제3401.19.0000호로 분류할 것을 요청함
 - 비누,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해당 물품은 제3401.19.0000호로 분류할 수 없으며 제3401.11.5000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결정하였음
 - 해당 물품은 손을 세척하고 소독하기 위한 제품으로 몸단장이나 외모관리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중국 업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3401.11.5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중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 제99류 제Ⅲ장 주 20에 근거한 제3401.11.5000호에 따라 중국 물품은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됨

차. 한국의 메이크업 리무버 타월렛 및 유아용 물티슈(제34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401.30.5000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4월 16일, 참조번호는 N303558임

1) 물품개요

- 한국의 클렌징티슈 및 유아용 물티슈는 5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제품1~2는 메이크업을 제거할 수 있도록 부직포 소재의 타월이고 제품3~5는 아기/유아용 물티슈임
 - 제품1은 Walgreens 품목 코드 368044로 식별되는 “메이크업 리무버 타월렛”으로, 크기는 7.9"×6.8"이며 25개의 타월렛 소매 패키지로 판매됨
 - 제품2는 Walgreens 품목 코드 368045로 식별되는 “메이크업 리무버 타월렛”으로, 크기는 7.9"×6.8"이며 25개의 타월렛 소매 패키지로 판매됨
 - 제품3은 Walgreens 품목 코드 910189로 식별되는 “아기/유아용 물티슈”로, 크기는 7.0"×7.5"이며 64개 물티슈의 소매 패키지로 판매됨
 - 제품4는 Walgreens 품목 코드 910190으로 식별되는 “아기/유아용 물티슈”로, 크기는 7.0"×7.5"이며 물티슈 64개가 들어 있는 소매 패키지로 판매됨
 - 제품5는 Walgreens 품목 코드 921593으로 식별되는 “아기/유아용 물티슈”로, 크기는 7.0"×5.25"이며 42개의 물티슈가 포함된 소매 패키지로 판매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한국 업체는 해당 물품을 제3402.20.5100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

품은 제외한다) 중 소매용 조제품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메이크업 리무버 타월렛 및 유아용 물티슈는 제3401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3402.20.5100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3401.30.5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제34류의 해설에서는 제3401호를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 케이크 모양· 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칩 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워딩(wadding)· 펠트(felt)· 부직포로 분류하고 있음

○ 제3401.30.5000호는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카. 한국의 콜라겐 겔(제35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504.00.5000호이며 시행일은 2017년 7월 6일, 참조번호는 N287432임

1) 물품개요

□ 한국의 콜라겐 겔(TheraCol Collagen Gel)은 두꺼운 돼지껍데기에서 공급되는 아텔로콜라겐(atelocollagen, COL) 겔임

○ 해당 물품의 응용 분야에는 피부 필러 및 안구 적용을 위한 제형, 인공조직 재생을 위한 콜라겐 겔 또는 매트릭스, 세포 배양용 코팅 재료 및 조직 공학을 위한 R&D 목적이 포함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콜라겐 껍은 제3504.00.5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4%임
 -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타. 독일의 연막탄(제36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604.9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10년 11월 1일, 참조번호는 N126557임

1) 물품개요

- 연막탄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졌으며, 3개의 원통형 연막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폐쇄형 컵이 장착된 직사각형 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음
 - 각각의 연기 카트리지는 4개의 연기 배출구가 뚜껑으로 덮여 있고 연기 배출구는 얇은 자체 접착 알루미늄 호일로 덮여 있어 카트리지가 찢지 않게 보호함

2) 결정세번 및 사유

- 독일 업체는 해당 물품을 민간 항공기(국방부 또는 미국 해안 경비대에서 사용)에 사용하기 위한 통신 위성의 기타로 제8803.90.9015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중 기타 민간 항공기용의 국방부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에 사용하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해당 물품은 제880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제8803.90.9015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함

- 제8803호에는 제8801호(풍선 및 비행선, 행글라이더 및 기타 무동력 항공기) 또는 제8802호(기타 항공기, 예: 헬리콥터, 비행기)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품이 포함되는데, 해당 물품은 공중 표적에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공중 표적은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에 따른 항공기의 설명을 충족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3604.90.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3.5%임
 - 불꽃제품·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rain rocket)·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파. 일본의 포토마스크 블랭크(제37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701.99.6060호이며 시행일은 2015년 2월 6일, 참조번호는 N260676임

1) 물품개요

- 포토마스크 블랭크(photomask blanks)는 고순도 석영 유리, 금속, 포토레지스트의 3개 층으로 구성됨
 - 수입 후 블랭크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프로세스는 반도체 칩 또는 IC에 나타날 특정 회로 경로에 해당하는 라인을 생성하며, 완성된 포토마스크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단독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step-and-repeat machine)에 사용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일본 업체는 해당 물품을 제8486.20.0000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중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해당 물품은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1(c)에 따라 제8486.20.0000호로 분류할 수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조항인 제3701.99.6060호로 분류한다고 결정함
 - 상품의 주 용도 또는 유일한 용도가 어떤 물품의 부품인 경우 그 물품의 부품을 위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부품이나 부대용품을 위한 조항이 해당 부품이나 부대용품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명시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3701.99.606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3.7%임
 -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평면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 모양 인스턴트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하. 한국의 알로에젤(제38류)-1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808.94.509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1월 25일, 참조번호는 N316964임

1) 물품개요

- 알로에젤(InfiniteAloe® SaniGel)은 티트리 오일과 알로에베라가 함유된 50ml의 스파우트 타입의 핸드젤로 손과 피부에 사용하는 향균성 알로에 스킨케어 제품임

- 주요 성분은 알코올 62%와 나머지는 물, 글리세린, 알로에 바바덴시스 잎 주스, 판테놀, 카보머, 트리에탄올아민, 프로필렌 글리콜, 부틸렌 글리콜, 멜라루카 알터니폴리아(티트리) 잎 오일, 감초 뿌리 추출물, 1,2-핵산디올, 히알루론산나트륨, 생강뿌리, 오미자열매추출물, 동백잎추출물, 프로폴리스와스, 카프릴릴글리콜, 아시아티코사이드, 에틸헥실글리세린으로 구성됨

2) 결정세변 및 사유

- 한국 업체는 해당 물품을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하여 피부 관리를 위한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는 제3304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제33류의 해설에서는 제3304호가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해당 물품은 피부의 박테리아를 감소시키는 방부제(손소독제)로 표시되고 판매되기 때문에 제3304호로 분류할 수 없으며, HS 해석에 관한 통칙 1을 적용하여 제3808호, 특히 제3808.94.5090호로 분류한다고 결정함
 - HS 해석에 관한 통칙 1은 각 호의 용어와 호 및 부·류의 주에 의한 우선원칙으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통칙 2~6)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3808.94.509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5%임
 - 제38류의 해설에서는 제3808호를 살충제, 살서제(취약), 살균제,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 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조제품으로 한 것,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심지, 양초, 파

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으로 분류하고 있음

- 제3808.94.5090호는 살충제, 살서제(취약), 살균제,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 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조제품으로 한 것,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심지, 양초, 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기타: 소독제로 분류하고 있음

거. 한국의 식물성장조절제(제38류)-2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808.93.505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6월 24일, 참조번호는 N312563임

1) 물품개요

- 식물성장조절제(Sunaider)는 사용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타 다양한 화학 희석제, 보조제 및 분산제와 혼합하여 사용되는 화학 조제품임
 - 활성 성분은 마케팅 및 제품 라벨에 리소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lysophosphatidyle-thanolamine)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R)-3-아세틸옥시-2-히드록시프로필] 2-아미노에틸 포스페이트로도 알려짐
 - 해당 제품은 분류 목적상 화학조제품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식물성장조절제는 제3808.93.505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5%임
 - 살충제, 살서제(취약), 살균제,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 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조제품으로 한 것,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심지, 양초, 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중 기타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7. 플라스틱과 그 물품, 고무와 그 물품(제39류, 제40류)

가. 한국의 ABS 플라스틱 분말(제39류)-1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902.90.0050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3월 18일, 참조번호는 N302597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ABS 수지⁷⁹⁾에 사용될 백색 분말로 부타디엔(Butadiene) 60%, 단량체, 스티렌(Styrene) 단량체 30%,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단량체 10%로 구성됨
- CBP 분석 결과 해당 물품은 ABS의 화학적 성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한국 업체는 해당 물품을 1차 형태인 스티렌의 중합체 중 ABS 공중합체에 해당하는 제3903.30호에서 가능한 분류를 제안함
- CBP는 제39류의 주 4에 따라 공중합체(copolymer)의 경우 중량 기준으로 다른 공단량체(comonomer)보다 우세한 단량체(monomer) 단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해당 물품은 부타디엔이 중량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제3903호의 스티렌 중합체로 분류할 수 없으며 제3902호로 분류한다고 결정함
- 제39류의 주 4는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래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79) ABS 수지는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타일렌 공중합체(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copolymer)의 약어임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고 명시함

- 제3903호의 해설에 따르면 스티렌 공단량체 단위는 중량 기준으로 다른 모든 단일 공단량체 단위(아크릴로니트릴 및 부타디엔)보다 우세해야 한다고 명시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3902.90.005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6.5%임
 - 일차물품의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나. 한국의 플라스틱 서랍(제39류)-2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3924.90.565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4월 10일, 참조번호는 N310863임

1) 물품개요

- 플라스틱 서랍(K49791)은 크기가 가로 13¼cm, 세로 12cm, 높이 3cm인 스테인리스 스틸 레일이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2단 서랍 세트임
 - 해당 물품은 냉장고에 사용하거나 가정에서 평평한 표면의 아래쪽에 고정하여 추가적인 저장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함

2) 결정세변 및 사유

- 한국 업체는 해당 물품을 제8418호의 냉장고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제8418.99.8060호 또는 제3924호의 가정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되는 제3924.90.5650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제84류의 해설에서는 제8418호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 또는 기타), 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 열펌프로 분류하고 있음
 - 제39류의 해설에서는 제3924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해당 서랍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냉장고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냉장고 부분품인 제8418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제3924.90.5650호에 분류하는 것은 동의한다고 결정함

- 해당 서랍은 플라스틱과 금속의 복합물이며 플라스틱은 서랍에 대한 무결성과 구조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따라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를 적용해 볼 때, 플라스틱이 서랍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가정용 플라스틱 제품인 제3924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함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따르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3924.90.565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3.4%임
 -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중 기타 플라스틱 가정용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다. 한국의 셀룰러 고무 스트립 개스킷(제40류)-1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008.11.50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1월 29일, 참조번호는 N309089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4986EA3001T)은 세탁기 문의 틈막이에 사용되는 셀룰러 고무패킹으로 에틸렌프로필렌디엔 공중합체(EPDM) 고무로 구성되어 있고 누수방지용으로 설계된 끈 모양의 물품임
 - 사용되는 고무는 단면 치수가 가로 4.2mm, 세로 6.2mm인 직사각형 모양으로 압출되어 수입하기 전에 절단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한국 업체는 해당 물품을 제4016.93.5050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경질 고무(hard rubber) 이외의 가황 고무(vulcanized rubber)의 기타 품목: 개스킷, 와셔(washer) 및 그 밖의 실(seal): 기타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해당 물품은 가황 EPDM 고무로 구성된 셀룰러 고무 스트립에 불과하므로 제4016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고무 스트립은 제4008호에 분류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결정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4008.11.5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3.3%임
 - 제40류의 해설에서는 제4008호를 경질 고무 이외의 가황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profile shape)로 분류하고 있음
 - 제4008.11.5000호는 경질 고무 이외의 가황 고무: 셀룰러 고무: 판, 시트 및 스트립: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라. 한국의 후드웨더스트립(제40류)-2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016.1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18년 8월 1일, 참조번호는 N299231임

1) 물품개요

- 후드웨더스트립(Weather Strip Hood)은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동차의 앞부분에 있는 엔진룸의 덮개인 후드(보닛) 밑면에 장착할 수 있는 스트립임
 - 해당 물품은 셀룰러 고무와 고밀도 고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셀룰러 고무가 고무 함량의 대부분을 구성함
 - 또한 물품을 고정하기 위해 후드에 눌러져 있는 단단한 플라스틱 클립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한국 업체는 해당 물품을 제4016.9300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제40류의 해설에서는 제4016.9300호를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해당 물품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실(seal)의 셀룰러 부분이기 때문에 제4016.9300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함
 - 셀룰러 구성 요소는 진동을 흡수하여 외부 요소로부터 보호하며 끝 부분이 늘어나거나 수축하여 더 단단히 밀봉되도록 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4016.10.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경질 고무 이외의 가황 고무 기타 제품: 셀룰러 고무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마. 한국의 고무범퍼(제40류)-3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016.99.355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7월 1일, 참조 번호는 N320067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제품번호 61015-4F000로 식별되는 쿠션 범퍼로 중앙에 강철 지지대가 있는 원통형 가황 천연 고무 부품임
 - 쿠션 범퍼는 트럭의 적재 공간 날개(wings)가 낮아지는 영역에서 트럭에 나사로 고정되며, 적재 공간 날개의 충격을 흡수하여 트럭을 보호함

2) 결정세번 및 사유

- CBP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따라 해당 물품은 충격을 흡수하는 고무에 의해 본질적인 특성이 부여되는 복합물로 결정함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따르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함
- 따라서 고무범퍼는 제4016.99.355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경질 고무를 이외의 가황 고무의 기타 제품의 기타라고 분류하고 있음

8.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물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물품(제41류-제43류)

가. 한국의 합성가죽(제41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115.1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1월 23일, 참조번호는 N304195임

1) 물품개요

- 합성가죽(ENR Recycled Leather, Angel)은 3개의 레이어로 구성되며 가로 79인치, 세로 56인치의 롤로 수입되어 신발, 핸드백 및 장신구의 상단부 외부 표면 부분 제조에 사용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CBP는 해당 물품이 0.09mm 두께의 표면에 가죽과 같은 패턴이 양각된 폴리우레탄 코팅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층은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된 직물로, 하단층은 가죽섬유(합성가죽)로 구성되어 하단층이 물품의 필수적인 특성을 부여한다고 결정함
 - 합성가죽은 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반으로 한 합성가죽만을 포함하며, 플라스틱, 고무, 종이, 판지 또는 코팅된 섬유 직물을 기반으로 한 인조가죽에는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합성가죽은 제4115.10.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로 분류하고 있음

나. 한국의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제42류)-1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202.12.2120호이며 시행일은 2017년 3월 24일, 참조번호는 N283875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의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lunch box)로 가로 8cm, 높이 9cm, 세로 4cm 크기의 저장 용기 두 개와 플라스틱 포크 및 스푼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저장 용기는 과일 및 야채와 같은 식품의 일부를 보관할 수 있음
 - 한 용기는 가로 6½cm, 높이 2¼cm, 세로 3cm 크기의 내부 저장 공간이 반으로 구분되어 있음
 - 나머지 용기는 가로 7½cm, 높이 3cm, 세로 4¼cm 크기의 내부 저장 공간이 있고 플라스틱 포크와 스푼을 넣을 수 있도록 뚜껑에 홈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한국 업체는 해당 물품을 플라스틱 만든 제품에 해당하는 제3924.10.0000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중 식기 및 주방용품이라고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는 제4202호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용기로서 제39류가 아닌 제4202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함
 - 제39류의 주 2(m)에서는 특히 제39류가 제4202호의 트렁크, 여행가방 또는 기타 컨테이너를 다루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4202.12.212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0%임
 - 제42류의 해설에서는 제4202호를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젝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er)·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로 분류하고 있음
 - 제4202.12.2120호는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플라스틱의 외부 표면: 트렁크, 여행가방, 화장대 및 이와 유사한 용기로 분류하고 있음

다. 영국의 케이스(제42류)-2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202.92.97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10월 20일, 참조번호는 N314735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세로 35cm, 높이 48cm, 가로 13cm 크기의 케이스로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으로 코팅된 나일론 섬유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내용물의 보관, 보

호, 휴대성 및 정리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짐

- 케이스는 3면으로 구성되었으며, 2개의 손잡이 주위에 지퍼가 달린 잠금장치가 있으며 내부에는 신축성 있는 밴드와 칸막이가 있음
- 또한 후크 앤 루프 패스너 스트립으로 고정할 수 있는 두 개의 포켓이 있고 케이스에는 어떠한 장비나 약물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결정세변 및 사유

- 영국의 업체는 해당 물품을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에 해당하는 제9018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제90류의 해설에서는 제9018호를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부품 및 액세서리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해당 물품은 제9018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함
 - SCRAM(Structured Critical Airway Management) 케이스는 장비와 약물을 저장하고 정리하는 데 사용되며, 질병을 진단하거나 예방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수술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분류 목적상 제9018호의 의료기기로 간주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4202.92.97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7.6%임
 - 제42류의 해설에서는 제4202호를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젝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er)·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

- 공구가방 · 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 ·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 분갑 · 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로 분류하고 있음
- 제4202.92.9700호는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기타: 기타 용기 및 케이스로 분류하고 있음

라. 중국의 핸드백(제43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303.9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16년 6월 1일, 참조번호는 N275353임

1) 물품개요

- 중국의 핸드백(Style BECA-CB)은 가로 10cm, 깊이 4cm, 세로 8cm 크기의 송아지 털과 가죽 소재의 핸드백으로 개인용 휴대 물품의 보관, 보호, 정리, 휴대용으로 만들어짐
- 핸드백의 본체에 해당하는 바디는 송아지 털이며, 핸드백의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트림과 덮개에 해당하는 플랩 클로저는 가죽으로 구성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CBP는 동전지갑, 핸드백, 솔더백 또는 클러치백과 유사한 종류의 물품은 종종 제 4202호에 분류되나,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따라 송아지털이 핸드백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고 결정함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따르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4303.90.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9. 목재와 그 물품, 목탄, 코르크와 그 물품, 짚·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물품, 바구니 세공물과 지조세공물(제44류-제46류)

가. 인도의 합판 패널(제44류)-1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412.31.5265호, 제4412.31.9200호, 제4412.31.6100호이며 시행일은 2018년 6월 15일, 참조번호는 N297087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2가지 종류의 합판 패널(plywood panels)로 11겹의 고무나무 베니어 합판으로 구성됨
- 제품1은 6mm를 초과하는 플라이(ply)는 없고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패널의 두께는 17mm로 베니어패널 및 Keruing, Okoume으로 구성된 것임
 - 제품의 전면과 후면은 페놀 필름으로 덮여 있고 패널의 가장자리는 방수 아크릴 실런트로 칠해져 있고 콘크리트 셔터에 사용됨
- 제품2는 6mm를 초과하는 플라이(ply)는 없고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패널의 두께는 14mm로 베니어패널 및 Keruing으로 구성됨

2) 결정세변 및 사유

- CBP는 해당 물품은 HS 해석에 관한 통칙 1을 적용하여 제4412호에 규정된 합판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결정함
 - 제4412호에서 합판은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다고 명시함
 - HS 해석에 관한 통칙 1은 각 호의 용어와 호 및 부·류의 주에 의한 우선원칙으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통칙 2~6)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해당 물품의 전면과 후면에 덮여 있는 페놀 필름은 제44류의 미국 추가 주 1(c)에 규정된 표면피복에 해당하며, 특히 제4412호는 합판이 다양한 재료로 표면을 덮을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은 합판으로 분류됨
 - 제44류에 대한 미국 추가 주1(c)에 따르면 제4411호 및 제4412호의 제품에 적용되는 “표면 피복”이라는 용어는 제품의 하나 이상의 외부 표면이 크레오소트 또는 기타 목재 방부제 또는 충전제, 실러, 왁스, 오일, 얼룩, 바니시, 페인트 또는 에나멜을 사용하거나 종이, 천, 플라스틱, 비금속 또는 기타 재료로 덧칠한 경우라고 명시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4412.31.5265호, 제4412.31.9200호, 제4412.31.61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각 8%임
 - 제44류의 해설에서는 제4412호를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로 분류하고 있음
 - 고무나무 베니어합판 또는 Keruing의 전면 합판과 페놀 필름으로 표면피복된 합판 패널의 경우, 제4412.31.9200호는 합판[각 플라이(ply)가 6mm 이하의 목

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 Okoume의 전면 합판과 페놀 필름으로 표면피복된 합판 패널의 경우, 제 4412.31.6100호는 합판[각 플라이(ply)가 6mm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기타: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다음에 해당하는 열대산 목재인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Dark Red Meranti, Light Red Meranti, White Lauan, Sipo, Limba, Okoumé, Obeche, Acajou d'Afrique, Sapelli, Virola, Mahogany, Palissandre de Para, Palissandre de Rio or Palissandre de Rose

- 표면피복을 하지 않은 고무나무 베니어합판 또는 Keruing의 전면 합판의 경우, 제4412.31.5265호는 합판[각 플라이(ply)가 6mm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표면피복을 하지 않거나 표면의 결 또는 질감 또는 표시를 가리지 않는 투명하거나 투명한 재료로 덮인 것: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나. 중국의 캣타워(제44류)-2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421.99.978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4월 12일, 참조번호는 N318801임

1) 물품개요

- 캣타워(SKU#087882)는 스크래치 기둥과 파티클 보드⁸⁰⁾로 만든 63cm 높이의 장난감 구조물로서 정사각형 모양의 하단 및 상단 층계는 각각 34.5cm 크기로 수

80) 원목으로 목재를 생산하고 남은 폐 잔재를 부수어 작은 조각으로 만들고 접착제를 섞어 고온 고압으로 압착시켜서 만든 가공재

직 기둥과 상단 층계를 지지하며 기둥과 하단 및 상단 층계의 대부분은 폴리에스테르 카펫으로 덮여 있음

- 고양이가 수직 기둥을 긁을 수 있고 휴식을 취하거나 놀기 위해 꼭대기에 있는 착지로 뛰어오를 수 있으며, 장난감이 부착될 수 있도록 두 개의 끈이 상단에 매달려 있음

2) 결정세변 및 사유

□ CBP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따라 스크래쳐 기둥은 파티클 보드, 카펫 및 끈과 같은 여러 재료의 복합로 간주되며, 스크래쳐 기둥의 파티클 보드 부분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고 결정함

- 제44류의 주 3은 “제4414호부터 제4421호는 파티클 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 목재 또는 고밀도 목재에 대한 각 설명의 제품에 적용되며 이러한 목재 제품에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파티클 보드 스크래쳐 기둥은 제 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의 목재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4421.99.978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3.3%임

- 그 밖의 목제품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 제99류 제Ⅲ장 주 20에 근거한 제4421.99.9780호에 따라 중국 물품은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됨

다. 중국의 코르크 용기(제45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4504.9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14년 3월 3일, 참조 번호는 N250180임

1) 물품개요

- 코르크 용기는 크기가 가로 8cm, 세로 8cm, 높이 8cm의 두 개의 코르크 용기로 부드럽게 접을 수 있고 외부 표면은 폴리에스터 직물에 적층된 코르크가 있음
 - 해당 물품의 외부 표면에는 직물이 보이지 않으며, 하나의 용기는 동일한 코르크 소재의 안감으로 처리되어 있고 다른 용기는 면/폴리에스테르 직물 소재의 안감으로 처리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중국의 업체는 해당 물품을 기타 섬유 제품에 해당하는 제6307.90.9889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으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해당 물품은 제6307.90.9889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함
 - 코르크가 직물 재료에 적층되나 직물 재료는 해당 물품의 외부 표면에 보이지 않으며, 이는 코르크를 안정화시키고 유연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임
 - 또한 제4504호에 대한 설명에는 코르크가 보강천(cloth backing)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4504.90.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응집 코르크(cork)(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응집 코르크(cork)의 제품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라. 중국의 장식 화환(제46류)-1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602.19.6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8월 9일, 참조번호는 N320860임

1) 물품개요

- 장식 화환은 말린 포도 덩굴을 이용해 원형 형태로 둥글게 만들어 문에 장식하는 22인치 크기의 장식용 리스(Wreath)임
 - 화환의 표면은 폴리에스터 직물과 플라스틱 영경귀가 전체 둘레의 2/3를 감싸고 가장 무거운 잎과 영경귀는 바닥에 집중되어 있고 측면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포도 덩굴 형태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중국의 업체는 해당 물품을 인조 잎으로 만든 제품인 제6702.90.3500호 또는 등나무로 만든 제품인 제4602.12.3500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제67류의 해설에서는 제6702호를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제46류의 해설에서는 제4602호를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wicker work)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해당 물품은 제6702.90.3500호로 분류할 수 없으며, 등나무가 아니기 때 문에 소호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4602호로 분류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결정함
 - 말린 포도나무 덩굴은 제46류의 주1에 명시된 조물 재료의 정의를 충족함
 - 제46류의 주1은 이 류에서 “조물 재료”란 플레이팅(plaiting)·인터레이싱(interlacing)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의 재료를 말하며, 짚·버드나무 가지(osier)·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골풀·갈대·목재의 스트립(strip), 그 밖의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strip)[예: 나무껍질·좁은 잎·라피아(raffia)의 스트립(strip)이나 넓은 잎에서 얻은 그 밖의 스트립(strip)], 방적하지 않은 천연의 방직용 섬유,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

한 것, 종이의 스트립(strip)을 말한다. 다만 가죽·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펠트(felt)·부직포의 스트립(strip), 사람 머리카락, 말의 털, 방직용 섬유용 로빙(roving)과 실,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명시함

- 화환은 엮는 재료(덩굴), 폴리에스터 직물, 플라스틱 및 금속 와이어로 만든 복합물로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따라 말린 포도나무 덩굴이 화환의 구조와 장식적인 모양을 제공하기 때문에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4602.19.6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wickerwork)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 제품의 기타 지조세공물로 분류하고 있음
 - 제99류 제Ⅲ장 주 20에 근거한 제4421.99.9780호에 따라 중국 물품은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됨

마. 인도네시아의 냅킨 링(제46류)-2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602.19.8000호이며 시행일은 2016년 3월 10일, 참조번호는 N272779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부레옥잠을 건조 및 편조하여 만든 높이 3.35인치, 깊이 0.94인치 크기의 냅킨 링임
 - 편조 소재는 부레옥잠의 중심을 감싸고 있음

2) 결정세변 및 사유

- 인도네시아 업체는 해당 물품을 제4601.94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제46류의 해설에서는 제4601호를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으로 분류하고 있음
 - 제4601.94호는 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CBP는 해당 물품은 제4601호에 열거된 반제품 또는 완제품 등의 가공도를 초과하여 가공한 물품이라는 점에서 제4601.94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함
 - 제46류의 해설서에서는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i) 조물 재료로부터 직접 조형한 물품
 - (ii) 이미 조립한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제품: 즉 플레이트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부터 만들었거나 스트랜드(strands)를 평행하게 놓고 조합한 물품이나 시트 모양으로 직조한 물품으로부터 만든 제품. 다만 이 호에는 제4601호의 완성품, 즉 가닥을 평행하게 놓고 조합하였거나 시트 모양[예: 매트류(mats, matting)나 스크린(screen)]으로 직조함으로써 완성품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한 조물 재료,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4601호 해설(B) (2) 참조)
 - (iii) 수세미 제품[장갑·패드(pads) 등](안을 댄 것인지에 상관없다)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4602.19.8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3%임
 -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wickerwork)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 제품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10.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종이·판지와 이들의 물품(제47류 -제49류)

가. 캐나다의 황산염펄프(제47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703.21.0040호, 제4703.29.0040호이며 시행일은 2015년 1월 15일, 참조번호는 N264975임

1) 물품개요

- 황산염펄프는 경목 크라프트 펄프(hardwood kraft pulp)와 연목 크라프트 펄프(softwood kraft pulp) 2가지로 구성됨
 - 경목 크라프트 펄프는 단풍나무, 자작나무 및 포플러나무와 같은 혼합된 비침엽수 우드칩으로 제조됨
 - 연목 크라프트 펄프는 가문비나무, 전나무 및 소나무를 포함한 침엽수로 제조됨
- 두 가지 물품은 모두 동일한 제조 공정을 거쳐 제조됨
 - 우드칩에 황화나트륨과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고 증기로 가열하며, 목재 펄프를 표백하기 위해 이산화염소와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는 다단계 공정에서 추가 작업이 수행된 후 펄프는 건조 및 형성되고 시트로 절단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물품은 경목 크라프트 펄프의 경우 제4703.29.0040호, 연목 크라프트 펄프의 경우 제4703.21.004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모두 0%임

- 경목 크라프트 펄프의 경우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중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의 비침엽수를 표백한 것으로 분류됨
- 연목 크라프트 펄프의 경우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중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의 침엽수를 표백한 것으로 분류됨

나. 한국의 종이쇼핑백(제48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819.40.0040호이며 시행일은 2009년 4월 16일, 참조번호는 N055058임

1) 물품개요

- 종이쇼핑백은 판지로 만든 작은 쇼핑백으로서 전·후면 중앙에 회사명(J. Mendel)이 인쇄되어 있고, 상단에 방직용섬유제의 손잡이가 양쪽에 끼워져 있으며, 내부에 종이로 된 깔판이 있음
 - 펼쳤을 때 크기는 가로 20cm, 세로 10cm, 높이 25cm이며, 안쪽 면에는 'made in china'라고 인쇄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물품은 판지로 만든 쇼핑백이므로 제4819.40.004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종이로 만든 판지, 상자, 케이스 및 기타 포장 용기 중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로 분류됨

다. 중국의 아동도서(제49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4901.99.0092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9월 24일, 참조번호는 N321625임

1) 물품개요

- 아동도서(MyPlate Book Jr)는 아이들에게 영양의 기초를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나선형 바인딩 책으로 32페이지로 구성됨
 - 책의 각 사분면은 야채, 과일, 곡물 및 단백질과 같은 식품 범주에 따라 나누어지며, 해당되는 범주에 속하는 음식을 표시하기 위해 별도로 열리도록 고안됨
 - 예를 들어, 과일 부분을 열면 첫 번째 페이지에 블루베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단백질 부분은 견과류, 조개류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책은 최소한의 삽화가 포함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중국 업체는 해당 물품을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에 해당하는 제4903호 또는 5~48페이지의 인쇄된 책으로 제4901호에 분류할 것을 제안함
- CBP는 먼저 제4903호를 고려해 보았을 때 해당 물품은 오히려 텍스트가 주를 이루고 그림은 부차적이기 때문에 제4903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제4901호에 적절하게 분류되는 것에 동의함
 - 제49류의 주 6에 따르면 “제4903호의 목적상 아동용 그림책이란 그림이 주체이며,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을 위한 책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4901.99.0092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중 기타의 각 5페이지 이상 및 48페이지 이하(표지 제외)로 분류됨
- 제99류 제Ⅲ장 주 20에 근거한 제4901.99.0092호에 따라 중국 물품은 7.5%의 추가관세가 부과됨

1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제63류)

가. 중국의 살균되지 않은 실크 봉합사(제50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5004.0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17년 11월 22일, 참조번호는 N291659임

1) 물품개요

- 멸균되지 않은 실크 봉합 실(물품번호 1008.11.0026 및 1008.11.0020)로 실크 실은 실을 만들기 위해 가는 100%의 실크 필라멘트 섬유로 만들어짐
 - 판매업체에 수출하기 전, 중국 제조 회사는 왁스로 실을 코팅하고 염색함
- 물품 1008.11.0026은 무게가 294g인 스펀⁸¹⁾에 데시텍스가 4,228.9를 초과하지 않는 실로 수입될 것이며 물품 1008.11.0020은 무게가 66g인 스펀에 데시텍스가 24.4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입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11부의 해설 주 4(A)(a)(i) 및 주 4(B)(c)에 따라 각각의 물품은 소매 판매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됨

81) 예를 들면 종이 테이프를 감는 데 사용되는 원통상의 것으로 릴(reel)이라고도 함

- 제11부의 해설 주 4(A)(a)(i)에서는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은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함)이 견사·견 웨이스트사·인조필라멘트사의 경우 85g 이하인 실(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을 의미한다고 명시함
- 제11부의 해설 주4(B)(c)에서는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은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함)이 공(ball) 모양으로 감은 실이나 타래실은 2천 및 3천 데시텍스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00g 이하인 실(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을 의미한다고 명시함
- 또한 살균되지 않은 실크 봉합사에는 바늘이 부착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5004.00.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소매용으로 판매되지 않는 실크 원사(실크 폐기물에서 방적된 원사 제외)로 분류됨

나. 벨기에의 3가지 울 및 나일론 혼방 새틴 직물(제51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5112.19.2000호, 제5112.30.1000호이며 시행일은 2006년 7월 8일, 참조번호는 M84452임

1) 물품개요

- 스타일#300 및 스타일#860은 90% 빗질된 양모와 10% 스테이플 나일론으로 구성된 염색된 새틴 직물임
 - 스타일#300 무게 300g/m²이며 170cm 또는 195cm 너비로 수입됨
 - 스타일#860은 무게 415g/m²이며 167cm 또는 200cm 너비로 수입됨
 - 스타일#300 및 스타일#860은 당구대, 스누커대 제조에 사용될 것이며 평균

30~36야드의 다양한 길이로 수입될 예정임

- 스타일 #760은 70% 빗질된 양모와 30% 스테이플 나일론으로 구성된 염색된 새틴⁸²⁾ 직물임
 - 무게는 355g/m²이며 167cm 또는 197cm 너비로 수입됨
 - 당구대, 스누커대 제조에 사용될 것이며 평균 30~36야드의 다양한 길이로 수입될 예정임

2) 결정세변 및 사유

- 해당 업체는 직물이 제9504.20.8000호의 당구용 부품 및 액세서리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특정 제품이 특정 용도에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완제품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확정될 때까지 재료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완성된 부품으로 간주할 수 없음
 - 천을 재단하여 다양한 테이블 스타일과 크기에 맞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천은 치수가 확실하게 고정된 부품이 아니며 천의 조각이 재료로 남아 있을 뿐 미완성 부품으로 간주되지 않음
- 따라서 스타일#300 및 스타일#860으로 지정된 두 직물은 제5112.19.2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7%임
 - 양모 또는 동물 털 중량 80% 이상 함유한 빗질된 양모 또는 빗질된 미세한 동물 털로 만든 직물, 기타 태피스트리(tapestry, 이하 태피스트리⁸³⁾) 직물 및 실내 장식 직물로 분류됨

82) 수자직으로 된 광택이 있고 매끄러운 직물

83) 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

- 또한 스타일 #760인 직물은 제5112.30.1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7%임
 - 주로 또는 단독으로 혼합된 빗질된 양모 또는 빗질한 미세한 동물의 털로 만든 직물로서 인조 스테이플 섬유, 태피스트리 직물 및 300g/m²를 초과하는 중량의 실내 장식 직물로 분류됨

다. 중국의 면 100% 경량 직물 2종(제52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5208.19.6090호, 제5208.29.6090호이며 시행일은 2011년 10월 14일, 참조번호는 N184497임

1) 물품개요

- 해당 직물은 와이핑(wiping, 이하 와이핑)⁸⁴⁾ 및 여과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적 용도가 있으며 주요 용도는 미국 항공우주 제조 산업에서 와이핑을 위한 것임
 - 직물은 그리지(greige)⁸⁵⁾ 또는 표백된 상태로 36인치 너비로 수입됨
- 첫 번째 직물은 Style LP 2-A로 100% 면 단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8개의 날실 끝과 인치당 24 필링 픽(filling picks, 이하 필링 픽)으로 구성되며 무게는 32.2g/m²임
 - 직물은 날실 방향으로 2겹으로 된 한 줄의 실이 꼬여 있고 각 가장자리에서 약 0.5인치 떨어진 씨실에 의해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평직 본체가 특징이며 셀바지(selvages, 이하 셀바지)⁸⁶⁾는 북 없는 직기⁸⁷⁾에서 만들어진 표준 셀바지 중 하나인 레노(leno)⁸⁸⁾임

84) 표면 처리

85) 표백되지 않은

86) 직물 폭의 양쪽 끝

87) 직조에서 씨실을 넣을 때 북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씨실을 넣는 직기

88) 일종의 얇은 면직물

- 두 번째 직물은 Style LP 2-B로 100% 면 단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8개의 날실 끝과 인치당 24 필링 픽으로 구성되며 무게는 32.2g/m²임
 - 직물은 2겹으로 된 실 두 줄이 서로 꼬여 있고 각각 약 0.5인치 떨어져 있으며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직조된 본체가 특징임
 - 셀바지는 북 없는 직기에서 만들어진 표준 셀바지 중 하나인 레노임

2) 결정세변 및 사유

- 제52류에 대한 미국의 추가 주 3(b)에서는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하나 이상의 직조와 관련된 조항은 배타적인 조합을 포함하여 전체가 지정된 직조 또는 직조로 된 직물(셀바지 제외)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업체는 제5803.00.1000호에 따라 면 거즈(레노 직조) 직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직물의 몸체가 평직이므로 해당 소호에 따른 분류는 제외되며, 또한 셀바지는 분류를 결정할 때 제외됨
- 따라서 표백되지 않거나 회색 상태인 경우 스타일 LP 2-A 및 LP 2-B는 제5208.19.609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9%임
 - 면이 85% 이상 함유되고 200g/m² 이하 무게를 가진 직물 중 표백되지 않은 직물의 기타로 43번에서 68번의 직물로 분류됨
- 또한 표백된 경우 스타일 LP 2-A 및 LP 2-B는 제5208.29.609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0.2%임
 - 면이 85% 이상 함유되고 200g/m² 이하 무게를 가진 직물 중 표백된 직물의 기타로 43번에서 68번의 직물로 분류됨

라. 한국의 인쇄된 평직 레이온/아마 실내 장식품(제53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5516.94.0020호이며 시행일은 2018년 2월 27일, 참조번호는 N284062임

1) 물품개요

- Flexsteel Pattern 531 Bettina Backed는 안틱 플라워 패턴이 프린트된 평직 원단으로 제공된 직물 사양 시트에는 린넨(linen, 이하 린넨)/아마(flax, 이하 아마) 55% 및 비스코스 레이온(viscose rayon) 45%의 섬유 함량이 표시되어 있음
- 그러나 CBP 실험실 분석에 따르면 이 직물의 전체 섬유 함량은 중량 기준으로 56% 레이온(rayon, 이하 레이온) 및 44%의 아마이며 면(cotton)의 흔적이 있음
 - 1겹 레이온/아마 혼방 스테이플사(staple)로 구성되며 무게는 294.7g/m²이며 24개의 날실 끝과 평방센티미터당 필링 픽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평직으로 직조되며 평균 실 수(Average Yarn Number, AYN)는 8개임
 - 업체는 원단이 55인치 너비로 수입될 것이며 뒷개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업체는 제5309.29.4010호에 따라 아마 직조 직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으나 CBP 실험실 분석 결과 무게가 우세한 것은 인조섬유인 레이온 스테이플 섬유로 판명되었음
- 시팅(Sheeting)이라는 용어는 제55류 통계 주(Statistical Note, 이하 통계 주) 1(b)에서 기모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유형의 평직물로서 정의됨
 - 평방미터당 무게가 170g 이하인 직물, 평방센티미터당 날실 끝이 33개 이상이고 필링 픽이 평방센티미터당 평균 실 개수가 68개 이하이지만 프린트 천은 포

합하지 않음

- 제곱미터당 무게가 170g을 초과하는 직물이지만 다음을 포함하지 않음
 - 날실 또는 충전재가 평균 실 개수 26개 이하의 다중(접힌) 또는 케이블사로 구성된 직물 그리고 정사각형 구조가 아닌 평균 실 수 27개 이상의 직물
 - 사각형 구조는 제55류 통계 주1(IJ)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79개 미만의 날실 끝과 평방센티미터당 필링 픽을 포함하며, 이 중 센티미터당 총 날실 끝의 수와 센티미터당 필링 픽의 총 개수 간의 차이는 11 미만을 의미함
 - 또한 79개 이상의 날실 끝과 평방센티미터당 필링 픽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센티미터당 총 날실 끝과 센티미터당 필링 픽 수는 이러한 날실 끝 및 필링 픽의 평방센티미터당 전체의 57% 미만임

□ 따라서 해당 직물은 제5516.94.002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2%임

- 인조 스테이플 섬유인 직조 직물의 기타 인쇄, 판금직물로 분류됨

마. 한국의 직물 4종(제54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5407.53.2040호, 제5407.61.9945호 제5407.91.209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2월 14일, 참조번호는 N292230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창문 가구 제조에 사용될 ‘리본(Ribbon), 매직듀오(Magic Duo), 에클리스(Eclisse), 에클리스 린넨(Eclisse Linen)’으로 식별된 4가지 스타일의 직물임

□ 리본은 직물 전체에 걸쳐 단단한 패널과 개방형 패널의 수평 영역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직조 직물임

- CBP의 분석에 따르면 리본은 전체가 다양한 색상의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filament), 이하 필라멘트)사로 구성된 직물로서(이 중 92.1%는 질감이 있는 필라멘트사이고 7.9%는 질감이 없는 필라멘트사임) 직조는 평직, 새틴⁸⁹⁾, 능직⁹⁰⁾ 또는 자카드⁹¹⁾가 아니며 무게는 107.7g/m²임

- 매직듀오 또한 직물 전체에 단단한 패넬과 개방형 패넬의 수평 영역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직조 직물임
 - CBP의 분석에 따르면 매직듀오는 전체가 다양한 색상의 폴리에스터(polyester, 이하 폴리에스터) 원사로 구성된 직물로 평직(plain, 이하 평직), 새틴, 능직(twill, 이하 능직) 또는 자카드(jacquard, 이하 자카드)가 아니며 직물은 92.6개의 질감이 있는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와 7.4%의 무조직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로 구성되고 무게는 107.5g/m²임

- 에클리스는 직물 전체에 단단한 직조 패넬과 투명한 개방형 패넬이 교대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 직조 직물임
 - CBP의 분석에 따르면 에클리스는 평직, 능직, 새틴 또는 자카드가 아니며 직물은 전체가 다양한 색상의 무조직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로 구성되어 있음
 - 무게는 99.7g/m²이며 실은 미터당 472개 미만의 꼬임을 포함하고 있음

- 제54류 통계 주1(b)에서는 평직물을 미터당 472회 이상 꼬인 실을 포함하지 않는 직물로 정의함

- 에클리스 린넨은 또한 직물 전체에 단단한 직조 패넬과 투명한 개방형 패넬의 수평 영역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직조 직물임
 - CBP의 분석에 따르면 에클리스 린넨은 평직, 능직, 새틴 또는 자카드 직조 구조가 아니며 직물은 무질감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29.2%), 질감 폴리에스터 필

89) 수자직으로 된 광택이 있고 매끄러운 직물

90) 직물 표면에 날실 또는 씨실로 빗방향의 이랑무늬를 형성하는 조직

91) 여러 색의 실을 사용하여 무늬를 짜낸 원단으로 두툼함

라멘트사(27.6%),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섬유(37.7%), 아마/린넨(5.5%)으로 구성되며 직물은 표백되지 않았으며 무게는 88.9g/m²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59류 해설에 대한 주 2는 플라스틱으로 코팅, 피복, 함침 또는 적층된 방직용 직물이 분류될 수 있는 제5903호의 범위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 a)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m²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음)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음)
 - 섭씨 15도부터 30도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mm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제39류)
 -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물품으로 이러한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음(제39류)
 - 플라스틱을 부분적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한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함)
 -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보강용으로 한정함(제39류)
 -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
 - b) 제5604호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실·스트립(strip)·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

- 따라서 리본 및 매직 듀오는 제5407.53.204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4.9%임
 - 제5404호의 재료에서 얻은 직조물이 포함되는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조물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중량이 85% 이상 함유된 기타 직물 중 기타 표백되지 않은 경우로 무게는 170g/m² 이하인 것으로 분류됨

- 또한 에클레스는 제5407.61.9945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4.9%임
 - 제5404호의 재료에서 얻은 직조물이 포함되는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조물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중량이 85% 이상 함유된 기타 직물 중 질감이 없는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중량이 85% 이상 함유된 다른 색깔의 실로 무게는 170g/m² 이상인 것으로 분류됨

- 마지막으로 에클레스 린넨은 제5407.91.209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4.9%임
 - 제5404호의 재료에서 얻은 직조물이 포함되는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조물로 기타 직물 중 표백되지 않은 직물의 기타로 분류됨

바. 영국의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삼(제55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5504.9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5월 6일, 참조번호는 N317002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삼⁹²⁾(carboxymethyl cellulose tow, 이하 CMC)로 100% CMC 삼 직물임
 - 길이가 1~3m인 스테이플 섬유로 제작된 후 7파운드 가방에 포장되어 미국으로 배송되며 해당 직물은 상처 치료를 위한 드레싱 직물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임

92) 섬유 토(방적 원료로서의 아마(亞麻))나 삼 따위의 짧은 섬유·지스리기 섬유

- CMC 삼 직물은 완전한 인조 스테이플 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적을 위해 카딩(carding)⁹³⁾, 빗질 또는 기타 가공 작업을 거치지 않았음
 - 섬유의 평균 길이는 겉으로 보기에 4cm이며 샘플 섬유는 아세테이트 또는 레이온으로 구성되지 않았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업체는 CMC 삼 직물을 제3005.90.50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CBP에서는 동의하지 않았음
 - 충전재, 거즈, 붕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드레싱, 반창고, 찜질), 제약 물질의 함침 또는 코팅하거나 의료, 외과, 치과 또는 수의학 목적으로 소매 판매를 위한 형태 또는 포장으로 된 것의 기타로 분류됨
- CBP에 따르면 CMC 삼 직물은 소매 판매를 위한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3005.90.50호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CMC는 제5504.90.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4.3%임
 - 인공 스테이플 섬유, 카딩, 빗질 또는 기타 방적용으로 가공되지 않는 섬유의 기타로 분류됨

사. 중국의 드림캐쳐(제56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5609.00.3000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3월 15일, 참조번호는 N302471임

93) 면화·양털을 찾기 전의 공정

1) 물품개요

- 드림빅(Dream Big) 드림캐처(dream catcher, 이하 드림캐쳐) 상품번호 474493의 장식용품으로 나일론 끈이 얽혀 느슨한 거미줄을 형성하는 수직 방향의 플라스틱 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작은 플라스틱 구슬 몇 개가 간격을 두고 줄을 장식하며 플라스틱 링은 또한 얇은 인조 스웨이드 띠로 단단히 쌓여 있음
 - 링 아래에는 ‘드림 빅’이라는 글자가 인쇄된 중밀도 섬유판(Medium Density Fiberboard, MDF)이 장착되어 있으며 밝게 염색된 세 개의 깃털이 밑바닥을 가로지르는 줄에 매달려 있음
 - 드림캐쳐는 길이가 약 11인치, 너비가 약 5인치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업체에서는 제4911.99.8000호에서 인쇄물로 드림 캐쳐의 분류를 제안하였으나 CBP에서는 ‘Dream Big’이라는 인쇄된 문구가 제거되더라도 장식적이며 식별할 수 있는 정체성, 성격 및 드림캐쳐의 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
 - 제49류에 대한 총설에서는 언급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주제, 문자 또는 그림 표현으로 인쇄된다는 사실에 의해 본질적인 특성과 용도가 결정되는 모든 인쇄물을 다룬다고 명시하고 있음
- CBP에서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따라 드림캐쳐의 본질적인 특성은 거미줄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얇은 나일론 로프(rope)에 의해 부여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나쁜 꿈을 잡는 데 사용되는 물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라고 결정함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명시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5609.00.3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4.5%임
 -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
 - 제99류 제Ⅲ장 주 20에 근거한 제9903.88.03호에 따라 중국제품은 10%의 추가관세가 부과됨

아. 중국의 현관 매트(제57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5705.00.2030호이며 시행일은 2016년 1월 12일, 참조번호는 N271510임

1) 물품개요

- 현관 매트(제57류)의 견본으로 100% 폴리에스터 플록(polyester flock)과 부스러기 고무 베이스(crumb rubber base)로 만들어진 섬유질 상단 표면을 가지고 있음
 - 매트(제57류)의 크기는 18×30인치이며 매트(제57류)는 세 가지 스타일로 모든 매트에는 꽃과 벽돌 디자인, 자갈 디자인 또는 큰 꽃 디자인과 함께 '환영(Welcome)'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업체는 현관 매트(제57류)에 대해 가황 고무로 된 바닥 깔개 및 매트(제57류)를 해당하는 소재목 제4016.91호에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음
 - 고무는 매트(제57류) 구성 재료의 대부분을 구성하므로 제품에 필수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1996년 1월 11일자 NY 817629를 인용하여 고무 및 나일론 플로킹(nylon flocking material) 재료로 구성된 현관 매트(제57류)를 예로 들었음

- 그러나 제출한 현관 매트제품 표면은 폴리에스터 플록 층으로 완전히 덮여 있지만 NY 817629의 현관 매트는 표면의 일부만 덮여 있음

- 제40류의 해설에 따르면 고무 및 식물 조합의 분류가 본질적으로 제11부의 해설 주1(ij), 제56류의 해설 주3 및 제59류의 해설 주4에 의해 규율되며 해당 물품은 제40류⁹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11부의 해설 주1(ij)에 따라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하거나 적층한 식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펠트(felt)·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40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시함
 - 제59류의 해설 주4 제5906호에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 의 직물류’란 다음을 의미함
 -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sheet)·스트립(방직용 섬유가 단지 보강의 목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함)(제40류),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에는 적용하지 않음

- 폴리에스터 플록 층을 고무바닥에 접착시킨 해당 현관 매트는 플록이 섬유 소재이지만 섬유 직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제4016호에 분류될 수 없음

- 제57류의 해설 주1에서 ‘카펫 및 기타 방직용 바닥재’라 함은 사용 중 방직용 재료가 물품의 노출된 표면 역할을 하는 바닥재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관 매트의 상단 표면이 섬유 플록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당 물품은 제5705호의 기타 카펫 및 기타 섬유 바닥 깔개(구성 여부를 불문함)로 분류됨

94) 4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고무를 함침, 코팅, 피복 또는 적층한 펠트로서 방직용 섬유 재료의 중량이 50% 이하이고 고무에 완전히 매립된 펠트, 부직포(고무에 완전히 박혀 있거나 그러한 재료로 양면이 완전히 코팅되거나 덮인 것으로서, 색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코팅 또는 덮개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방직용 직물(제59류의 해설 주1에 정의됨) 고무를 함침, 코팅, 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중량이 1,500g/㎡를 초과하고 방직용 재료의 중량이 50% 이하인 것, 롤러 고무의 판, 시트 또는 스트립, 방직용 직물(제59류의 주1에 정의됨), 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된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지 강화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5705.00.203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3.3%임
- 기타 카펫 및 기타 섬유 바닥재(구성 여부에 관계없는 기타 인조 섬유)로 분류됨

자. 중국의 스팅글이 있는 자수 폴리에스터 장식(제58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5810.92.1000호이며 시행일은 2014년 5월 21일, 참조번호는 N252877임

1) 물품개요

- PVC 스팅글(sequins)을 바느질한 폴리에스테르 100%의 자수 접지 원단으로 구성된 동그란 모양의 장식이며 PVC 스팅글과 복잡한 꽃 자수는 민속적인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장식의 지름은 약 5.5cm이며 샘플에 대한 후속 접촉 및 육안 검사(contact and visual examination)에 따르면, 접착제로 뒷면에 코팅된 이 제품은 공예 프로젝트, 보석 제작 및 의류 장식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58류의 해설 주6에 따르면 제5810호의 '자수(embroidery)'는 특히 방직용 직물의 눈에 보이는 바탕에 금속 또는 유리사로 자수한 것과 직물 또는 기타 재료의 스팅글, 구슬 또는 장식용 모티프를 꿰매어 덧대는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함
- 제5805호에서 바느질 태피스트리(tapestry)⁹⁵를 분류하므로 제5810호에서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장식품은 제5810.92.1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3.3%임

95) 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 또는 해당 직물을 제작하는 기술

- 기타 카펫 및 기타 섬유 바닥재(구성 여부에 관계없는 기타 인조 섬유)로 분류됨

차. 대만, 한국 및 중국의 5가지 적층 기모 니트(제59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5903.20.2500호, 제5903.90.2000호, 제5903.90.2500호이며 시행일은 2018년 3월 16일, 참조번호는 N252776임

1) 물품개요

- Style 463000/Sudden은 무지개 빛깔의 광택과 미묘한 질감이 특징인 플라스틱 재질로 한쪽 면을 덮은 검은색 니트 직물로 전면은 전체가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된 편직 안감에 적층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표면 효과는 이형지(또는 주조), 프린팅 및 엠보싱(embossing)의 조합으로 나타남
 - 해당 직물은 표면 중 하나가 폴리우레탄 플라스틱 재료로 코팅되거나 덮여 있으며 접착 직물의 무게는 $402.0\text{g}/\text{m}^2$ 이고 이 중 약 58%가 직물, 17%가 소형 플라스틱, 25%가 셀룰러 플라스틱임
 - 플라스틱의 전체 두께는 105.7마이크론(micron, 이하 마이크론)이며 컴팩트한 외부 레이어와 셀룰러(cellular) 내부층으로 구성되고 뒷면 직물은 브러싱 처리되어 있으며 두 개의 멀티필라멘트 폴리에스터 원사를 사용하여 이중 씨실 구조로 되어 있음
- Style 466196/Compound는 흰색 니트 직물로 한쪽 면을 플라스틱 재질로 덮은 반점 효과가 특징으로 전면은 전체가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된 편직 안감에 적층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직물은 표면 중 하나가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으로 코팅되거나 덮여 있으며 CBP 분석에 따르면 접착 직물의 무게는 $390.1\text{g}/\text{m}^2$ 이고 이 중 약 40.2%가 직

- 물이고 59.8%가 플라스틱 재료임
 - 플라스틱의 전체 두께는 85.7마이크론이며 흰색 셀룰러 층, 투명한 콤팩트 층, 양각 표면 또는 껍데기(embossed surface or skin) 등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뒷면은 브러싱(brushed) 처리가 되어있고, 두 개의 다면 폴리에스테르 실을 사용한 이중 직조 니트임

- Style 464930/Scuba는 부드러운 회갈색 니트 직물로 한쪽 면은 단색 플라스틱 재질로 덮여 있으며 전면은 전체가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된 편직 안감에 적층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직물의 표면 중 하나는 양각으로 보이는 폴리우레탄 플라스틱 재료로 코팅되거나 덮여 있으며 접착 직물의 무게는 500.3g/m²이고 이 중 약 41.4%가 직물이며 58.6%가 플라스틱 재료임
 - 플라스틱의 전체 두께는 122.5마이크론이며 주황색 셀룰러 층, 매우 얇은 불규칙한 세포 오렌지색 외부 표면 또는 껍데기를 가진 투명하고 조밀한 층, 브러싱 처리된 뒷면 패브릭은 두 개의 멀티필라멘트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사용하여 경편물 구조(warp knit construction)로 되어있음

- Style 466064/Alloy는 무지개 빛깔의 광택과 미묘한 질감이 특징인 플라스틱 재질로 한쪽 면을 덮은 검은색 니트 직물로 전면은 전체가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된 니트 안감 천에 적층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직물은 표면 중 하나가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플라스틱 재료로 코팅되거나 덮여 있으며 직물의 무게는 582.5g/m²이고, 그중 약 41.1%가 직물이며 58.9%가 플라스틱 재료임
 - 플라스틱 전체 두께는 235.1마이크론이며 두 개의 서로 다른 색상의 소형 플라스틱 층으로 구성됨

- Style 440401/Lariat는 부드러운 회갈색 니트 직물로, 한쪽 면이 가죽 질감의 플라스틱 재질로 덮여 있으며 전면은 전체가 폴리에스터로 구성된 편직 안감 직물에 적층된 비닐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직물의 표면 중 하나는 가죽과 같은 패턴으로 엠보싱 처리된 셀룰러 아크릴 플라스틱 소재로 코팅되어 있으며 직물의 무게는 639.0g/m²이고 이 중 약 22.2%가 직물이고 77.8%가 플라스틱 재료임
 - 셀룰러 플라스틱의 두께는 평균 174마이크론이며 두 개의 서로 다른 색상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결정세변 및 사유

- 해당 업체에서는 적층 직물을 제39류의 직물 강화 플라스틱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플라스틱 부분이 비셀룰러 플라스틱의 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시하였음
- 그러나 CBP 실험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부분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셀룰러이며 일부는 소형 플라스틱임
- 제39류의 해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플라스틱-섬유 조합을 부분적으로 다룸
 - 이 류의 주 제9호에 해당하는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는 제3918호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품목분류는 본질적으로 제11부의 주 제1호(H), 제56류의 주 제3호와 제59류의 주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음의 물품도 이 류에 포함함
 -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와 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해당 류로 분류함
 -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felt)나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판·시트(sheet)·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이나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예: 기모(raising)에 의하여)와 파일직물, 툴(tulle), 레이스와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실험실 분석과 육안 검사에 기초하여 보았을 때 즉각적인 라미네이트(laminated) 직물의 지지 직물은 브러싱 처리가 되며 이러한 라미네이트 직물은 제39류의 분류에서 제외되므로 제59류의 직물로 분류됨
- 제5903호는 코팅, 피복, 함침 또는 적층된 직물에 대해 분류가 가능하며 제59류의 해설 주2에서는 제5903호는 다음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음)
 - 섭씨 15도부터 30도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mm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일반적으로 제39류)
 -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물품으로 이러한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음(제39류)
 - 플라스틱을 부분적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한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함)
- 따라서 Styles 463000/Sudden, 466196/Compound 및 464930/Scuba는 제5903.20.25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7.5%임
 - 플라스틱을 함침, 코팅,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직물(제5902호의 것은 제외)로 폴리우레탄을 포함한 인조 섬유의 기타로 분류됨

- Style 466064/Alloy는 제5903.90.25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7.5%임
 - 플라스틱을 함침, 코팅,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직물로(제5902호의 것은 제외) 기타 인조 섬유로 분류됨

- Style 440401/Lariat은 제5903.90.2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플라스틱으로 함침, 코팅, 피복 또는 적층된 섬유 직물 중 이 항목은 제590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인조 섬유로 고무나 플라스틱 무게가 70%인 것으로 분류됨

카. 한국의 폴리에스터 100% 인쇄 경편 오픈워크 직물(제60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6005.39.0010호이며 시행일은 2017년 12월 1일, 참조번호는 N295756임

1) 물품개요

- Star Bright Tutu는 얇은 명주 그물과 유사한 니트 원단으로 원단에 대칭적으로 배치된 무지개 빛깔의 점이 프린트되어 있음
 - 전체가 폴리에스터로 구성된 메쉬(mesh) 직물이며, 트랜스퍼 스팅글(transfer sequins, 이하 트랜스퍼 스팅글)로 알려진 홀로그램 도트(holographic dots)로 장식되어 있는 개방형 경편직물로 무게는 26g/m²임
 - 금속화된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다양한 폭, 색상 및 디자인으로 제작될 수 있으며, 원래 상태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트랜스퍼 스팅글의 경우, 금속화된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뒷면에 핫멜트 접착제(hot melt adhesive)를 코팅하여 액상으로 도포한 후 건조, 경화시키는 방식임
 - 접착제는 열이 발생하며 일단 냉각되면 접착제가 직물 표면에 영구적으로 결합됨

- 트랜스퍼 스팅글은 다이캐스팅을 사용한 펀치 공법으로 천에 적용하여 다양한 패턴을 만듦
- 압력 주조(die-castings)는 열이 직물의 표면에 동시에 가해지는 동안 아래에 있는 직물과 함께 필름에서 점을 펀칭하여 천공된 부분만 천에 바인딩되도록 함
- Star Bright Tutu에 사용된 패턴은 랜덤 도트무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천에 반복되는 패턴으로 배치됨
- 해당 원단은 56인치에서 58인치 너비로 수입될 예정이며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될 예정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Star Bright Tutu는 제59류의 해설 주2(a)(4)에 따라 제59류로 분류할 수 없음
 - 제59류의 해설 주2(a)(4)에서는 제5903호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특히 플라스틱을 부분적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한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한다)를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원단은 제6005.39.001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0%임
 - 경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knitting machines)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함)의 합성 섬유의 기타, 인쇄된 오픈 워크 패브릭으로 분류됨

타. 한국의 여성 가디건(제61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6110.20.2079호이며 시행일은 2017년 12월 1일, 참조번호는 N291817임

1) 물품개요

- 해당 의류는 HS 7227-2, HS 7228-2 및 HS 7229-2의 세 가지 스타일 번호로 제공되며 직물 구성은 면 60%와 폴리에스터 40%의 섬유임
 - 옷감의 외부 표면은 바늘이 맺힌 방향으로 2cm당 9바늘을 초과하며 가디건은 내부 표면에 기모 처리되어 있고 조임끈이 있는 자체 패브릭 후드가 있음
 - 지퍼로 잠그는 전면 개방 가능한 형태이며 리브 니트 소맷단이 있는 긴 소매와 허리에 2개의 전면 카고(cargo) 포켓(양쪽에 하나씩) 및 헐렁한 핏(loose fitting)의 리브(rib) 니트 하단의 모형이며 기장은 허리까지 내려옴

2) 결정세번 및 사유

- 업체는 제6102.20.00호에 따른 재킷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의복의 헐렁한 밑단은 그러한 분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에 충분하지 않음
 - 제6102.20.00호에서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4호의 것은 제외함)로 면으로 만든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가디건은 제6110호의 의류로 분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해당 가디건은 제6110.20.2079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6.5%임
 -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가디건·웨이트코트(waistcoat) 및 이와 유

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함) 중 스웨터, 풀오버, 스위트 셔츠, 양복 조끼(조끼) 및 이와 유사한 제품(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기타로 분류됨

파. 베트남 여성 재킷 관세 분류(제62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6202.93.4800호, 제6202.93.5511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1월 6일, 참조번호는 N316600임

1) 물품개요

- Style 522030은 부직포 폴리에스테르 단열재로 적층하고 가로줄로 누빈 나일론 100% 직조 원단으로 구성된 여성용 재킷으로, 의복의 겉 부분은 내구성이 뛰어난 방수제로 처리되었음
- 조절 가능한 스쿠버 타입 후드와 내부 스톰 플랩(interior storm flap)⁹⁶⁾의 상단 까지 확장되는 지퍼 잠금장치가 있는 전면 개방부가 특징임
 - 의복에는 허리 아래의 지퍼 포켓과 긴 래글런(raglan) 소매⁹⁷⁾가 있으며 소매와 의복 바닥은 탄성이 있는 천으로 덧대어 붙어 있음
 - 의복은 오른쪽 내부 주머니에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짐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업체는 style 522030용 직물이 제62류, 미국 추가 주 2의 요구 사항에 따라 방수 기능이 있음을 명시하는 실험실 보고서를 제공하였음

96) 단추 여밈으로 된, 어깨 부분에서 가슴 부분까지 덧대어 다는 덮개 장식

97) 깃 둘레부터 소매 아래에 걸쳐서 비스듬한 소매의 이음선을 가진 오버코트. 또는 그와 같은 소매

- 제62류에 대한 미국 추가 주 2에서는 해당 호98)의 물품이 방수가 된다는 것은 600mm의 헤드 압력하에서 AATCC 시험 방법 35에 따라 시험했을 때 2분 후에 1.0g 이하의 물이 침투하는 내수성(ASTM D7017의 현재 버전 참조)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방수 기능은 겹과 안감 또는 속 안감에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한 결과여야 한다고 명시함

- 따라서 해당 재킷이 미국 추가 주 2에 따른 방수테스트를 통과했을 시 제6202.93.48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7.1%임
 - 여성이나 소녀의 외투·카코트(carcoats)·케이프(capes)·클로크(cloaks)·아노락(anoraks)(스키재킷 포함)·윈드브레이커와 이와 유사한 물품(패딩된 민소매 재킷 포함)(제6204호의 것은 제외)중 아노락 재킷(스키재킷을 포함한다), 윈드브레이커 및 이와 유사한 제품(패디드, 민소매 재킷 포함)의 인조 섬유 기타(방수)로 분류됨

- 해당 재킷이 미국 추가 주 2에 따른 방수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시 제6202.93.5511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7.7%임
 - 여성이나 소녀의 외투·카코트·케이프·클로크·노락(스키재킷 포함)·윈드브레이커와 이와 유사한 물품(패딩된 민소매 재킷을 포함)(제6204호의 것은 제외함)으로 아노락 재킷(스키재킷을 포함한다), 윈드브레이커 및 이와 유사한 제품(패디드, 민소매 재킷 포함)의 인조 섬유 기타(여성용)로 분류됨

98) 제6201.92.17호, 제6201.92.35호, 제6201.93.47호, 제6201.93.60호, 제6202.92.05호, 제6202.92.30호, 제6202.93.07호, 제6202.93.48호, 제6203.41.01호, 제6203.41.25호, 제6203.43.03호, 제6203.43.11호, 제6203.43.55호, 제6203.43.75호, 제6204.61.05호, 제6204.61.60호, 제6204.63.02호, 제6204.63.09호, 제6204.63.55호, 제6204.63.75호, 제6211.20.15호

하.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용 절연 패드의 관세 분류(제63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6307.90.9889호이며 시행일은 2015년 10월 22일, 참조번호는 N268988임

1) 물품개요

- 절연패드는 폴리우레탄 폼 층을 덮는 부직포 직물의 외부 층으로 구성되며 배터리의 유체 온도 상승으로 인한 부품 및 주변 부품의 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배터리 주위에 설계 및 장착됨
 - 단열재는 폼 및 직물(foam and textile layers) 층에 의해 제공되며 기계적 기능은 없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업체는 단열 패드를 제8708.99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음
 - 제8701호에서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의 기타로 분류됨
- 그러나 절연패드는 배터리 팩을 둘러싸고 있으며 배터리를 둘러싼 다른 구성 요소의 열 손상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연 패드는 자동차의 부품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배터리 팩의 액세서리라고 볼 수 있음
- 제17부의 주2(f)에 따라 제85류의 전기기계 또는 장비는 이 절에서 제외됨
 - 차량 배터리는 제85류에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제17부에서 제외되며 결과적으로 배터리의 모든 액세서리도 제17부에서 제외됨
- CBP에서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를 적용하여 필수적인 특성인 직물에 대한 호로 분류하였음

-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명시함
 - 절연 패드는 폼과 부직포 직물(foam and non-woven textile fabric)로 구성된 복합재로 폼은 제품의 구조와 단열 기능을 제공하며, 천은 패드에 미적인 매력을 주며 배터리 주위에 접히고 끼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6307.90.9889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7%임
- 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 다른 구성품들의 기타 섬유제품으로 분류됨

12.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64류-제67류)

가. 다기능 농구화(제64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6404.11.90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4월 30일, 참조번호는 H303881임

1) 물품개요

- ‘Adapt BB’ 또는 ‘Adapt’라고 하는 특정 Nike 착용 제품은 Adapt 플랫폼 5가지 기본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블루투스 시스템 온칩(System on Chip, 이하 SoC)⁹⁹⁾

⁹⁹⁾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기술집약적 반도체

- 자이로스코프¹⁰⁰), 가속도계 및 용량성 센서로 구성된 센서 팩
 - 3개의 마이크로컨트롤러 유닛(microcontroller unit, 이하 MCU) 프로세서
 - 플래시 메모리 및 무선 전력 수신기를 포함하는 시스템 및 서브시스템 구성요소
 - 광학 직교 회전¹⁰¹) 인코더¹⁰²)와 저(低) 저항 고주파, DC 모터가 있는 자동 레이스 플랫폼
 - 성능 농구화(performance basketball shoes) 덮개
- 수입 시 Nike Adapt BB에는 소매용으로 함께 포장된 신발 한 켤레(위의 전자 부품 포함), 무선 충전 패드, USB 케이블/벽용 충전기 콤보 및 작동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음
- 신발에 대한 설명서에 따르면 갑피¹⁰³)가 합성 니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폼 밑창이 특징이라고 나와 있음
 - 외부 솔 유닛에는 센서 팩, 블루투스 칩, 시스템 구성요소 및 갑피에 자동 레이스 플랫폼이 포함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블루투스 SoC의 경우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음
- 음성, 이미지 또는 기타 데이터의 송수신을 위한 기타 장치(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통신용 장치 포함)(예: 근거리 또는 광역 네트워크,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수신 장치 제외)의 일부로 분류됨
- 센서의 경우 제9031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음
- 이 장에 명시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기기, 기기 및 기계의 측정 또는 점검기기, 프로파일 프로젝터, 부품 및 부속품

100) 회전체의 역학적인 운동을 관찰하는 기구

101) 축 사이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시되는 회전

102) 입력한 데이터를 다음 처리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호화하는 장치

103) 신발의 겹가죽

- 업체는 시스템 기술에 대한 데이터 처리는 제8542호, 메모리는 제8523호, 자동 장착시스템은 제8501호, 무선 충전 패드는 제8504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음
 - 제8542호는 전자 집적회로를 제공하는 부품에 해당됨
 - 제8523호는 디스크, 테이프, 반도체를 이용한 비휘발성 저장 장치, 스마트 카드 및 기타 현상을 기록하기 위한 미디어 및 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 생산을 위한 매트릭스와 마스터를 포함하는 기타 매체를 제공하는 제8523호 디스크(제 37류의 제품 제외)에 해당됨
 - 제8501호는 전기 모터 및 발전기(발전 세트 제외)에 해당됨
 - 제8504호는 전기 변압기, 정적 변환기(예: 정류기) 및 인덕터¹⁰⁴)에 해당됨

- 신발은 제6404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음
 - 제6404호는 고무, 플라스틱, 가죽 또는 합성가죽으로 된 외부 밑창과 직물 재료로 된 갑피가 있는 신발에 해당됨

- 해당 업체는 Nike Adapt BB를 온라인 콘텐츠 경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된 착용 가능 전자 장치로 설명하였으며 물리적 기술 구성 요소가 포함된 농구화는 무선 배터리 충전 패드/매트와 함께 세트로 수입되는 복합 상품으로 간주됨

- 블루투스를 활용하고 피트니스 및 위치 추적을 포함하여 Adapt의 여러 기능을 공유하는 착용 가능한 스마트 장치와 관련된 다른 예시의 CBP 판결을 살펴보면 이러한 장치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위한 장치로 최종적으로 제 8517호로 분류함

- 그러나 CBP는 이러한 제품과 Nike Adapt BB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어 제8517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일반적으로 스마트 시계라고 하는 장치는 사용자의 손목에 차고 있으며 대부분의

104) 전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로 유도기전력을 형성할 수 있게 고안된 장치

- 경우 호스트 장치와 페어링되지 않는 한 스스로 정확한 시간을 설정할 수 없음
- 웨어러블 스마트 장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호스트 장치로 전송할 뿐만 아니라 터치, 시각 및 소리(예: 터치 감도, 스피커, 햅틱¹⁰⁵)이 있거나 없는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 모바일 운영 체제(OS)가 포함되어 있음
 - 문자 메시지, 이메일, 휴대전화 통화를 주고받고 원격으로 음악을 제어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따라서 CBP는 과거에도 일관되게 마사지, 조명, 난방 및 방음 신발 및 전자 모듈 및 구성품, 배터리 구성품이 포함된 신발을 제64류에 분류해 왔음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함
 - Nike Adapt BB를 사용하면 착용자가 스마트폰이나 기타 장치를 통해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 착용하고 신발처럼 사용해야 하며 추가 기능 또는 기능 중 일부 또는 다수를 활성화하기로 선택하는 경우는 착용자의 선택일 뿐이라고 판단하였음
- 블루투스 SoC는 Nike Adapt BB의 전자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모듈에 무선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신발에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무선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는 피트니스 센서 또는 자동 레이싱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전자 모듈의 주요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지 필수 기능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Nike Adapt BB와 관련하여, 농구화는 추가 구성 요소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옵션을 결합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함

105) 햅틱은 컴퓨터의 기능 가운데 촉각과 힘, 운동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기술

- 크기, 중량, 기능이 우수하며 기술적 특징을 가진 보조적 용도 사용에 비해 걷기, 달리기 및 훈련에 관련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더 큼
 -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정보에서 가치를 얻는 손목 착용형 스마트 기기와 달리 Nike Adapt BB는 실용적인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가치를 부여하여 전달되는 정보가 유용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짐
- 따라서 Nike Adapt BB는 제6404.11.9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0%임
- 고무, 플라스틱, 가죽 또는 합성 가죽으로 된 바깥쪽 밑창과 직물 소재, 테니스, 신발, 농구화, 체육화, 트레이닝화 등 12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신발로 분류됨
 - 제99류 제Ⅲ장 주20에 근거한 제9903.88.15호에 따라 중국제품은 7.5%의 추가관세가 부과됨

나. 중국의 통합 무선 헤드폰이 있는 스포츠 헬멧(제65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6506.10.6075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5월 1일, 참조번호는 N303834임

1) 물품개요

- 물품 번호 SSSLSTEALTHV1(‘스텔스, 라지’로 지칭됨)은 성인용 헬멧으로 헬멧은 단단한 외부, 부서질 수 있는 폼의 내부 층, 통합 고글 및 헬멧에 통합되거나 별도로 착용될 수 있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무선 헤드폰이 설치되어 있음
- 헬멧의 단단한 외부는 강화되지 않은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로 구성되어 있고 내벽은 EPS(expanded polystyrene)로 구성되어 있음
 - 탈부착 가능한 고글 클립이 특징이며 3가지 사이즈(소, 중, 대)로 제작됨
- 해당 헬멧은 ASTM 표준 2040(레크레이션 스노우 스포츠에 사용되는 헬멧의 표

준 사양)을 충족 또는 능가하며 특별히 설계된 무선 헤드폰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Unit 1 Inc.의 QUAD4LOCK 특허 도킹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헬멧과 헤드폰은 통합되어 'SOUNDSHIELD®'상표로 독점적으로 수입, 마케팅 및 판매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제6506호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나 제63류·제68류·제95류에서 분류하지 않은 모든 모자류를 분류함
 - 특히 안전모(예: 스포츠 활동용·군용·소방부용 헬멧·오토바이 기수용·광부용·건축인부용 헬멧)로서 보호용 패드를 붙였는지에 상관없으며, 어떤 헬멧의 경우에는 마이크로폰이나 이어폰을 붙이는 경우도 해당됨
- CBP에서는 무선 헤드폰은 제6506호에 대한 해석의 이어폰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헬멧의 외부 껍질을 구성하는 ABS 플라스틱이 강화되거나 다른 재료로 적층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였음
- 따라서 해당 헬멧은 제6506.10.6075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기타 헬멧(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중 안전 헬멧으로 강화 또는 적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운동, 레크레이션 및 스포츠 헬멧으로 분류됨

다. 중국의 우비(제66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6601.99.0000호이며 시행일은 2017년 10월 23일, 참조번호는 N291479임

1) 물품개요

- Aperella Rainwear는 우산의 기능을 하는 기자재로 사용 시에는 머리가 통과할 수 있는 잘려진 부분이 어깨 부분을 가로질러 놓임
 - 전면과 후면이 열리는 머리 위에 아치형 외부를 지지하는 경량 강철 프레임워크에 투명한 EVA 플라스틱¹⁰⁶⁾ 시트로 구성되어 있음
 - 측면은 팔뚝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로 확장되며 전면 및 후면을 열었을 때 너비는 약 27인치, 높이 20인치, 깊이 24인치임
 - 각 앞 모서리 근처에 있는 두 개의 작은 끈으로 해당 물품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음
 - 더 긴 고리형 스트랩은 물품을 접었을 때 고정할 수 있으며 접힌 상태에서는 지름이 약 15인치, 두께가 1인치인 납작한 디스크 모양이 됨

2) 결정세변 및 사유

- 해당 물품에 대해 CBP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 1-3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HS 해석에 관한 통칙 4에 따라 우산으로 분류하였음
 - HS 해석에 관한 통칙 4에서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 1-3을 적용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가장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6601.99.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8.2%임
 - 우산과 양산(지팡이 우산, 정원 우산 및 유사한 우산 포함)으로 분류됨

106) 투명성과 유연성, 접착성, 충격 강도가 우수한 소재로, 충격을 완화해 주는 운동화 밑창부터 각종 포장재, 비닐, 태양전지 시트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

라. 중국의 할로윈 날개(제67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6701.00.30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11월 30일, 참조번호는 N315957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K-2614 할로윈 날개-빨간색(Halloween Wings-RED)으로 붉은색으로 염색한 오리털과 칠면조 깃털로 구성된 날개이며 탄성이 있는 끈을 이용해 사람의 등에 착용할 예정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업체에서는 해당 물품이 제9505.90.6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마술 속임수와 유머러스한 장난감을 포함한 페스티벌, 카니발 또는 기타 엔터테인먼트 물품과 그 부품 및 액세서리 기타 물품으로 분류됨
- CBP에서는 제95류의 의상은 착용자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6701호의 품목분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음
 -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 및 사물을 묘사하지 않아 즉석 의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날개는 주로 천연 깃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6701호의 깃털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할로윈 날개는 제6701.00.3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4.7%임
 -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깃촉(quill)은 제외, 깃털 또는 솜털로 만든 제품)으로 분류됨

- 제99류 제Ⅲ장 주20에 근거한 제9903.88.03호에 따라 중국제품은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됨

13. 돌·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제68류-제70류)

가. 중국 골판지 기반 연마재의 관세 분류(제68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6805.2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18년 11월 29일, 참조번호는 N077295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플라스틱 바닥 위에 둘 수 있는 골판지 기반의 고양이 발톱 연마재로 연마재를 긁으면 발톱이 손질되며 연마 제품, 캣닙, 깃털 및 브러시는 소매 판매를 위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됨
 - 고양이를 유인하기 위해 연마재에 캣닙을 발라 수입될 예정이며 고양이 유인을 위해 칠면조 깃털 장난감도 함께 수입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업체는 골판지 기반 연마재에 대해 제4823호의 판지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음
 -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분류됨

- 고양이 털 손질용으로 설계된 이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은 고양이 발톱을 손질하는데 사용되는 골판지 바닥에 있는 연마재인 연마 용품에 의해 부여됨
 - CBP 연구소는 골판지의 상단 표면에 연마 입자(이산화규소 및 일부 산화알루미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연마재가 판지 내에서 덩어리가 아닌 고분자 수지 접착제 또는 접착용 풀을 사용하여 판지 상단에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함

- 따라서 해당 물품세트는 제6805.20.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천연 또는 인공 연마 알갱이 또는 곡물을 제공하는 섬유 재료, 종이, 판지 또는 기타 재료(또는 모양에 맞게 자르거나 꺾매거나 다른 방법으로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종이나 판지에 한정하는 것)로 분류됨

나. 중국의 고래모양 저금통(제69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6911.90.0050호이며 시행일은 2015년 1월 16일, 참조번호는 N260375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고래 보호'라는 명칭의 장식용 저금통으로 고래의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백자 세라믹이 노란색 고무 재질로 완전히 코팅되어 제작되었음
 - 고래의 머리에서 꼬리까지 약 6.7인치이며 폭 3.9인치, 높이 3.9인치로 무게는 약 1.06파운드임

- 저금통 상단에는 동전을 넣는 구멍이 있으며 저금통의 하단에는 동전을 빼낼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음

2) 결정세변 및 사유

- 해당 업체는 장식용 저금통에 대해 제6913.10.1000호로 분류할 것을 주장하였음
 - 조각상, 흉상 및 수제 꽃(각각 2.50달러 이상이며 전문 조각가가 제작하거나 전문 조각가가 제작한 원본 모델로 만든 금형에서 직접 제작)으로 분류됨

- 제6913호의 해설에서는 다음의 물품이 해당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A) 실용적 가치가 없고 단지 장식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과 다른 장식물을 지지하거나 그 장식 효과를 증진하는 효용만 있는 물품
 - (B) 식탁 용품과 그 밖의 가정용품(이러한 제품의 실용성이 그 물품의 장식적인 성격에 대하여 명백히 부수적인 것)
 - (C) 가정이나 사무실 등을 장식하는 데 사용하는 물품

- CBP는 해당 물품의 주된 역할은 동전(포함되지 않음)을 저장하는 용기로, 그 자체로는 장식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며 장식적인 성격이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결정하였음

- 따라서 해당 저금통은 제6911.90.005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5.4%임
 - 기타 가정용 물품의 자기 또는 도자기의 기타로 분류됨

다. 한국의 제빵기구(제70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7013.42.2000호 및 제7013.42.3000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12월 19일, 참조번호는 N305559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한국의 제빵기구로서 타원형의 세 가지 유리용기이며 물품번호 LLG890CLQ4에 해당됨
 - 물품번호 LLG888(세트당 2개)은 길이 약 9인치×폭 6인치×높이 3½인치, 물품번호 LLG889는 길이 약 11.33인치×폭 7½인치×높이 4.29인치이며 물품번호 LLG890은 길이 약 13½인치×폭 9인치×높이 5인치임
 - 유리 제빵기구 세 가지 제품은 투명한 유리로 구성되었음
- 물품번호 LLG888의 유리 제빵기구의 단가는 2.60달러, 물품번호 LLG889의 단가는 3.50달러, 물품번호 LLG890의 단가는 4.72달러이며 음식물을 굽고, 받치고 보관하는 데 사용됨
- 제빵기구에는 빨간색, 투명색, 구리색, 윈터그린, 수정색, 버건디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는 폴리프로필렌 잠금 뚜껑이 포함됨

2) 결정세변 및 사유

- 실험실 분석에 따르면 세 개의 유리 제빵기구는 붕규산 유리로 제작되었으며, 압축 및 강화(담금질), 절단, 새겨짐이 없음
 - 세 가지 품목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온도 범위 내에서 켈빈당 5×10^{-6} 을 초과하지 않는 선형 열팽창 계수¹⁰⁷⁾를 가지고 있음
- 폴리프로필렌 뚜껑이 있는 유리 제빵기구 제품은 있는 다른 호로 분류 가능한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진 복합 제품임

107) 온도가 상승할 때 달라지는 길이의 증가 및 감소 정도를 나타낸 값

- CBP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따라 유리 구성 요소가 품목의 본질적인 특성을 제공한다고 결정하였음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명시함

- 따라서 LLG888 제빵용기는 제7013.42.2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2.5%임
 - 테이블(음주잔 제외) 또는 주방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유리제품, 유리 세라믹 이외의 것으로 섭씨 0도에서 섭씨 300도의 온도 범위 내에서 켈빈당 5×10^{-6} 을 초과하지 않는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 기타 유리 중 각각 3달러 이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됨

- LLG889 및 LLG890 제빵용기는 제7013.42.3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1.3%임
 - 유리세라믹스 이외의 식탁(술잔 제외) 또는 주방 용도로 사용되는 종류의 유리제품으로 0도에서 300도의 온도 범위 내에서 켈빈당 5×10^{-6} 을 초과하지 않는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 기타 유리 중 3달러를 초과하며 각각 5달러 이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됨

14.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제71류)

가. 중국의 글로우 팔찌(제71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7117.90.90.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3월 25일, 참조번호는 N315470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파티 팩 글로우 팔찌(Party Pack Glow Bracelets)로 40개가 튜브 모양 판지에 포장되어 수입됨
 - 각 튜브 모양의 판지는 길이가 8인치인 지름 3.16인치 플라스틱 팔찌 튜브 4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손목 주위에 팔찌 끝을 함께 고정하는 플라스틱 커넥터 40개와 함께 포장되어 있음
- 튜브에는 화학 혼합물이 들어 있어 꺾이거나 구부러지거나 흔들리면 팔찌가 일시적으로 빛나는 효과가 있으며 팔찌들은 한 다스에 20센트 이상의 가치로 판매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업체는 제7117.90.7500호에서 글로우 팔찌의 분류를 제안하였음
 - 모조 신변장식용품의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해당됨
- CBP에서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의 해석VIII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재료 또는 구성 요소의 특성, 부피, 수량, 중량 또는 가치에 따라, 또는 상품 사용과 관련된 구성 재료의 역할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명시함
- 글로우 팔찌는 화학 혼합물(팔찌가 빛나게 함)과 플라스틱의 복합 제품으로 이 경우 주요 시각적 매력을 제공하는 것은 화학적 혼합물이므로 화학 혼합물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함

- 따라서 해당 글로우 팔찌는 제7117.90.9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1%임
 - 모조 신변장식용품 기타 중 12개 또는 부품당 20센트 이상 가치의 기타 물품에 해당됨
 - 제99류 제Ⅲ장 주20에 근거한 제9903.88.15호에 따라 중국제품은 7.5%의 추가관세가 부과됨

15. 비금속과 그 제품(제72류-제83류)

가. 일본의 스크린(제72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7205.21.0000호이며 시행일은 2015년 8월 18일, 참조번호는 N266810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프로젝터 화면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재사용 가능한 건식 표면을 가진 자기 시트로 물품은 Magwall Screen으로 명명됨
- 폴리에스터와 실크의 텍스타일 패브릭으로 구성된 3개의 층으로 섬유층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제품을 벽이나 기타 표면에 접착할 수 있음
- 90% 망간 아연(Mn-Zn) 페라이트와 10% 염소화 폴리에틸렌으로 구성된 철 분말이 포함된 플라스틱 시트로 제품이 자석을 끌거나 자성 표면에 부착될 수 있음
 - 또한 재사용 가능한 건식 필기 표면 역할을 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기반 필름이 부착되어 있음

- Magwall Screen은 롤로 가져오고 크기에 맞게 자를 수 있어 제출된 절단 샘플을 통해 제품이 유연한 플라스틱 표면과 천으로 뒤덮인 재료임을 나타냄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업체는 제9610.00.0000호에서 스크린의 분류를 제안하였음
 - 프레임 여부에 관계없이 필기 또는 그림 표면이 있는 슬레이트 및 보드로 분류됨
- 그러나 CBP에서는 해당 물품은 롤(4피트×16피트) 형태로 수입되며 신축성이 있고 크기에 맞게 쉽게 절단하여 프로젝터 스크린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슬레이트나 보드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9610호에서 상품을 적절하게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슬레이트에 대한 사전 정의는 그것이 쓰기에 사용되는 매끄러운 평평한 층으로 쉽게 분할되는 일종의 단단한 암석임
 - 보드는 칠판과 같은 정보를 표시하도록 설계된 단단한 재료의 평평한 조각으로 정의됨
 - 제39류의 판금으로 분류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도 고려되었으나 해당 유형의 플라스틱 및 섬유 조합은 제39류에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함
- CBP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 3(a)에 따라 세 가지 층이 본질적 특성의 문제에 대해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대상 제품은 복합재로 HS 해석에 관한 통칙 3(a), (b) 또는 (c)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나 HS 해석에 관한 통칙 3(a) 또는 3(b)를 참조하여 상품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 HS 해석에 관한 통칙 3(c)에 따라 맨 마지막에 있는 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해당 Magwall 스크린은 제7205.21.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선철(pig iron), 슈피겔라이젠(spiegeleisen), 철 또는 강철의 분말 중 합금강으로 분류됨

나. 한국의 강관(제73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7306.30.5055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6월 3일, 참조번호는 N304307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Honda CR-V 및 Honda Civic의 자동차 서스펜션¹⁰⁸⁾ 부품인 트레일링 암¹⁰⁹⁾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강관임
 - 냉간 압연 용접 비합금 강관은 인산염 코팅되고 양쪽 끝이 모따기¹¹⁰⁾되어 있으며 외경이 34mm이고 벽 두께가 3.2mm임
 - Honda Civic용 파이프의 길이는 180mm이고 Honda CR-V용 파이프의 길이는 192mm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업체에서는 강관에 대해 제8708호의 분류를 제안하였음
 -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으로 분류됨
- CBP는 미국의 추가 주1(c) 및 HS 해석에 관한 통칙 3(a)에 따라 제7306호에 분류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라고 판단함

108) 자동차의 구조장치로서 노면의 충격이 차체나 탑승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

109) 주행 시 현가장치에 발생하는 비틀림을 흡수하여 복원력을 발생시킴

110) 공작물의 모서리 또는 구석을 비스듬하게 깎는 것

- 미국의 추가 주1(c)에 따르면 상품의 주 용도 또는 유일한 용도가 어떤 물품의 부품인 경우 그 물품의 부품을 위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한 조항은 해당 부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특정 조항보다 우선할 수 없음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a)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명시함
- 따라서 해당 강관은 제7306.30.5055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과 중공¹¹¹⁾ 프로파일(profile)로 철 또는 강철, 기타, 용접된, 원형 단면의, 철 또는 비합금 강철 중 1.65mm 이상의 두께를 가진 것의 기타로 분류됨
 - 철강의 경우 제99류 제Ⅲ장 주20에 근거한 제9903.80.01호에 따라 25%, 알루미늄의 경우 제9903.85.01호에 따라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거나 할당의 대상임

다. 대만의 스트레이너가 있는 배수관(제74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7419.99.5010호이며 시행일은 2015년 8월 31일, 참조번호는 N267667임

1) 물품개요

- 스트레이너가 있는 배수관은 부품 번호 42393 및 42394로 식별됨
- 부품 번호 42393은 크롬 도금 황동 조절식 배수 배럴, 정사각형 크롬 도금 황동 스트레이너, 4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칼라 볼트, ABS 가역 클램핑(reversible clamping) 링 및 배수 베이스로 구성됨

111) 속이 빈 것

- 부품 번호 42394는 크롬 도금 황동 조절식 배수 배럴, 정사각형 크롬 도금 황동 스트레이너, 4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칼라 볼트, PVC 가역 클램핑 링 및 배수 베이스로 구성됨
 - 업체는 해당 배수관이 완전 제조 및 조립된 수입품이라고 주장했으며 CBP의 검토 결과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여 수입됨
- 각 배수관은 완전히 제조 및 조립된 단일 제품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부품 번호 42393 및 42394는 복합 제품으로 간주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업체는 제7418호에 따라 스트레너가 있는 배수관에 대한 분류를 제안하였음
-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으로 분류됨
- CBP에서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 및 제15부의 주7에 따라 제7419호로 분류할 것을 결정함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따라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3(a)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함
 - 제15부의 주7에서는 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한 비금속으로 만든 물품은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배수구의 금속 중 무게가 우세한 것은 황동¹¹²⁾임

112) 구리에 아연을 첨가하여 만든 합금

- 따라서 문제의 배수구는 구리 및 구리 제품을 제공하는 제74류에 분류가 가능하나 제7418호에서 규정하는 품목에는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스트레이너가 있는 배수관은 제7419.99.501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기타 구리 제품 중 달리 지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황동 배관 제품으로 분류됨

라. 스위스의 선재/막대(제75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7508.90.5000호이며 시행일은 2018년 8월 24일, 참조번호는 N299516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합금강 선재¹¹³⁾/막대로 TIG 와이어 지름이 약 1/8인치, 길이가 약 3인치이며 봉은 용접 개질기¹¹⁴⁾ 튜브와 같은 TIG 용접¹¹⁵⁾ 응용 분야에서 용접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내열성 주강 등급(heat resistant cast steel grades)에 일치 또는 유사한 접합 및 표면 작업용 물품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CBP는 제15부 주5(a)에 따라 기타 니켈 제품을 제공하는 제7508호로 분류할 것을 결정함
 - 대상 합금 선재/막대에는 약 45%의 니켈과 35%의 크롬이 포함되어 있음
 - 제15부 주 5(a)에서는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113) 압연강재 중에서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 단면이 둥글고 코일 모양으로 감겨 있음

114) 열이나 촉매의 작용에 의하여 탄화수소의 구조를 변화시켜 가솔린의 품질을 높이는 조작

115) 이너트가스 아크용접의 한 가지

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음

- 선재/막대에서 무게가 가장 큰 금속은 니켈로, 겉보기에는 둥글지만 평평한 부분이 있어 전체 길이를 따라 균일한 십자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물품은 기타 니켈 제품을 제공하는 제7508호로 분류할 수 있음

□ 따라서 선재/막대는 제7508.90.5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3%임

- 기타 니켈 제품으로 분류됨

마. 캐나다의 디퓨저(제76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7616.99.519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12월 11일, 참조번호는 N316060임

1) 물품개요

□ ULPD(Ultra Laminar Flow Diffuser, 이하 ULPD)는 상업용 천장 공기 분배 시스템에 사용하며 각 모듈 장치 내부에 발광 다이오드(LED) 스트립을 통합하고 HVAC(난방, 환기 및 공조) 디퓨저와 천장 조명 기구를 결합하는 것으로 4가지 타입이 있음

- ULFD-B는 플라스틱 전면 덮개, 통합 LED 스트립 및 전기 배선용 저전압 단자대가 있는 알루미늄 구조로 되어 있음
- ULFD-FTR은 교체 가능한 고효율 미립자 공기(HEPA) 필터 옵션이 있음
- ULFD-URDC는 LED 터미널 블록(LED 드라이버 포함) 옵션이 있음
- LFD-H는 LED 조명이 없는 HEPA 필터 옵션이 있음(HEPA 필터가 있는 HVAC 디퓨저만 해당)
- ULPD는 수술실, 실험실, 약국, 제약 제조 시설, 청정실 및 기타 중요한 환경 공간을 포함하여 실내 공기의 혼합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건물 내

상업용 천장 공기 분배 시스템에 사용됨

- 통합 LED 조명은 각 디퓨저 모듈 내부에 LED 조명을 통합하여 일반적인 층류 디퓨저를 병원급 LED 조명 기구와 층류 디퓨저의 조합으로 변환함
 - LED 조명은 퀵 커넥터가 있는 여러 IP67등급 LED 스트립으로 구성되며 ULFD-B 디퓨저는 공장에서 배선 및 설치된 상부 장착 저전압(10V) 단자대 인클로저와 함께 수입됨
 - 추가 공기 정화/여과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HEPA 필터를 모델에 추가할 수 있으며 설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LED 드라이버를 장치에 직접 장착할 수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CBP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를 적용하여 ULPD를 제7616호로 분류할 것을 결정하였음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대한 설명 VIII에서는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재료 또는 구성 요소의 특성, 부피, 수량, 중량 또는 가치, 또는 상품 사용과 관련된 구성 재료의 역할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함
 - 디퓨저, LED 스트립, 단자대, HEPA 필터 또는 LED 드라이버가 있는 LED 단자대가 해당 ULPD에 필수적인 특성을 부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 디퓨저가 실내로 일정한 공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디퓨저가 ULPD에 필수적인 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CBP의 의견이었음
 - 따라서 알루미늄 시공으로 만들어진 디퓨저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따라 제7616호에 따른 알루미늄의 기타 물품으로 분류됨
- 따라서 해당 물품 중 ULFD-B 및 ULFD-URDC는 제7616.99.5190호로 분류되

며 관세율은 2.5%임

- 알루미늄의 기타로 분류됨
- 단 ULFD-FTR, 선택적 교체 가능한 HEPA 필터 및 LFD-H의 경우 HEPA 필터의 재료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백분율과 HEPA 필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필요하여 세번 결정을 유보함

바. 한국의 부싱 슬리브(제77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7616.99.519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12월 11일, 참조번호는 N316060임

1) 물품개요

- 한국의 부싱¹¹⁶⁾용 내측 및 외측 슬리브¹¹⁷⁾로 간주되는 제품으로 알루미늄 부싱 슬리브는 다양한 크기로 생산되며, 벽 두께 1.2mm~10mm의 외부 직경 10mm~39mm임
 - 보다 더 단단하도록 담금질 및 담금질된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튜브로 제작함
 - 관을 잘라 부싱 튜브를 만든 다음 가장자리에 모따기¹¹⁸⁾하여 거친 부분과 흠터를 제거함
 - 모따기를 통해 제품을 부싱 슬리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만들

2) 결정세번 및 사유

- 내부 슬리브와 외부 슬리브가 수입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진동 방지 부싱의 일부로 사용됨

116) 절연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통 모양의 얇은 절연체

117) 회전축 등을 둘러싸도록 축외주에 끼워서 사용되는 비교적 긴 통형의 부품

118) 공작물의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구석을 비스듬하게 깎는 것

- 따라서 내측 및 외측 부싱 슬리브는 제7616.99.519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5%임
 - 알루미늄 기타의 품목으로 분류됨
 - 한국의 제품 중 제7616.99.5190호에 따라 분류 가능한 품목은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한미 FTA(KORUS)에 따라 관세가 면제됨

사. 한국의 납괴(제78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7801.10.0000호, 제7801.99.9030호 및 제7801.99.9050호이며 시행일은 2017년 4월 26일, 참조번호는 N284837임
 - 정제된 납이 아니며 납 함량이 중량 기준으로 99%미만으로 가공되지 않은 납 기타 납 합금 납잉곳은 제7801.99.903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납 함량 가치에 대해 2.5%로 부과됨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미국 및 기타 여러 국가에서 공급되는 납, 배터리 스크랩 및 납 스크랩으로 만든 재용해 정제된 납 잉곳¹¹⁹⁾임
 - 정제된 납은 제78류, 소호 주1에서 중량 기준으로 99.9% 이상의 납을 함유하는 금속으로 정의됨
 - 단 다른 원소의 중량 기준 함량은 지정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결정세번 및 사유

- 정제된 납, 가공되지 않은 납 잉곳은 제7801.10.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납 함량의 가치에 대해 2.5%임

119) 금속 또는 합금을 한번 녹인 다음 주형에 흘려 넣어 굳힌 것

- 정제된 납이 아니며 납 함량이 중량 기준으로 99% 미만으로 가공되지 않은 납 기타 납 합금 납 잉곳은 제7801.99.903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납 함량 가치에 대해 2.5%로 부과됨
- 정제된 납이 아니며 납 함량이 중량 기준으로 99% 이상으로 가공되지 않은 납 기타 납 합금 납 잉곳은 제7801.99.905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납 함량의 가치에 대해 2.5%로 부과됨

아. 중국의 부착물이 있는 키링(제79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7907.00.6000호이며 시행일은 2015년 8월 10일, 참고번호는 N267088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폴리우레탄 하트 모양의 부착물이 있는 금속 열쇠고리(항목 번호 BG 2JCH190083-N1)로 강철 분할 와이어 링, 2개의 작은 철 연결 링, 2개의 장식용 아연 부착물 및 하트 모양의 폴리우레탄 부착물로 구성됨
 - 각 부착물은 키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분할 와이어 링에 연결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장식용 부착물이 있는 열쇠고리는 강철 분할 와이어 링, 철제 연결 링, 아연 부착물 및 하트 모양의 폴리우레탄 부착물로 구성된 복합 제품임
- CBP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따라 분할 와이어 링의 기능은 키를 고정하는 것이고 커넥터 링은 부착물을 고정하는 것이므로 금속 성분이 복합 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고 결정함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대한 설명 VIII에서는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재료 또는 구성 요소의 특성 부피, 수량, 중량 또는 가치, 또는 상품 사용과 관련된 구성 재료의 역할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함
- 강철, 철, 아연 또는 폴리우레탄 구성 요소가 부착물과 함께 열쇠고리에 필수적인 특성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제15부의 주 7에서는 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한 비금속으로 만든 물품은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키링에서 중량이 가장 큰 금속은 아연이기 때문에 제7907호로 분류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키링은 제7907.00.6000호의 기타 아연물품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3%임

자. 중국의 향수병(제80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8007.00.5000호이며 시행일은 2004년 7월 9일, 참조번호는 K87534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페이즐리 오스트리아 크리스탈 향수병(Paisley Austrian Crystal Perfume Bottle)으로 병은 컷 아웃¹²⁰⁾ 페이즐리 디자인의 에나멜 백랍이며 크리스탈로 장식되어 있음
 - 병의 몸통은 높이가 6.5cm이고 가장 넓은 부분이 4cm임
 - 병 안에는 길이 3cm, 지름 1cm 정도의 유리병이 있으며 길이가 3.5cm인 금속 마개로 덮여 있음

120) 오려내기 세공

- 제품 자체는 중국산이지만 소매 패키지에는 ‘Austrian Crystal’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Made in China’ 표시는 작은 글씨로 병 밑면에 있어 적절한 원산지 표기가 필요함

2) 결정세번 및 사유

- 향수를 담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유리병과 비교하여, 금속 부분의 압도적인 무게, 부피와 특징이 해당 물건의 본질적인 특징을 부여함
- 따라서 해당 향수병은 제8007.00.5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8%임
 -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의 기타로 분류됨

차. X선 보호 제품(제81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8110.1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14년 5월 1일, 참조번호는 N252125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인 ‘Xenolite’는 X선 보호 재료로 시트 및/또는 롤로서 엑스레이 앞치마와 같은 완제품으로 제조되어 병원, 진료소 등에서 의사, 방사선 전문의 및 기술자와 같은 의료 인력에게 이온화 X선 방사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음
- 안티몬, 납, 텅스텐, 비스무트 및 황산바륨과 같은 금속/원소로 구성되어 이러한 금속 또는 원소가 방사선을 보호하고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안티몬 분말은 무게와 비용 면에서 주된 구성 요소임

2) 결정세변 및 사유

- 해당 업체는 X선 보호 제품이 제8110호에서 안티몬 및 그 물품으로 분류될 것을 고려하지만 산업용 의류를 제공하는 제6211.33.10호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음
- 해당 내용은 1992년 6월 23일 HQ951225의 결정에서 다루었던 내용으로 HQ 951225에서는 방사선 방호복은 여러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 상품이며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따라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안티몬 분말에 의해 부여된다고 결정하였음
 - 핵심 물질의 납과 안티몬 분말에 의해 제공되는 방사선 보호가 없으면 제품은 보호복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방사선 방호복을 제8110호에서 안티몬 및 그 제품으로 분류하였음
- CBP는 제6211.33.10호의 분류와 관련하여 의복, 앞치마 및 갑상선 덮개의 필수 특성이 금속 구성 요소에 의해 부여되는 경우 품목은 섬유 및 의류 품목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제11부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함
- 따라서 해당 X선 보호 제품은 제8110.10.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폐기물과 고철, 가공되지 않은 안티몬, 안티몬 파우더를 포함한 안티몬과 그 물품으로 분류됨

카. 중국의 멀티 툴(제82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8211.93.0035호이며 시행일은 2021년 5월 24일, 참조번호는 N300394임

1) 물품개요

- 물품은 술집, 식당, 테일게이트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멀티 툴로 톱니 모양의 칼날, 코르크따개, 리프터(lifter), 디포일러(defoiler), 레몬 제스터(zester), 병따개 등 6가지 도구를 포함하고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1993년 2월 24일 HQ 953015에서는 이와 유사한 다용도 도구가 고정 칼이 아닌 기타 칼에 속한다고 판결했으며 해당 판결에는 제8211호의 해설(3)이 인용되었음
 - 제8211호의 해설(3)에서는 비금속·목재·뿔·플라스틱 등의 자루를 부착한 여러 가지 종류의 접는 칼에 대해 다음의 도구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포켓용 칼·펜나이프·잭나이프·캠퍼(campers)용 나이프와 스포츠나이프(이러한 칼들은 한 개나 두 개 이상의 날을 가지고 있거나 보조적인 코르크스크루(corkscrews)¹²¹⁾·스파이크·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가위·캔오프너 등을 갖추고 있음), 접는 식의 포켓형의 전지·접지 등에 사용하는 칼
 - HS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라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본 호의 해설에서 다용도 도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구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함
- 따라서 해당 멀티툴은 제8211.93.0035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6개 도구 각각에 3센트+5.4%임
 - 톱니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단 날이 있는 칼(가지치기 칼을 포함한다)(제8208호의 칼 제외)과 칼날과 그 기타 비금속 부품의 기타 고정 칼날 외의 제품(펜 칼, 포켓 칼 및 기타 접는 칼날이 있는 칼 제외)으로 분류됨

121) 포도주병 따위의 코르크 마개를 뽑기 위한 도구

타. 한국의 자동차 브래킷 및 마운트(제83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8302.30.3060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3월 5일, 참조 번호는 N302657임

1) 물품개요

- 첫 번째 물품은 엔진 마운트, 물품명 DP 파워트레인¹²²⁾ 마운트(부품 번호: 5212 2612AD)로 마운트는 천연 고무 절연체(natural rubber insulator), 주철 내부 슬리브 및 브래킷, 강철 방열판 및 알루미늄 리벳으로 구성됨
 - 해당 마운트는 엔진의 오른쪽과 차체 사이에 연결되어 엔진을 고정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마운트는 또한 엔진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방지하는 기능을 함
- 두 번째 물품은 변속기 마운트, 물품명 LH TRANS MTG(부품 번호: 68253033AB)로 마운트는 주요 고무 요소, 강철 상부 덮개 및 알루미늄 중간 브래킷(aluminum interim bracket)으로 구성됨
 - 해당 마운트는 변속기의 왼쪽과 차량의 차체 사이에 연결되어 있으며 엔진과 변속기를 엔진 마운트와 함께 차체에 고정하며 또한 파워트레인의 진동과 소음을 방지하는 기능을 함
- 세 번째 물품은 피벗 브래킷 어셈블리(pivot bracket assembly, 이하 피벗 브래킷 어셈블리)로 식별되며 물품명 Pivot Bracket Assy(부품 번호: 68259148AB)로 마운트는 주철 피벗 브래킷과 고무 및 알루미늄 소형 부시(bush)로 구성됨
 - 해당 피벗 브래킷은 엔진과 변속기를 차체에 고정하고 파워트레인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방지하는 기능을 함

122) 엔진의 발생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물

- 네 번째 물품은 상단 마운트로 식별되며 물품명 FRT 상단 마운트(부품 번호: 682 99201AC)로 마운트는 천연 고무 본체, 강철 상부 및 하부 워셔(washer), 강철 너트 및 플라스틱 상부 마운트 베어링으로 구성됨
 - 마운트가 차체를 현가장치(suspension system)¹²³에 연결하고 이 마운트는 또한 노면의 충격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을 방지하는 기능을 함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물품의 세 번의 결정을 위해 HS 해석에 관한 통칙 1, 제17부의 해설 주2(b), 제17부의 해설 III(부분품과 부속품)(A)(2), 제15부의 해설 주 2를 인용하였음
 - HS 해석에 관한 통칙 1에서는 호 및 부, 류의 주에 의한 우선원칙으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부의 해설을 살펴보았음
 - 제17부의 해설 주2(b)에서는 제15부의 해설 주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17부의 해설 III(A)(2) 및 주2에 따라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한다고 명시함
 - 제15부의 해설 주2에서 범용성 부분품은 차량 코치 작업용 부속품 또는 장착장치(예: 장식용 구슬 스트립, 힌지, 도어 핸들, 그립 바, 발 받침대, 창 열림 장치), 번호판, 국적 번호판(비금속 제품은 제83류에 해당하고 플라스틱 유사 제품은 제39류에 해당) 등이 해당됨
- HQ959052의 결정에서, 장착의 정의에 대해 논의했으나 장착이라는 용어는 미국 품목분류 및 해설서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통 및 상업적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 일반적으로 두 개의 다른 부품을 함께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됨

123) 자동차의 구조장치로서 노면의 충격이 차체나 탑승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

- 엔진 마운트, 변속기 마운트, 피벗 브래킷 어셈블리 및 탑 마운트는 구성 요소를 차량 본체에 결합하는 데 사용됨
 - 마운팅(마운트)이라는 용어는 장치가 작동하는 하부 구조 또는 부품 또는 액세서리로 정의됨

- 결과적으로 해당 브래킷 어셈블리 및 마운트는 제8302호로 분류되며 따라서 제 17부의 해설 주2(b)에 의해 자동차 부품으로서 제8708호의 분류에서 제외됨
 - 자동차 브래킷과 마운트는 차량 프레임에 엔진, 변속기 또는 현가장치를 고정한다는 점에서 위에서 정의한 것처럼 차체 제조 작업에 적합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인 엔진 마운트, 변속기 마운트, 피벗 브래킷 어셈블리, 상단 마운트는 제8302.30.306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임

16. 기계류·전기기기과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제84류-제85류)

가. 한국의 세탁기 부품(제84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8450.90.60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3월 2일, 참조번호는 N309712임

1) 물품개요

- 세탁기 스파이더인 물품명 MHW62441201은 금속 축을 중심으로 세 개의 알루미늄 날개가 조립되어 있는 형태임

- 수입된 후 스파이더는 세탁물을 보관하는 세탁기 내부 통에 볼트로 고정되어 내부 통과 스파이더를 연결함
 - 내부 통의 스파이더는 물을 위한 공간인 외부 튜브와 결합됨
 - 스파이더 축의 끝이 외부 튜브의 구멍을 통해 돌출되어 있으며 모터와 붙어 있음
 - 모터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내부 통을 통해 축으로 전원을 전달함
 - 세탁물을 담는 내부 통은 물과 세제를 혼합하여 헹굼이나 탈수를 이행함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업체는 스파이더에 대해 제8483.10.5000호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음
 - 제8483호는 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하는 전 동축,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하는 그 밖의 변속기, 플라이휠(flywheel)과 폴리블록을 포함하는 폴리(pulley), 클러치(clutch)와 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하는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으로 분류됨
- 그러나 CBP에서는 스파이더가 제848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내부와 외부의 통을 연결하고 자극을 전달하는 등의 내용이 제848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제16부 주2(b)에 따라 세탁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제작된 특별 부품이라고 판단하였음
 - 제16부 주2(b)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스파이더는 제8450.90.6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6%임

- 가정용 또는 세탁용 세탁기(세탁 및 건조가 가능한 기계 포함) 부속의 기타로 분류됨

나. 한국의 전방표시장치(제85류)-1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8531.80.9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12월 3일, 참조번호는 H304224임

1) 물품개요

- 전방표시장치(Head Up Display, 이하 HUD)는 차량 속도, 안전 경고, 연소방향(turn-by-burn) 및 오디오 설정과 같은 정보를 표시하도록 설계되었음
 - 전방표시장치는 자동차 대시보드, 스티어링 휠(steering wheel) 뒤에 설치되도록 설계되었으며, 1.8인치 박막트랜지스터 액정 표시장치(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이하 TFT LCD) 회로 어셈블리(circuit assembly), 평면 거울 및 오목 거울로 구성됨
 - 회로 어셈블리는 그래픽 컨트롤러 집적 회로(integrated circuit, IC)와 마이크로프로세서 장치(microprocessor unit, 이하 MPU)로 구성됨
 - IC와 MPU는 자동차의 통제부분의 네트워크(Controller Area Network, 이하 CAN)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해당 데이터를 TFT LCD 화면에 표시되는 그래픽으로 처리함
 - Chassis CAN은 속도, 차선 이탈 경고, 연료 부족 경고 등 차량 작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며 Multi Media CAN은 내비게이션 및 라디오와 같은 차량의 시청각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
- TFT LCD 화면에 표시되는 이미지는 먼저 평면 거울에 반사되고, 이어서 오목 거울에 의해 확대되어 차량 앞 유리에 반사되며 앞 유리에 반사된 이미지는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음

2) 결정세변 및 사유

- 해당 업체는 제9008호의 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전방표시장치는 단순히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뿐 아니라 투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으로서 제 9008호의 프로젝터와는 다르다고 판단함
 - 제9008호에서 분류하는 프로젝터는 거울이나 렌즈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투사하고 확대하는 것으로서 전방표시장치의 평면 거울과 오목 거울이 이 기능을 수행하여 TFT LCD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를 자동차 앞유리에 투사하고 확대함
 - 그러나 거울이 전방표시장치의 유일한 구성 요소는 아니며 전방표시장치는 해당 소호에서 고려되는 프로젝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전방표시장치의 그래픽 컨트롤러 IC, MPU 및 TFT LCD 화면과 같은 구성 요소는 2개의 CAN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여 궁극적으로 전방표시장치 내의 거울에 의해 투영되고 확대되는 이미지를 생성함

- 그러나 CBP는 제8531호에서 설계 및/또는 주요 용도에 따라 신호용 기기로 LCD를 분류했음
 - HUD는 운전자가 전방 도로에서 눈을 돌릴 필요가 없는 위치에서 운전자에게 제한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음
 - TFT LCD에는 영구적으로 식각된 아이콘이나 분할된(segment) 스타일의 문자가 없지만 화면에는 이와 유사하게 단순화된 아이콘과 숫자가 사용되며 항상 화면 상의 같은 위치에 나타나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함

- 턴 바이 턴¹²⁴⁾ 지시는 방향 화살표를 사용하여 다음 방향을 나타내고 숫자는 해당 방향까지의 거리를 표시함
 - 마찬가지로 차선이탈 경고, 사각지대 경고 등의 안전 경고도 간단한 아이콘으로

124) 애플은 지도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단계 진화한 내비게이션으로 SK텔레콤의 'T맵'처럼 익명의 통신원들로부터 수집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음성이나 시각적 지시로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방향을 안내하는 방식을 의미함

표시되며 디지털 속도계는 이미지 중앙에서 이동 속도를 표시함

- 따라서 HUD는 운전자가 LCD 자체가 아니라 전방표시장치 부품의 거울에 의해 반사되는 TFT LCD의 투영을 보는 표시기 패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호 장치 제8531.80.9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장치 이외의 전자 음향 또는 시각 신호 장치(예: 벨, 사이렌, 표시기 패널, 도난 또는 화재 경보기)의 기타 장치로 분류됨

다. 중국의 전자 웨어러블 피트니스 트래커(제85류)-2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8517.62.0090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3월 4일, 참조 번호는 N302738임

1) 물품개요

- 물품명 Garmin Forerunner® 645는 웨어러블 전자 피트니스 트래커로 양방향 개방형 무선 블루투스(Bluetooth, 이하 블루투스) 기술을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컴퓨터와 결합한 다기능 전자 웨어러블 장치임
-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목적은 장기 활동 데이터 및 통계를 저장 및 표시하고, 사용자를 소셜 커뮤니티에 연결하고, Forerunner® 645 사용자에게 건강 관련 부가가치 기능을 제공하는 것임
- Forerunner® 645는 개인의 손목에 착용한 후 개인 피트니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페어링¹²⁵⁾되고 적절하게 구성되기 전까지는 기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기능은 장치의 사용 및 작동에 필수적임
- 무선 송수신기를 통해 Forerunner® 645는 실행 가능한 웨어러블 앱을 사용하

125) 블루투스 기기를 서로 연결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과정

여 데이터를 표시, 조작 및 저장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 모바일 장치와 무선으로 통신함

- 지속적인 동기화를 통해 모든 제품 기능과 사회적 네트워킹 연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음

□ 무선 연결을 사용하는 장치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사용자가 NFC 기능¹²⁶⁾을 통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Garmin Pay를 통한 비접촉식 결제 솔루션
- 다운로드 가능한 시계 모드, 데이터 필드, 위젯, 운동, 코스 및 앱
- 날씨 업데이트, 음악 컨트롤, 소셜 미디어 업데이트
- Garmin Connect Mobile-연결된 장치의 모바일 어플에 활동을 자동으로 송신
- 스마트 블루투스 알림(통화, 메시지 등)

2) 결정세변 및 사유

□ 따라서 해당 Garmin Forerunner® 645 웨어러블 전자 피트니스 트래커는 제 8517.62.009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기타 무선 네트워크용 전화기를 포함한 전화기 중 제 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를 표제로 하는 송신 또는 수신 장치 이외의 유무선 네트워크(지역 또는 광역 네트워크 등)에서의 통신을 위한 장치를 포함하여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의 전송 또는 수신을 위한 기타 장치, 그 일부로써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로컬 또는 광역 네트워크 등)에서의 통신을 위한 장치를 포함하여 음성, 이미지 또는 기타 데이터의 전송 또는 수신을 위한 기타 장치로 분류됨

126) NFC란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로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을 의미하며, NFC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기기에 접촉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블루투스 페어링이 됨

라. 중국의 가상 현실 고글(제85류)-3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8528.52.0000호이며 시행일은 2017년 9월 20일, 참조번호는 N289518 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한 쌍의 1920×1080 HD 화면, 헤드 트래킹 기능, 사진 및 비디오 캡처의 직접 제어를 통합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하 VR) 고글로 구성된 복합 기계인 모델 G1S인 DJI Mavic Goggles임
 - 해당 고글은 카메라가 있는 DJI 드론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드론 카메라의 비디오를 내장된 2개의 5인치 모니터에 표시할 수 있음
 - 원격 인물 보기라고도 알려진 1인칭 시점(a first person view, FPV)의 비디오를 제공함
 - 운전자 또는 조종사의 관점에서 무인 항공기 또는 무인 항공기의 카메라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DJI 고글에는 마이크로 USB 포트, 오디오 포트, HDMI 포트 및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micro SD card slot)이 있으며 HDMI 포트를 통해 해당 고글을 직접 연결할 수 있으며 제8471호의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음
 - 수입 당시 대상 DJI 고글은 헤드밴드, 마이크로 USB 케이블, HDMI 케이블, 와이어 클립, 청소용 천, 충전기와 같은 액세서리와 함께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되어 있었음

2) 결정세변 및 사유

- 해당 업체에서는 VR 고글이 제8543.70.9960호에 해당하는 다른 곳에 지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개별 기능을 가진 기타 전기 기계 및 장치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CBP에서는 고글이 복합 기기로 분류된다고 판단함

- 업체는 또한 텔레비전 수신 장치를 포함하지 않는 모니터와 프로젝터를 제공하는 제8528.59.1000호의 분류를 제안하였으나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인 모니터가 아니므로 해당 분류 또한 적용할 수 없음
 - 텔레비전용 수신 장치(라디오 방송 수신기 또는 음성 또는 비디오 기록 또는 재생 장치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기타 모니터 중 미완성된 것으로 분류됨

- CBP에서는 VR 고글은 또한 운전자 또는 조종사의 관점에서 무인 항공기 또는 무인 항공기의 카메라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모니터가 이 복합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해당 VR 고글은 제8528.52.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텔레비전 수신 장치를 포함하지 않는 모니터 및 프로젝터로 텔레비전용 수신 장치(라디오 방송 수신기 또는 음성 또는 비디오 녹음 또는 재생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 기타 모니터 중 제8471호의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에 직접 연결할 수 있고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분류됨

17.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제86류-제89류)

가. 한국의 철도 차체(제86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8607.99.1000호이며 시행일은 2009년 8월 5일, 참조번호는 N068292임

1) 물품개요

- 해당 두 물품은 철도에서 사용될 차체로 연결되었을 시 두 차 모두 자체적으로 추진되지 않음
 - 차종은 승용차 및 트레일러로 모두 승객을 태우는 형태로 설계되었음
 - 완성된 내부, 바퀴, 철도의 무개화차(trucks) 없이 외부 차체로 수입될 예정임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두 차량은 제8607.99.1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8%임
 - 철도 부품으로서 제동 조절기를 제외하고, 제8605호 또는 제8606호의 차량을 위한 것으로 분류됨
 - 제8605호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 제외),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 및 제8604호의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 제외)에 해당되며 제8606호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 제외)에 해당됨

나. 한국의 자동차 스페이서(제87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8708.99.818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11월 5일, 참조번호는 N315470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승용차에 사용되는 스페이서(spacer, 이하 스페이서)로 폴리우레탄과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폼 몰딩(foam molding)으로, 특정 모양으로 몰딩되었으며 170×240×70mm의 크기임
- 스페이서는 차량 엔진룸에 위치한 엔진의 실린더 블록에 장착되어 차체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고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짐

2) 결정세변 및 사유

- 해당 업체는 제8708.29호에서 스페이서를 차체 부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CBP에서는 제8708호의 분류는 동의하였으나 소호 수준의 분류에 동의하지 않았음
 - 제8708.29호는 차체(운전실 포함)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 스페이서는 호 및 소호에 구체적으로 명명되지 않았으며 제8708호의 차체 일부에 해당하는 동종물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 미국은 동종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동종(ejusdem generis, of the same kind)은 상품이 해당 호에 부여되는 본질적인 특정을 갖는 것을 의미함
 - 제8708호의 해설에서는 차체 일부를 바닥 판, 측면, 전면 또는 후면 패널, 트렁크 립, 가열 저항기 및 전기 커넥터가 장착된 창문, 창틀, 러닝보드, 날개(fender), 진흙가드, 대시보드, 외부 수하물 선반, 쉐(visors),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사용하는 무전기 난방 및 성에 제거 장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에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설계된 안전벨트, 바닥 매트(섬유 소재 또는 경화되지 않은 가황 고무 제외)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 스페이서는 동종(ejusdem generis)물품이 아니며 따라서 제8708.29호로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자동차 스페이서는 제8708.99.818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5%임
-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의 기타 부품 및 부속품의 기타로 분류됨

다. 스위스의 프레임 없는 항공기창(제88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8803.30.0030호이며 시행일은 2017년 8월 31일, 참조번호는 N265858임

1) 물품개요

- 프레임이 없는 전면 투명유리 부품 번호 3G5211A01351 및 경첩 패널, 프레임이 없는 측면 투명유리 부품 번호 3G5211A00831의 물품은 항공기(Agusta Westland Civil Certified Aircraft Model AW 139)에 사용될 창임
- 전면 투명 필름은 스트레치 아크릴 MIL-PRF-25690으로 구성되고 측면 투명 필름은 아크릴 MIL-PRF-5425로 구성되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업체는 제3926.90.9995호의 기타 플라스틱 제품 및 제3901~3914호의 기타 재료 제품의 기타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제39류의 주2(t)에서는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품을 다루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항공기 창은 제8803.30.003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품 중 항공기 또는 헬리콥터의 부품으로 분류됨

라. 캐나다의 조립되지 않은 보트 선체(제89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8903.99.2030호이며 시행일은 2018년 12월 20일, 참조번호는 N301919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보트 키트(제품 번호 2625 CXP)로, 완전히 조립되지 않은 보트 선체임
 - 보트 선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맞는 다양한 알루미늄 조각과 압출품들로 구성되어 있음
 - 보트 키트는 KingFisher Falcon, Weldcraft Angler 및 유사한 모터보트를 만드는 데 사용됨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업체는 제8906호(균함·노를 짓는 보트 외의 구멍보트를 포함하는 기타 선박)로 보트 키트를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음
- 그러나 CBP에서는 제89류에 대한 해설 및 HS 해석에 관한 통칙 2(a)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8903호로 분류하였음
 - 제89류에 대한 해설에 따르면 조립하지 않았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선박, 선체, 미완성의 선박이나 불완전한 선박(조립 여부는 상관없음)은 특정한 선박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 선박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HS 해석에 관한 통칙 2(a)에서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또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따라서 해당 보트 키트는 제8903.99.203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임
- 요트 및 기타 선박용 여가 또는 스포츠의 노 젓는 보트 및 카누의 기타로 분류됨

18. 광학기 기 · 사진용 기 기 · 영화용 기 기 · 측정기 기 · 검사기 기 · 정밀기 기 · 의료용 기 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0류-제92류)

가. 일본의 스마트 안경(제90류)-1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9031.80.8085호이며 시행일은 2015년 2월 2일, 참조번호는 N260535임

1) 물품개요

- 스마트 안경(Smart Eye glass, 이하 스마트 안경) 모델 SED-E1은 유선 케이블을 통해 컨트롤러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안경류로 블루투스 또는 Wi-Fi 연결을 통해 안드로이드 모바일 장치와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음
- 해당 안경은 디스플레이, 카메라, 나침반, 자이로스코프¹²⁷⁾, 밝기 센서 및 가속도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컨트롤러에는 배터리, 마이크, 스피커, 버튼 및 터치 센서가 포함되어 있음
- 사용자는 사용자의 시야에 겹쳐진 데이터를 통해 핸드프리로 텍스트 및 기호와 같은 정보에 접속할 수 있음

127) 항공기·선박 등의 평형 상태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

2) 결정세변 및 사유

- 해당 업체는 안경, 고글 등, 교정용, 보호용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 제9004호의 분류를 제안하였으나 CBP에서는 해당 호의 정의에 스마트 안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함
 -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시력의 결함을 교정하거나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눈 앞의 커버에 해당되며 입체(3차원) 사진을 보기 위한 안경 또한 포함되어 있음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따라 복합재는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나 스마트 안경 Model SED-E1에는 어떠한 구성 요소도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의 해설 IX에 따르면 이 규칙의 목적상,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 상품은 구성요소가 서로 부착되어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성요소가 있는 경우 분리할 수 없는 구성요소를 갖는 것 또한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됨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c)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 가속도계를 제공하는 제9031호가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됨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c)에서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 3(a) 또는 3(b)를 참조하여 상품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스마트 안경은 제9031.80.8085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1.7%임
 -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와 윤곽 투영기, 부품 및 부속품의 기타 계측기, 기계, 가정용 기기의 기타로 분류됨

나. 중국의 증강 현실 고글세트(제90류)-2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9004.9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18년 5월 8일, 참조번호는 N296023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물품번호 E0849인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이하 AR) 고글 세트로 아이언맨 마스크, AR 고글, 플라스틱 핸드피스,¹²⁸⁾ AR마커 및 인피니티 스톤¹²⁹⁾으로 구성되어 함께 수입되며 소매 판매를 위해 함께 포장됨
 - 모든 아이템은 사용자가 AR 고글을 착용 후 마블 캐릭터로 변신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두 개의 투명 렌즈로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마블캐릭터가 된 세계에서 디지털 이미지를 볼 수 있음
 - 스마트 폰에 Herovision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AR 고글 안쪽에 스마트폰을 두고 AR 마커를 영역 표면에 배치해야 함

2) 결정세번 및 사유

- 업체는 오락용으로 설계된 장난감이라고 제안하였으나 CBP는 AR 고글이 세트의 핵심이며 비디오 게임기가 아니기에 제9504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어린이용으로 설계되었지만 전체 증강 현실 경험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AR 고글과 함께 사용해야 하므로 장난감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AR 고글 및 기타 구성 요소는 제95류에 분류되지 않은 애플 또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설치된 게임 전용으로 사용됨

128) 모터로 작동되는 의료용 기구. 그 모양에 따라 직선형, 반대각형, 지각형의 세 종류가 있음

129)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마블 유니버스에 나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스톤

- 따라서 해당 Herovision AR 고글 세트는 제9004.90.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5%임
- 안경, 고글 및 기타 교정용, 보호용 또는 기타의 기타 제품으로 분류됨

다. 중국의 자외선 살균기 및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탁상시계(제91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9105.11.4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8월 11일, 참조번호는 N313497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Type-C-USB(Universal Serial Bus) 어댑터로 구동되는 표준 디지털 탁상시계로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알람 기능이 있음
- 시계 상단에는 모바일 기기를 놓을 수 있는 부분 위에 덮개가 있으며 해당 부분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 무선으로 기기를 충전할 수 있음
 - 또한 장치의 표면에 있을 수 있는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UV-C LED(Light Emitting Diode, 이하 LED) 조명이 장착되어 있음
 - 해당 부분의 덮개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UV-C 조명이 작동하지 않으며 덮개가 닫히면 UV-C LED 조명이 켜지며 모바일 장치의 표면을 소독할 수 있음

2) 결정세번 및 사유

- 해당 물품은 제9105호의 디지털 알람시계, 제8504호의 무선 충전 패드, 제8543호의 UV 살균기로 구성된 복합 물품임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c)에 따라 자외선 살균기와 무선 충전 패드가 장착된 디

지털 알람시계는 순서상 가장 마지막으로 기타 시계에 해당하는 제9105호로 분류할 수 있음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c)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 3(a) 또는 3(b)를 참조하여 상품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CBP에서는 해당 물품의 구성 요소가 어느 것도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각 구성 요소는 해당 기능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해당 시계는 제9105.11.40호로 분류되며, 시계를 움직이는 기계(movement) 및 케이스에 적용되는 3.9%에 배터리에 부과되는 5.3%를 합한 관세율이 적용됨
- 알람시계 중 전기로 작동되는 광전자 디스플레이만 있는 물품으로 분류됨

라. 중국의 뮤직박스 장식품(제92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9208.1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10년 5월 7일, 참조번호는 N101961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도자기 뮤직박스로 높이 약 5인치, 밑면 지름 약 3인치 크기의 산타가 그려져 있으며 상단에는 금색 코드의 고리가 부착되어 있고 가운데를 가로질러 경첩과 걸쇠로 연결된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음
- 위쪽 부분이 펼쳐져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휴가 장면의 미니어처가 나타나며 하단 부에는 아래쪽 열쇠의 태엽을 감으면 미니어처가 회전하는 동안 'God Rest Ye Merry Gentlemen' 멜로디가 나옴

2) 결정세변 및 사유

- 해당 업체에서는 본질적인 특징이 크리스마스 장식품이고 오르골이 부수적인 특징이라고 판단하여 제9505.10.2500호의 분류를 제안하였음
 -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용품 포함)의 부품 및 액세서리 중 크리스마스 축제를 위한 물품 및 부품 및 액세서리의 크리스마스 장식품의 기타에 해당됨

- HQ 962597 크리스마스 모티브 뮤직박스의 분류에 대한 판결에 따르면 제9505호의 축제 물품이라는 용어와 제9208호의 오르골이라는 용어를 비교할 때 후자가 분류 목적상 더 구체적이라고 판결하였음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a)에 따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함
 - 뮤직박스라는 용어는 물품을 이름으로 기술하고, 축제 물품이라는 용어는 물품의 분류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뮤직박스라는 용어가 해당 물품을 더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판단함
 - 뮤직박스는 박스, 케이스, 캐비닛에 통합된 자동으로 음을 재생하는 작은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정의됨

- 따라서 해당 뮤직박스 장식품은 제9208.10.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3.2%임
 - 뮤지컬박스·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뮤지컬소(musical saw)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데코이콜(decoy call), 휘슬·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로 분류됨

19.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3류)

가. 대만의 페인트 볼 마커세트(제93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9304.00.4000호이며 시행일은 2010년 3월 4일 참조 번호는 N095195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SLG 페인트 볼 마커, 프로토 스위치 EL 고글, 프로토 탱크 및 프로토 프리모 로더(SLG Paintball Marker, a Proto Switch EL Goggle, a Proto Tank and a Proto Primo loader)를 포함하는 패키지 세트임
 - 프로토 스위치 EL 고글은 안개 방지 렌즈와 함께 제공되는 안면 마스크로 고글은 페인트 볼 매치 중에 착용하는 안전 헤드기어임
 - 프로토 탱크는 20온스의 CO₂고압 알루미늄 실린더로 페인트 볼을 쏘는 힘을 공급하며 프로토 프리모 로더는 페인트 볼을 잡고 마커에 주입함

2) 결정세번 및 사유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를 적용하여 페인트 볼 마커가 키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키트는 2개의 다른 제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품목으로 구성되나 페인트 볼 게임 플레이의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구성됨
 - 또한 재포장을 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직접 판매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상품을 진열한 것으로 추정됨
 - HS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서는 소매 판매를 위해 세트로 구성된 상품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요소로 구성된 것처럼 분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페인트 볼 마커 세트는 제9304.00.4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기타 무기(예: 스프링, 공기총 또는 가스총 및 권총, 트런천), 제9307호의 것은 제외하며 권총, 소총 및 기타 압축 공기나 가스를 방출하거나 장력을 받고 있는 스프링 메커니즘이나 고무를 방출하여 미사일을 발사하는 총의 기타로 분류됨

20. 잡품(제94류-제96류)

가. 중국의 마사지 구성품이 있는 의자(제94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9401.71.0011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9월 15일, 참조번호는 N314191임

1) 물품개요

- 모델 번호 100-WB71-001, 100-WB71-002, 100-WB71-003(Human Touch WholeBody® 7.1 전신 휴먼 터치 ‘마사지 의자’로 식별됨)은 내장된 플렉스글라이드(FlexGlide) 기술로 구성된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이하 폴리우레탄)으로 덮개를 씌운 의자임
- 사용자 선호도에 따라 마사지 및 난방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3D기능 전자 기계 부품으로 모델 번호로 색상이 분류되어 있음
 - 다리 받침대, 팔걸이, 좌석 받침대 및 등받이는 금속 프레임에 부착되어 있음
 - 1인용 좌석으로 쿠션이 있는 등받이가 있으며 제품 설명서에는 55도 회전 기능, 등받이의 각도 조절 기능, 베개 및 좌석의 요추 부위를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있음
 - 다리 받침대는 접을 수 있으며, 좌석이 기울어지며 다리 받침대가 좌석에서부터 멀어지고 반대로 좌석이 세워지면 다리 받침대가 좌석으로 가까이 옴

- 좌석의 추가 기능은 다리 받침대를 뒤집는 것으로, 뒤집을 시 다리 받침대에 발 마사지 또는 종아리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마사지 구성 요소가 표시됨
 - 좌석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좌석 위치와 5가지 옵션으로 마사지를 설정할 수 있는 BodyMap Pro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음
 - 좌석의 무게는 약 108파운드로 일반 가정용 전압으로 작동함
 - 전반적으로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구조 프레임은 제한적인 기능을 갖지 않으며 사용자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감싸 안거나 제어하지는 않고 있음
 - 또한 덮개를 씌운 시트는 사용자의 뒤쪽 상체, 팔, 다리 및 발을 감싸거나 구속하지 않고 있음

2) 결정세변 및 사유

- 중국 업체는 해당 그림을 제9019.10.2045호(기계 치료 기구 및 마사지 기구: 부품 및 액세서리 기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CBP는 덮개를 씌운 좌석에 추점을 맞추어 제9401호로 분류하였음
- 제94류의 해설에서 규정하는 가구는 다음을 의미함
 - 바닥이나 바닥에 배치하기 위해 구성되는 필수 특성을 가진 이동 가능한 물품으로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개인 주택, 호텔, 극장, 영화관, 사무실, 교회, 학교, 카페, 레스토랑, 실험실, 병원 치과 의사의 수술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선박, 항공기, 철도 장비로 사용됨
 - 자동차, 캐러밴 트레일러(Caravan trailer)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 수단(선박에서 사용하기 위한 의자와 같이 바닥에 볼트로 고정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도 이동 가능한 가구로 간주됨)
 - 정원, 광장, 산책로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유사한 물품(좌석, 의자 등)도 해당 범주에 포함됨

- 제9401호의 해설에 따라 분류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라운지 의자, 안락의자, 접이식 의자, 책상 의자, 유아용 식사 의자 및 다른 좌석(자동차 좌석 포함)의 뒤쪽에 걸 수 있도록 설계된 어린이용 의자, 노인용 의자, 벤치, 소파(전기 난방 장치가 있는 것, 긴 의자, 소파, 오토만 등 포함), 의자(예: 피아노 의자, 드래프트 남성용 스톨, 타이피스트용 스톨 및 이중 목적 스톨 스텝 등), 사운드 시스템을 통합하고 비디오 게임, 텔레비전 또는 위성 수신기뿐 아니라 DVD, 음악 CD, MP3 또는 비디오 카세트 플레이어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의자
 - 이 호의 좌석에는 장난감 구성품, 진동 기능, 음악 또는 사운드 플레이어, 조명 기능과 같은 보조적인 비 좌석 구성품도 포함할 수 있음

- Human Touch WholeBody® 7.1 마사지 의자는 주로 민간 주거지에서 휴식, 긴장 완화, 보관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바닥에 배치된 이동식 물품으로, 거주자의 개인적 사용, 편의 및 안락함을 위해 설계되어 제94류의 분류조건을 충족함
 - 좌석의 내부 마사지 및 난방 구성요소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되며, 나머지 시간은 가구의 기능으로 수행됨
 - 대상 상품은 사용자가 좌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마사지 및 기타 구성품이 포함된다고 해서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달라지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의자는 제9401.71.0011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좌석(제9402호 제외), 침대로 전환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좌석 및 그 일부, 기타 좌석, 금속 프레임, 덮개가 있는 기타 가전제품에 해당됨
 - 제99류 제Ⅲ장 주20에 근거한 제9903.88.04호에 따라 중국제품의 경우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부과되지 않음

나. 한국의 배터리 팩(제95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9503.00.0080호이며 시행일은 2010년 3월 30일, 참조번호는 N097075임

1) 물품개요

- 원격 제어(Remote-Controlled, 이하 RC) 모델 자동차와 비행기에 사용된 두 개의 배터리 팩에 대한 품목분류 요청임
 - 첫 번째 물품인 팀 오리온 모델 4500 로켓팩(Team Orion Model 4500 Rocket pack)은 TF-5 등 특정 RC 차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TRA 플러그 커넥터가 장착된 1.2볼트(총 8.4볼트) 충전 니켈 하이드라이드(Nickel Metal Hydride) 배터리 7개를 조립한 것임
 - 두 번째 물품인 팀 오리온 모델 3200 Li-Po 파워레이스 스펙(Team Orion Model 3200 Li-Po Power Race Spec)은 폐쇄 조립식 7.4볼트 충전 리튬 배터리임
- 배터리 팩은 RC 모델 전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배터리 팩의 개구부를 통해 TC5 모델과 같은 특정 RC 모델 자동차와 평면의 챔버(chamber)에 장착할 수 있음
 - RC 모델 및 액세서리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에서 판매할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음
- 각 배터리는 주로 RC 장난감 자동차의 특별히 구성된 구획에 맞도록 설계되었으며 RC 자동차 전문 취미 가게에서 판매되며 배터리 사용 설명서에는 RC 자동차 내부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음

2) 결정세변 및 사유

- 제95류의 해설 주3에 따르면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배터리 팩은 RC 모델 차량의 완성과 올바른 작동에 필요한 필수 구성 요소로서 제9503.00.008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제9503.00.0080호는 세발자전거, 스쿠터, 페달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 달린 장난감, 인형, 기타 장난감, 모든 종류의 퍼즐: 부품 및 액세서리 기타에 해당됨

다. 중국의 플라스틱 머리띠(제96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변은 제9615.11.4000호이며 시행일은 2019년 6월 7일, 참조번호는 N304537임

1) 물품개요

- 해당 물품은 메리 브라이트 전구 헤드밴드(Merry Brite® Light Up Bulb Headband)로 밴드 상단에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을 닮은 플라스틱 멀티 컬러 전구 7개가 달린 초록색 반강체 플라스틱 말굽 머리띠임
 - 샘플의 조명은 녹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머리띠의 아래쪽에는 착용자의 머리카락에 고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가 있으며 조명에는 세 개의 배터리가 사용됨

2) 결정세변 및 사유

- 공급업체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제9503호의 장난감이나 제9505호의 축제 물품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음

- CBP는 해당 물품은 어린이에게 어필 가능하나 주로 재미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으며 놀이라는 목적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제9503호의 장난감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또한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시기에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제9505호의 축제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해당 머리띠는 제9615.11.4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5.3%임
 - 빗, 헤어 슬라이드 등 제8516호의 것을 제외한 헤어핀·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러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으로 경질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것의 기타 인조 진주 또는 인조 원석이 세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분류됨

21. 예술품·수집품·골동품(제97류)

가. 독일의 그림(제97류)

- 해당 물품의 결정세번은 제9701.10.0000호이며 시행일은 2020년 3월 16일, 참조번호는 N309867임

1) 물품개요

- 게오르그 마이스터만의 1952년 그림 '마이스터만 창'(the Meistermann Window)은 길이 113.8cm, 너비 101.30cm 크기의 유리에 프레임을 갖춘 그림임
 - 손으로 디자인하고 그린 독창성을 가진 그림으로 평행, 수직 및 교차 물결선 모양의 납으로 된 구분에 따라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다양한 색으로 표현됨(빨간색, 파란색, 흰색, 검은색, 회색, 녹색, 보라색, 노란색 및 검은색)

2) 결정세변 및 사유

- 독일 업체는 해당 그림을 제9705.00.0085호로 분류할 것을 요청함
 - 제97류의 해설에서는 제9705호가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고 분류하고 있음

- CBP는 드로잉과 파스텔 작업은 손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제9705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음

- 따라서 해당 그림은 제9701.10.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임
 - 제97류의 해설에서는 제9701호를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이라고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제9701.10.0000호는 제4906호의 도면 및 손으로 그린 또는 손으로 장식한 제조품을 제외하고 완전히 손으로 만든 페인팅, 드로잉 및 파스텔; 콜라주 및 유사한 장식용 명판;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액자에 들어 있거나 혹은 들어 있지 않은 드로잉, 페인팅, 파스텔이라고 분류하고 있음

주요교역국의 관세행정 결정사례
-미국 제1권(품목분류)-

발 행 2021년 12월 31일
저 자 정재현 · 김미정 · 노영예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관 및 (주)다원기획 044-865-8115
인 쇄
I S B N 979-11-6655-089-8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주요교역국의 관세행정 결정사례

미국 제1권(품목분류)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